

#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목차

1. 인권기반의 장애개념_장애란 무엇인가	3
2.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	13
3. UN CRPD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35
4. UN CRPD의 역사와 현안	65
5. UN CRPD를 활용한 장애인의 실천적 역할	85
6. UN CRPD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105
7. UN CRPD와 장애여성	129
8. UN CRPD와 장애아동	143
9. UN CRPD와 장애노동	163
10. UN CRPD,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	181
11. UN CRPD와 접근권	211
12. UN CRPD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_자유권을 중심으로	255
13. 인천전략의 이행과 CRPD	265
14. UN CRPD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279

\* 본 강의의 전 편은 유튜브로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UN CRPD 확산 공동사업추진단 연대 명단

센터명	지역		센터 이메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서울	02-518-2197	goodil@hanmail.net
HappyU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031-723-8253	huil2007@hanmail.net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	054-775-6623	chunma6622@hanmail.net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	051-338-2287	bcil2005@hanmail.net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서울	02-568-2270	gsoa0903@hanmail.net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	062-264-3157	need815@hanmail.net
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	063-285-5538	jagunja@hanmail.net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02-2252-9050	jgcil@hanmail.net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	041-417-6000	cnil@hanmail.net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	043-295-4244	cbil2004@hanmail.net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	043-845-4544	cjil@hanmail.net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	02-785-7060	kil-2007@hanmail.net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	042-486-2373	hanbatcil@hanmail.net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	070-8140-6610	ilhanul@daum.net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1. 인권기반의 장애개념 - 장애란 무엇인가

강의자 : 윤삼호

주최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 장애란 무엇인가?

윤삼호

(사)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 장애란 무엇인가?

- “손상은 몸 안에, 장애는 사회 속에”

## 손상 vs. 장애

- 1952년, WHO의 ICD
  - 장애 = 질병
- 1971년 정신지체인권리선언
- 1975년, UN장애인권리선언
  -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나 정신의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
  - 장애 = 결함, 불완전함

- 1976년, UPIAS(분리에저항하는신체장애인연맹)
  - 손상(impairment) - 사지의 전체 혹은 일부가 없는 것, 또는 사지·기관·신체의 구조에 결함이 있는 것
  - 장애(disability) - 신체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무시하여 이들을 주류 사회 활동에서 배제시키는 그 시대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약
- 1980년, WHO의 ICIDH
  - 손상(impairment) -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손상이란, 정신적·신체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나 비정상
  - 장애(disability) -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장애란, 손상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이나 범위에서 행위를 할 능력을 제약받거나 상실한 것
  - 핸디캡(handicap) -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핸디캡이란, 손상이나 장애 때문에 개인이 받는 불이익 - (나이, 성별, 사회적·문화적 요소에 걸맞게) 그 사람의 정상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가로막는 것

<의료모형>



<사회모형>



## 장애(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손상**은 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되는 반면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해체된다.
- 장애인은 의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의학의 진보 **때문에** 발생한다.
- 장애는 **객관적, 절대적,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 상대적, 경험적**이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이분법(dichotomy)**의 관계가 아니라 **연속체(continuum)**의 관계다.

- 1982년, DPI
  - 손상(impairment) -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으로 야기된 개인 내부의 기능적 제약
  - 장애(disability) - 물리적, 사회적 장벽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공동체의 정상적 생활에 참여하는 기회의 상실 혹은 제약
- 1997년, WHO의 ICIDH-2
  - 손상 유형, 활동, 참여, 상황 요인을 고려한 장애 정의
- 2001년, WHO의 ICF
  - 신체 기능, 신체 구조, 활동 & 참여, 환경 요인을 고려한 장애 정의
- 2006년, UNCRPD
  - “장애는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

### “장애(인)”의 법적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국가인권위법>
-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장애모형들

“장애는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이고, 경합하는 개념이다.” - WHO와 World Bank, 2011

모형	핵심 메시지	주요 비판
개인모형	장애는 의료 및 재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손상을 가진 개인의 문제다.	환경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선호하고 당사자의 경험을 과소평가한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에 부적절한 비용이 든다.
사회모형	장애는 환경과 제도가 손상을 있는 개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사회의 문제다. 장애(사회적 불이익)와 손상(생물학적 제약)을 구별한다.	개인의 손상 경험을 간과한다. 손상을 생물의학 용어로 정의한다. 장애인은 억압받는다 가정하고, 무장애 유토피아 사회가 있다고 믿는다.

모형	핵심 메시지	주요 비판
소수집단 모형	장애인은 비장애인 시민과 다른 소수자집단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자립 생활, 반-전문가주의, 탈시설화, 정상화를 강조한다.	개인의 자기권익옹호(self-advocacy) 기술에 의존한다. 손상와 장애를 구별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적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무력해진다.
복유럽 모형	장애는 사람-환경의 불일치이고, 맥락적이고, 환경과 관련이 있다.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지 않는다. 장애운동을 구축하기보다 전문가의 실천과 서비스 전달에 방점을 둔다.

모형	핵심 메시지	주요 비판
인권기반 접근법	사회모형 관점으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 방식. 장애는 인간조건에 내재되어 있다. 장애인은 인간의 경험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한다.	장애인은 여전히 기본권을 거부당한다. 인권은 '좋은 삶'에 대한 서구식 이해(독립과 이성)에 기반한다. 인권운동은 수행행위자(agents)가 아닌 사람들을 주변화시킨다.
생물심리 사회모형	장애는 손상, 활동 제약, 참여 제한을 포괄하는 용어(umbrella term)이고, (건강이 나쁜) 개인과 그 개인의 맥락적 요인(환경요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장애는 건강 패러다임 안에서 틀이 지워진다. 정의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모형	핵심 메시지	주요 비판
문화모형	장애는 각 문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상태이고, 문화적 인공물 속에서 재현되고 신체화된다.	장애운동, 서비스 전달, 전문가의 실천과 단절한다. 정치적 주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문화적이고 헤게모니적인 맥락 안에서만 인간의 취약성을 이해한다.
긍정모형	장애는 장애인의 긍정적인 속성이고, 자부심과 긍정적인 정체성의 근거이고, 장애문화를 촉진한다.	정체성 긍정은 현 상태에 대한 순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장애 정체성은 장애인의 복잡성을 인식하는데 제한적이다.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2.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

강의자 : 이동석  
주최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로 Go~ , 전세계로 Go !!!

##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 목차

1. 인권의 원칙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적 차이의 발생
3. 장애 개념
4. 인권보장의 원리
5. 사회정책(보장)의 개념
6. 사회보장 체계
7.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영역
8. CRPD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 1. 인권의 원칙 중

## 1. 인권의 주관성

-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은 같지 않음(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인권)
- 그 차이만큼 인권침해 가능성 존재

## 2. 인권의 약자우선 원칙

- 양자 모두 인권을 중시 또는 내세우기 때문에 충돌함
- 이 경우 약자 우선의 원칙 적용

## 3. 인권 목록의 변화

- 숨실 권리
- 맑은 물 마실 권리
- 이용자의 간식권

#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적 차이의 발생

-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왔음(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연대권 등)
-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기득권을 장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
- **장애인의 인권**은 기본적인 생존권만을 유지하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시혜'**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음.
-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적 차이의 발생

### 비장애인이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 의식?

- 능력 있는 신체 중시, 경쟁력 중시
- **장애**: 신체적, 정신적 등의 손상을 지닌 **개인의 의료적 문제**로 파악.
- "장애=손상" → 손상으로 인해 능력 제약, 따라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음
- "개인의 비극" → 보호받아야 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의존적 존재, 따라서 동정과 자선의 대상이 됨
- **장애인**: 주요 일상 활동을 저해하는 의료적 조건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
- **정책**: 장애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 교정 또는 재활을 통한 개인의 사회에의 적응을 강조하는 개인 중심적인 접근**
- 개인의 **장애가 통상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장벽과 일반적인 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파악
-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사회적 과정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

##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적 차이의 발생

### 비장애인이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 의식?

- 장애인은 구조적으로 사회적 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예: 고용 대신에 사회복지급여의 지급), 분리되거나 제한된 사회적 참가(예: 분리교육이나 고용할당제)만이 허용
- 장애인의 **능력의 한계를 장애인 개인에 내재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류사회로부터 장애인의 배제, 분리, 제한을 당연시 함**
- 그에 따라 장애를 차별을 구성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으로는 파악하지 않음
- 사회로부터 **장애인의 배제 등은 차별 그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불행하나 불가피한 개인의 장애의 결과로서 이해**

##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적 차이의 발생

### 대립되는 장애인들의 인권 의식?

- 장애인들은 이에 반대
- 비장애인이면서 기득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인권의식과 장애인의 인권의식간의 차이, 대립, 충돌
- **두 집단 간의 개념 괴리만큼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
- 결국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립 및 공유가 필요.
- 결국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재해석부터 출발**하여야 함
  
- **“장애”란 무엇인가?의 문제**

## 3. 장애 개념

다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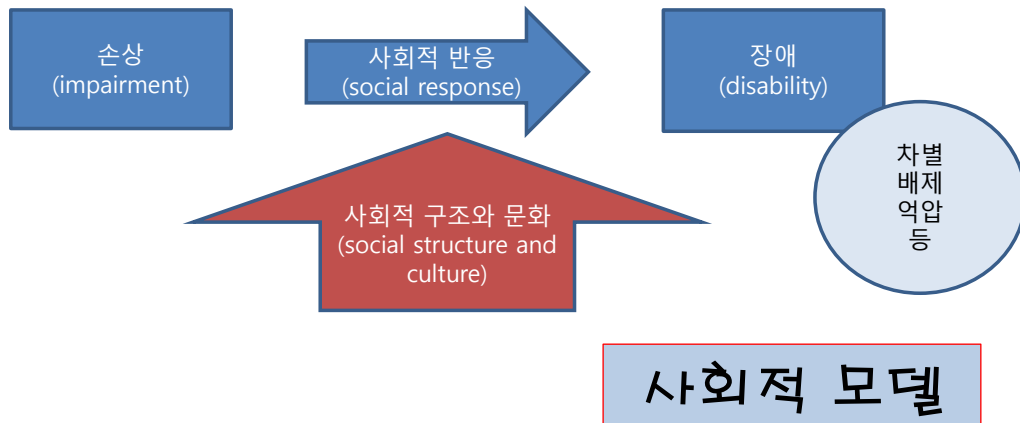


동일한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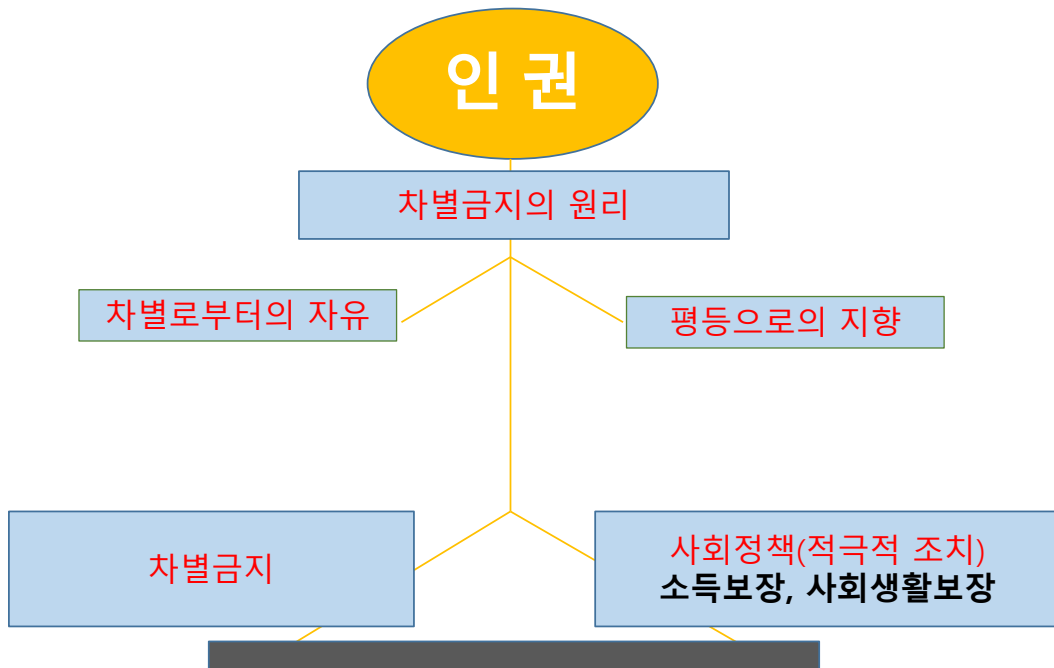


### 3. 장애 개념

- 장애인은 그가 있는 구조와 사회관계에 의해 장애화 되는(disabled) 것이다.
-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의 반응 결핍, 즉 사회의 억압으로 볼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은 사회적 억압을 제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 **Disabling society vs Disabled people**



### 4. 인권 보장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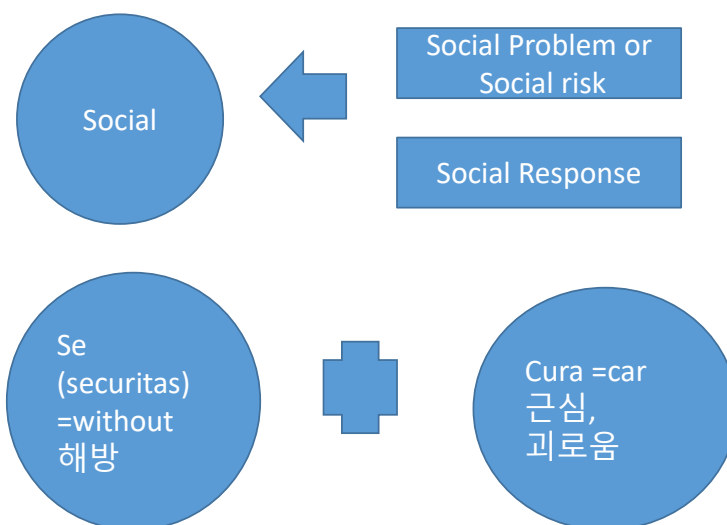


## 장애 관련 법률

차별금지	적극적 조치	
	소득보장	사회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li> <li>장애인연금법</li> <li>장애인복지법(장애수당)</li> <li>국민연금법(장애수당)</li> <li>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li> <li>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li> <li>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li> <li>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li> <li>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li> <li>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li> <li>이동약자지원법</li> <li>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li> <li>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li> <li>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li> <li>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li> </ul>

## 5. 사회정책(보장)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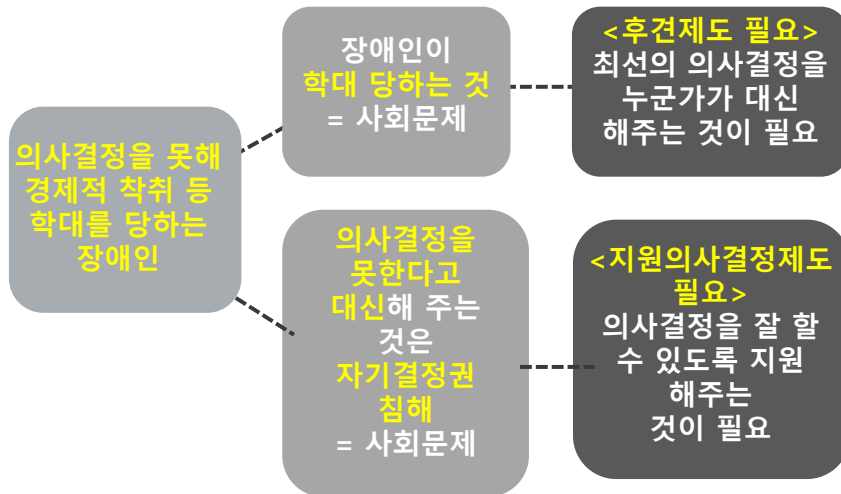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 5-1. 사회보장의 철학적·기술적 측면

### | 철학적 측면

-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왜 사회적 또는 집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문제



## 5-2. 사회보장의 철학적·기술적 측면

### | 기술적 측면

- 누구에게, 어떤 급여를, 어떤 재원을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

적용범위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정

### | 논의(실습)

“ 한 국가에서 밥을 굶는 노인 문제가 언론에 제기 되었다.  
밥을 해 먹을 쌀도 없고, 밥해줄 가족도 없어 일주일을 굶다가 자연사한

노인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다.  
국민들은 분개했고, 이에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생님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했다.

왜 노인의 식사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자.  
특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민해 보자”

## 6. 사회보장체계

-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 사회보험: 국민연금(장애연금), 산재보상보험, 건강보험(보장구),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이상), 실업보험
- 사회서비스: 거주시설,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 활동지원제도 등
- + 고용, 교육, 이동권, 참정권 등

### 6-1. 사회보장 - 사회보험

-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
- 민간보험과의 차이점: 강제 가입, 법적 권리
- 4대보험: 연금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 5대보험: +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 기여금+자격의 발생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6-2. 사회보장 - 공공부조

-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
-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
-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함
- 자산조사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택급여 등의 급여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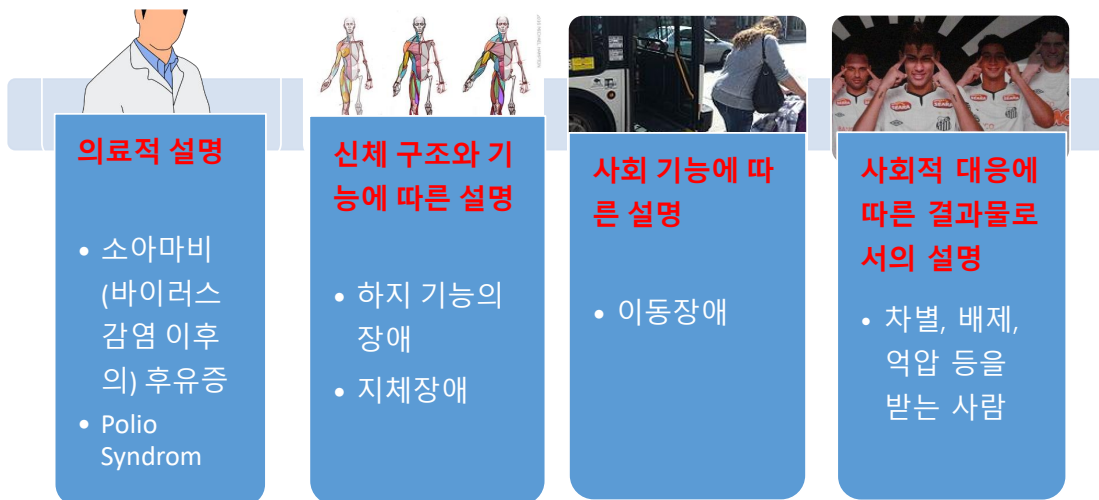
## 6-3. 사회보장 - 사회(복지)서비스

- 물질적 보장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
- 대상범주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짐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7.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영역

-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
  - 근로능력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장애인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연금 등
- 고용보장(employment measures)
  - 의무고용제도, 지원고용제도, 보호고용제도(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 등
- 일상생활 활동 지원(assistance with activities of daily life, assistance with ADLs)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거주시설(유형별 거주시설, 중증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장애인복지서비스)

### 7-1.누가 장애인인가?





## 7-2. 장애인 차별금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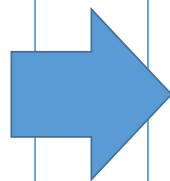
### • 차이 ⇒ 위계성을 띄는 경우 ⇒ 차별로 전환

- 이미 권력관계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이 그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들간의 서열을 정함
  - ✓ 예: 비장애인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능력'의 판단 기준이 비장애인, 남성적 속성을 띤 능력 요소들로 구성되는 것.
- 서열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은 열등한 존재로, 또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됨. : 범주화 과정
  - ✓ 장애라는 카테고리(범주)의 생성
- 열등한 존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되고 재생산. 편견과 고정관념은 통제 동기 와 의도를 은폐하기 위해 필요. 지배집단은 이러한 편견을 통해 약자에게 열등감의 이미지를 주입하여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공고히 함.

## 7-3. 소득보장 정책

### ● 장애인빈곤의 이유:

-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 낮은 장애인복지지출 등



### ● 대책:

- 노동시장에의 진입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보전
- 장애인복지지출 증가 등

### ● 장애인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정책 (현재 우리나라)

- 국민연금,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 산재보험 내 장해연금
- 기초보장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 7-4. 사회활동지원 정책

- ① 1970년대와 1980년의 수용시설, 생활시설중심의 단계
- ②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이용시설 또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대 단계
- ③ 2000년대 이후의 자립생활과 이용자 선택 방식의 서비스 확대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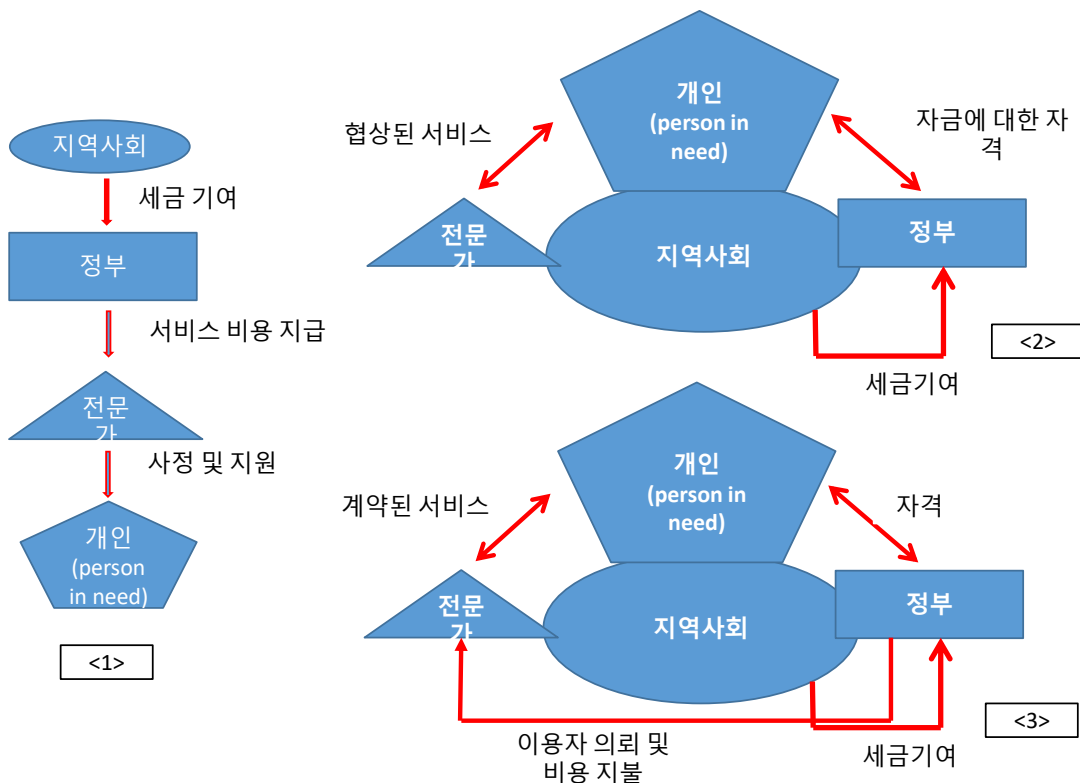
-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서비스 확대, 서비스를 주도하는 패러다임도 급속히 변화
- 각 단계에서 도입되고 확충된 서비스 제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조정되지 않고 각 단계의 제도 탄생 패러다임에 비교적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음 - 잠금(lock-in)현상

• 장애인서비스의 핵심 과제

-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서비스 제도와 실천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잠금해제(lock-out)'

## 7-4. 사회활동지원 정책

## 향후 과제



## 7-4. 사회활동지원 정책

### ● 지역사회 삶(community living)지원의 목표

-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주도성(self-direction)**(자립) 회복
  - ← (탈시설) 장애인의 소비자성 회복
- **일상적 활동 증가**
  - ← 물리적 구조 + 인적 지원
  - ← 주변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환경 개선**
    - **편의시설(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의 보편화 등), 의사결정 지원** 등
    - 장애문화에 대한 인정. 사회의 관용도 증대: 다름에 대한 인정
  - ← 주간 활동(good day) 등
- **사회 관계 회복**(지역사회와의 연결 확보)
  - ← 시민 옹호 등
- So,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생산성** 증대, **삶의 질** 증대

## 8. CRPD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 ① CRPD의 해석에 따른 접근권(Accessibility)과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합리적 조정) 개념의 법제화
- ② 지원의사결정 제도화

## 8-1. 접근권 개념

- 광의의 접근권
  - Access(ibility) to Rights
  - 모든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 중개 서비스(brokerage service) 등
- 협의의 접근권
  - Rights to access
    - 장애인이 건축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건물접근권)
    - 교통수단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동권)
    -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전자 및 비전자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 따라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바로 접근권이라고 할 수 있음

###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지금까지의 차별로 인해 법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의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는 조치
- 즉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기 위한 조치(Affirmative action)
- 보상적 정의론, 배분적 정의론, 사회적 효용론 입장에서 타당성 확보
  - 보상적 정의론 입장: 소수집단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차별 받아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며 다수집단은 소수집단을 차별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므로 보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
  - 배분적 정의론 관점: 차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배분의 평등을 위해 적극적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 사회적 효용론 입장: 적극적 조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
- 적극적 조치는 사전적 의무인 '접근권'과 특정 환경에서 접근권을 사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 조정(또는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구분

접근권(**accessibility**, 접근성 보장)과  
합리적 조정(**reasonable accommodation**)

- **Accessibility** : 편의시설, 인적 서비스와 다른 조치들까지도 포함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Reasonable accommodation**: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조정?, 개인적이고, 일시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의 편의제공
-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재해석 또는 세계 기준에 맞는 해석 필요.

접근권(**accessibility**)

-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
-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는 **사전적** 의무임
- 국가는 개인이 장소나 서비스에 **진입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함
-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접근권 기준 제정 필요**
- 접근권 기준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표준적**이어야 함. 극소수 장애인의 경우 고려되지 않고, 이 경우 **reasonable accommodation**이 적용되어야 함.
- 접근권 실행 의무는 **무조건적**임. 즉 부담 등을 언급하면서 양해를 구해서는 안됨

## 합리적 조정(reasonable accommo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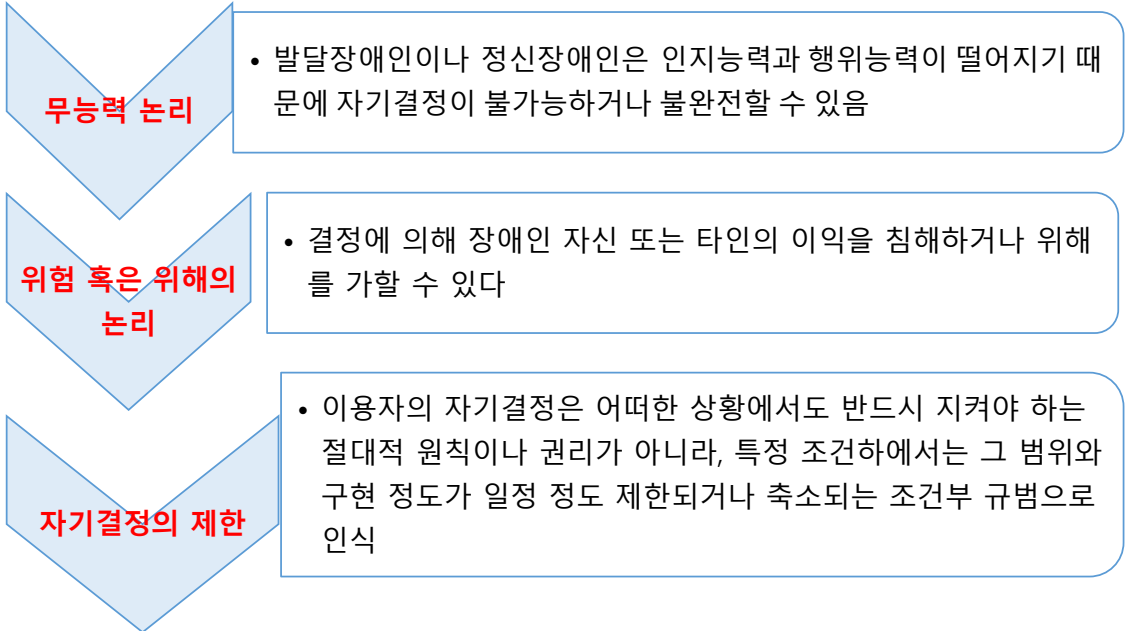
- 개인과 관련되어 있음
- reasonable accommodation은 **실행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함
- **지금부터의** 의무임.
- 장애인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필요가 생긴 경우부터 효력이** 생김
- 이 때 접근권 기준이 지표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이 특정 환경에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존엄성, 자율권, 선택 등이 고려되면서 반차별과 평등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 정의(justice)**를 획득할 수 있음.
- 극소수 장애인은 접근권 기준 영역에서 벗어나는 reasonable accommodation 을 요구할 수 있음

## 8-2. 지원의사결정

대체의사결정 (substituted decision making)	지원의사결정 (supported decision making)	자발적 의사결정 (spontaneous decision 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리성 부족, 결핍 → 논리성 대체</li> <li>•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 존재. 불확실성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리성 부족 → 논리성 지원</li> <li>• 우리 모두의 의사결정도 불확실. 따라서 특정 범주 집단의 불확실성만 논의하는 것은 부정의</li> <li>• 위험 감수, 위험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와 지식의 유입에 따라 논리적으로 이루어짐</li> <li>• 결정에 따른 위험이 없음. 불확실성 소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모자라므로 누군가 대신 판단해 줌</li> <li>• 일정 정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li> <li>• 후견제도(guardianshi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li> <li>• 이후 자기결정(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대신하여 주장해 주고 실행되도록 하는 활동</li> <li>• 이용자를 대신하여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아님</li> <li>• 권익옹호(advocac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의사결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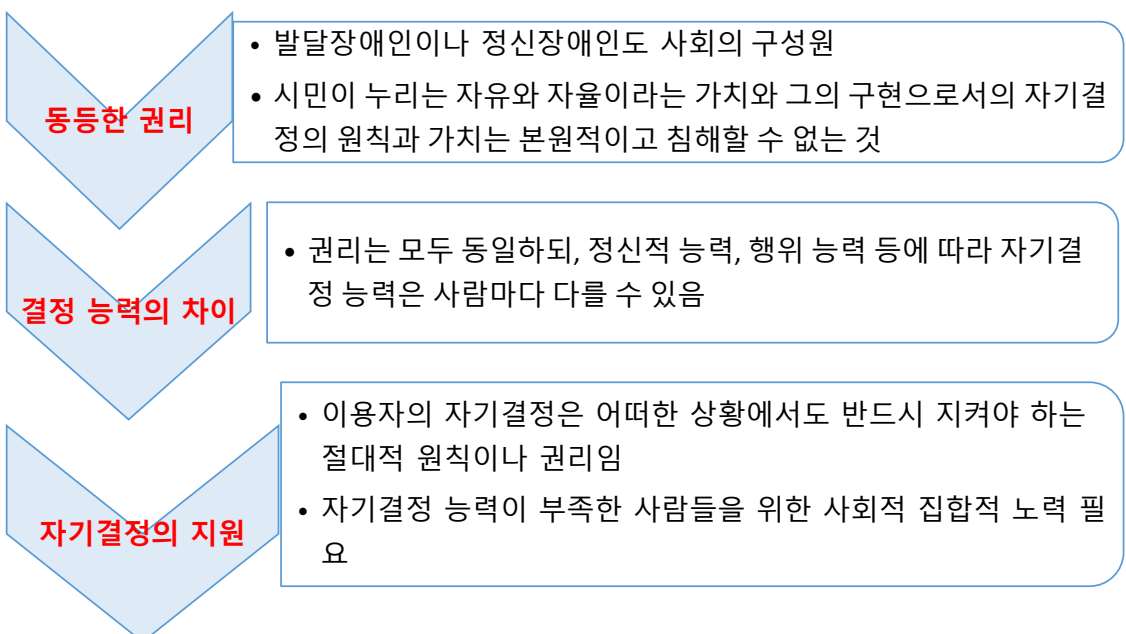
## 8-2. 지원의사결정

### 1. 온정주의 시각에서의 자기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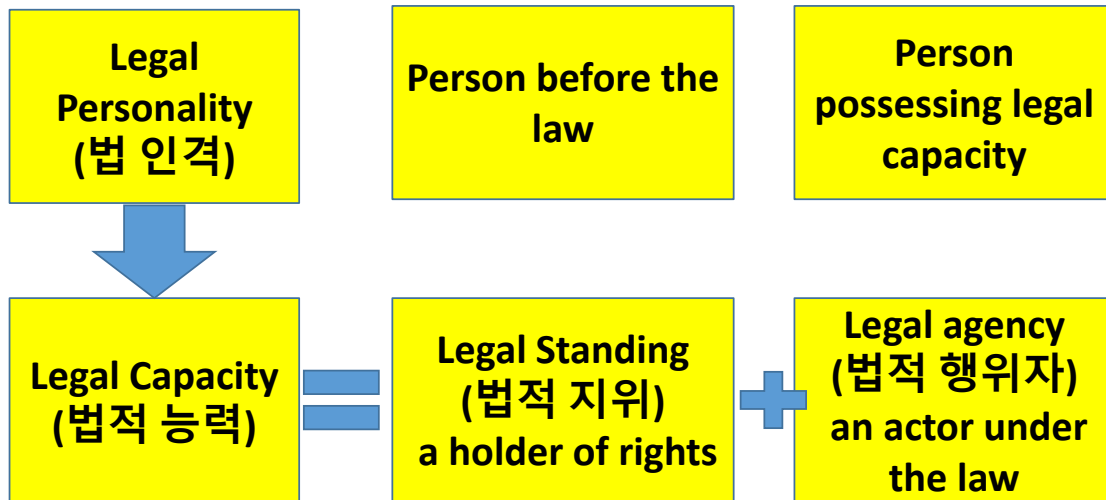


## 8-2. 지원의사결정

### 2. 시민권 시각에서의 자기결정



## 8-2. 지원의사결정



-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함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모든 사람은 법 인격(legal personality)을 소유한 것
-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 역량(legal capacity)을 갖는 것임

## 8-2. 지원의사결정

- 제도화 방안
  - 의사결정지원자의 종류: 사적인 합의계약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자 등 다양하게 규정 필요
  - 의사결정 역량에 대한 평가: 법원이 지명한 또는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부여받은 역량평가자(capacity assessor) 지정
  - 이익제기 절차 필요: 의사결정 지원자가 신의원칙에 위반하여 성실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본인, 감독기관 등에 의한 고소 가능.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불성실한 실적이 명백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 의사결정 지원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의사결정, 지원의사결정 등에 관한 교육



감사합니다.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3. UN CRPD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강의자 : 이주언

주최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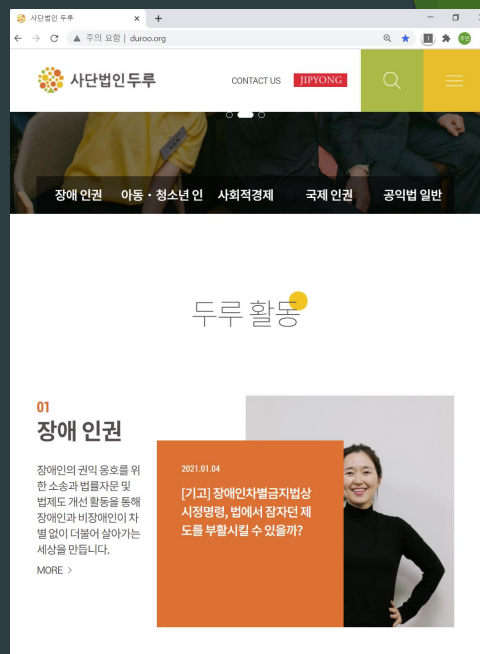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주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 두루를 소개합니다.

- ▶ 사단법인 두루
  - 비영리전문 공익변호사 단체
  - 법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단체
  - 장애,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국제인권/환경 등



## 강사를 소개합니다.



### ▶ 이주연

- 공익변호사
- 일 별리는 사람
- 호기심, 소통, 설레임, 변화, 함께, 상상
- 상호작용, 참여, 자립, 연대

## 강의 목표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왜 가입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아시나요?

- ▶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
- ▶ 우리나라 2007년 3월 30일 서명
- ▶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동의
- ▶ 2009년 1월 10일 국내에 협약 발효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말 그럴까요?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on the Law.go.kr website for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earch results page displays a table with columns for '번호' (Number), '법령명' (Law Name), '공포일자' (Enacted Date), '법령종류' (Law Type), '공포번호' (Enactment Number), '시행일자' (Effective Date), '제정 개정구분' (Enactment/Revision), and '소관부처' (Responsible Agency).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and a message in the center states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No search results found).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약 > 조약 > 통합검색 > 기본유선 | 종합법률 > +

law.scourt.go.kr/wsjo/intsrch/sjo030.do?g=장애인권리협약&tabGbnCd=#1615823495462

통합검색 판례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

대한민국 법원 통합법률정보 장애인권리협약 검색

기본유선 개인설정유선

판례 (0건)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법령 (1건) ▶ 더보기

**법령** **보건의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1. 2. 25. [대통령령 31481호, 시행 2021. 2. 25.]

문헌 (62건) ▶ 더보기

**질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저자 이명화 | 출판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발행년 2020 | 유형 단행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제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후보고서'를 중심으로**  
 저자 송인호 | 출판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 2019 | 유형 논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장애인인권**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 (2018~2022)」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1.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강화
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4.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유 기회 보장
5. 장애인 체육·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3.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4.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

5차 분야 22개 중장기 70개 세부과제

**권익 및 안전 강화**

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2. 재난 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3.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1.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3. 편의시설·의사소통 지원 강화
4.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관계부처 합동

#### 5-4.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등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과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증진을 촉구

**□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 인천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반기 로드맵 수립(18.)
  - 인천전략 하반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결과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목표 제시 및 분야별 핵심전략과제 선정, 과제 추진체계 및 이행지표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 시행(18.2.6)
    -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분리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지원 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 인천전략기금을 통한 아태지역 저개발국 대상 장애분야 ODA 협력확대
  - 인천전략 주도국으로 역할강화를 위해 ODA 협력수요 적극 발굴
  - 수원국 확대 및 개도국의 장애인정책, 제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또는 협력사업 발굴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2,3차 병합보고서) 제출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대응(19.2)
  -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및 쟁점이슈에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
-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운영(국가인권위원회)
- 협약 비준서 서명을 유보한 선택의정서의 유보철회 여부 검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아시나요?

- ▶ 협약 국내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2011.1.)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 (2014. 9.)
- ▶ 위 위원회에서 1차 국가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견해 채택 (2014.10.2.)
- ▶ 위 위원회에서 제2,3차 국가 보고서 심사를 위한 쟁점목록 채택 (2018.3.)
- ▶ 제2,3차 국가보고서 제출 (2019.3.)
- ▶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출(2018. 6.) → 부의장 선출(2021. 3.)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시나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할 경우 구제방법을 담  
고 있는 법

[시행 2008. 4. 11.] [법률 제8341호 2007. 4. 10.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장애와 장애인
	3조 정의
	4조 차별행위
	5조 차별판단
	6조 차별금지
	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와 장애인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떤 장애인에게 적용될까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사람

<비교> 장애인복지법

<비교> 장애인권리협약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구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내부 기관의 장애	안면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구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정신적 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진중장애	뇌진중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적장애	정신 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행위

유형	내용	사례
직접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단합대회로 축구나 릴레이계주를 정한 경우 입사 조건으로 토익고득점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보조인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 차별이란?

제4조(차별행위)

②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1&PAGE=1&topTitle=](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1&PAGE=1&topTitle=)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 장애인의 참여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 X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④ 성폭력 예방교육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 제7조 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상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포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자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 - 바닥면적에 따른 제외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1000㎡

이용원·미용원·목욕장 50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 - 건축시기에 따른 제외

동법 시행(1998. 4. 11.)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일부 공공시설만 포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 1층이 있는 삶



수상한 플래시몹  
**1층이 있는 삶**  
-20년 넘은 넓은 장애인들의법 개정하라-

첫번째 기자회견

일시 11월 11일 11시(수요일)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주최 생활편의시설장애인접근및이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매주 수요일 12시 수상한 플래시몹 진행합니다^^

## 1층이 있는 삶

원고 김\*\*, 이\*\*에게

가. 피고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은

(1) 직영으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편의점을 원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고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편의점을 원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포설비를 설치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1)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점포설비를 설치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1)항의 편의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면서 2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호텔신라는 서울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 전체 객실의 각 3퍼센트 이상을 원고 김\*\*, 이\*\*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하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9 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 2 조 제 5 호 및 제 6 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형벌(양벌규정 포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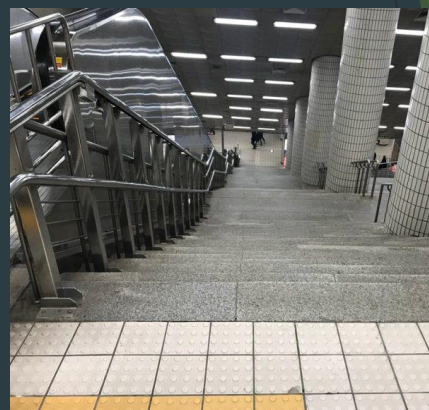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별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내부시설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도시철도 역사	○	○	○	○	○

## 2017. 10. 20. 신길역 추락 사망 사고 발생



## 지하철 역사 리프트 No! 승강기 Yes!



## 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

- ▶ 사건명 : 차별구제
- ▶ 원 고 : 이\*\* 외 4
- ▶ 피 고 : 서울교통공사
- ▶ 청구취지 : 피고는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사내 환승통로,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사내 환승구간, 지하철 1, 5호선 신길역사내 환승구간,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사내 이동구간, 지하철 6호선 구산역사내 이동구간에 원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각 설치하라.

## 인권위의 시정권고 (2009. 3. 2.)

- ▶ “휠체어리프트는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기존 휠체어리프트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경보음과 점멸등이 작동되면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일정 정도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 창원지법 2008.4.23. 2007가단27413 판결

“일상생활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어 비장애인에게는 그 존재의 가치조차 논의하지 아니하는 이동권이 단순히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이 시대의 모순일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모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결할 문제로서 사람들의 조그마한 노력과 비용이 부담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더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이동권마저 비장애인과 의 형평성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1심 판결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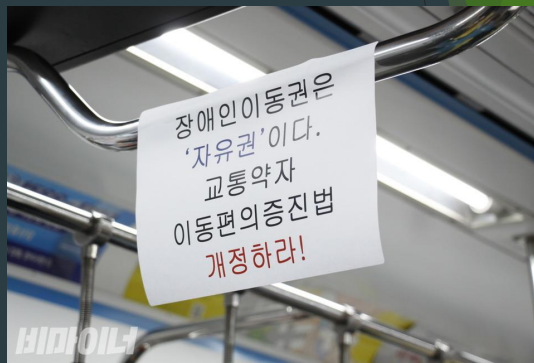
- (1)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기준에 따라 바로 구체적 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님. 교통사업자 등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위에 열거된 여러 시설 중 유효, 적절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승강기 설치를 구할 사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청구사건은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 하는 ‘비송 사건
- (3)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어 그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2심 판결 요약

- (1) 이 사건 각 역사의 및 이 사건 각 지점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동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지점에 계단 등과 휠체어리프트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2)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및 통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곧바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교통사업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이 있는 점, 예산의 확보나 사유지 매입, 국유지 점용 허가 등은 피고의 의지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가 24개에 달하고, 피고 및 서울시가 전체 역사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은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지하철 승강기 설치 청구소송, 절반의 승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이하 “행위자 등” 이라 함)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두를 위한 디자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도시의 조성 또는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5

## 모두를 위한 디자인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대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 기본원칙 - 장애주류화 ?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의 관계, 권리보장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 탈시설 지원법안, 학대특례법 개정안 고려
- ▶ 장애인의 참여 보장
- ▶ 구제수단?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국내 법제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보' 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구성
- ▶ 호주 Gemma Beasley vs Australia 사건
- ▶ 헝가리 발리더티 재단의 진정 사건

##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개인 및 집단 진정제도 도입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그간 개인 진정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의 경우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선택의정서에 가입해 온 것을 감안하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검토를 위해서 협약 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등에 대해 장애 차별사건에 대한 결정사례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제반 절차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1990. 7. 10. 발효)
-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2000. 12. 22. 발효)

##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 강의 목표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왜 가입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 김형식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복지에서 인권으로, 어가(2019)
- ▶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나남(2017)
- ▶ [2103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
-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임성택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8)
- ▶ 이주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 ▶ 2020. 11. 25.자 더인디고 기사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 ▶ 2018. 8. 29.한겨레 “다치고 소송해야 설치되는 승강기”
- ▶ 2020. 12. 3.자, 2020. 12.9.자, 2021. 1. 22.자 비마이너 기사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1&PAGE=1&topTitle=](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1&PAGE=1&topTitle=)

감사합니다!

이주연 변호사 [jelee@jipyong.com](mailto:jelee@jipyong.com)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4. UN CRPD의 역사와 현안

강의자 : 우주형  
주최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역사와 현안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 CRPD의 역사적 배경



## 본질적인 질문 -Why?



국제장애권리협약의  
필요성

### □ 세계 인구의 15% 장애인 : 세계장애보고서(2011)

- 전체 장애인 가운데 약 2% 정도만 가장 초보적인 건강, 교육 서비스 접근 가능.
- 주택 소유, 기타 재산, 권리의 행사 영역: 빈곤. 빈민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 ..
- ❖ 세계 80%의 장애인이 실업 *The Poorest of the poor*
- ❖ 50%에 해당하는 장애는 예방 가능하며 빈곤과 밀접한 관계
- ❖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남태평양 지역에 장애로 인해 간접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전체 가구의 25%로 추정.
- ❖ 장애 여성은 장애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복합장애의 피해자
- ❖ WHO의 세계질병부담연구(2000-2004)는 세계장애출현율을 19.4%로 제시함.
- ❖ 세계건강조사에서는 여성의 장애출현율이 남성에 비해 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는 인권문제

- 장애인들은 불평등을 경험한다.  
예) 장애로 인하여 보건의료, 고용, 교육, 정치참여에 장애인들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할 때
- 장애인들은 존엄성에 손상을 입기 쉽다.  
예) 장애로 인하여 폭력과 학대, 편견, 무례에 시달릴 때
- 일부 장애인들은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예) 장애인들에 대한 불임 시술 강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 수용, 또는 법적 무능력자로 간주될 때 등등

## UN의 선언문을 통해 본 장애 인권의 역사

- UN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태어났다.
  -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
  - 의료, 교육, 훈련, 재활, 경제적 안정, 가정 및 지역생활을 할 권리 규정
- 장애인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
  - “..어떠한 구분, 구별, 차별이 없는...”
-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
  - 지역생활, 보호, 치료, 임신중절 금지 등
-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일반 규칙 Standard Rules on the Equalis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
  -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등

## CRPD는 인권의 역사

-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ople, 198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sation of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993)
- 1990년대 40개국 이상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일련의 국제적인 문건들이 장애가 인권문제임을 강조

## 인권의 기본 문서

- 1) 세계 인권 선언 (1948)
-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66)
-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66)

###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인권 조약 문서

-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65)
-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 (1979)
- 6)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및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1984)
- 7) 아동 권리 협약 (1989)
- 8)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 (1990)
- 9)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2006)

## 장애인 권리 협약의 배경

- 세계인권선언 (1948), A B 규약 (1966)
  - 장애인을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회보장과 보건 정책의 대상
- 장애인은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
- **장애의 개념:** 의료적/개인의 비극적 모델→사회적 모델 →권리 모델  
의료, 복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와 권리/인권의 문제
- **同化적 통합(Integration)에서→ 포괄적 통합(Inclusive)으로 전환**
  -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 격리, 과잉보호, 배제 (exclusion) 등 인위적 요인을 제거하여 포괄적 통합의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전환

## UN의 복지에서 권리에로의 패러다임 변화: 1970년대 시작

- **장애인 대상 세계 행동계획 1982-92.**  
세 영역의 장애정책 구조화 - 예방, 재활, 기회 평등
- **1993년 유엔 총회 장애인의 기회 평등화**
  -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장애차별 금지 국내법 제정토록 촉구
- **2006년 유엔 총회, 유엔장애인권리와 관련된 주제 선정**
  - UN 장애인권리 협약 2008년 5월 3일 국제적 효력 발생
- 한국정부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
  - UN 장애인권리 협약 2009년 1월 10일 국내 효력 발생

## 장애인권리협약

###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12. 13. UN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

- 21세기 최초의 인권조약,  
유엔 역사상 가장 빠르게 마련된 조약
- UN이 2001년 제56차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한 이래 5년만에 결실
- 멕시코 Vincent Fox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제안
- 2002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8차 회의를 통해 완성 (4년)

- . 2007년 3월 30일 첫 서명
- . 2008년 5월 3일 국제적 효력 발생
  - 20개국 비준 가입하고 30일 후 발효
  - 2021. 8. 현재 182개국 비준 (선택의정서 96개국 비준)

## 장애인권리협약(CRPD)

###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추진 경과

- 보건복지부장관 협약 서명(2007.3.30)
- 정부안 국회 제출(2008.6.18)
  - 생명보험 가입 관련 상법 충돌 협약 1개조항 유보  
(협약 제25조마호)
  - 선택의정서 비준제외  
(진정제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
- 국회 본회의 통과(2008.12.2)
- 외교통상부, 비준서 UN 사무국 기탁(2008.12.12)
  - UN 사무국 기탁 30일 후 발효
- 협약 국내 발효(2009.1.10)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9월 17일, 장애인권리협약이 유보조항이 없이 비준되어야 하고, 선택의정서의 가입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CRPD)

한국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항

- 제6조 여성장애인,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

구성 - 전문, 본문 50개 조항, 선택의정서 18개 조항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 협약 감독기구
- 한국위원으로 김형식위원(2011.-2018.), 김미연위원(2019.-)

##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 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 가입
-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1966) - 가입
- ③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가입
-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1979) - 가입
- 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 가입
- 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 가입
- ⑦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 미가입
- ⑧ **장애인 권리협약(2006. 12. 13.) - 가입**
- ⑨ 강제실종 보호 협약(2006. 12. 20.) - 미가입

## CRPD는 인권의 역사

- UN장애인권리협약은
  -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담고 있는 가장 최신의 규범
- ⇒ 장애인의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들을 개괄적으로 규정
- 이 규정의 목적은
  -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증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며, 장애인의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하는데 있음.

## CRPD는 인권의 역사

- UN장애인권리협약은
  - 인권을 장애에 적용하여, 일반적인 인권의 내용을 장애인과 관련하여 구체화하고 현존하는 장애 관련 국제법들을 명료하게 하는 역할
- ⇒ 어떤 국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UN장애인권리협약은 그 국가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인권협약을 통하여 해석하는데 도움을 줌.

## CRPD의 일반원칙 : 핵심 8대 원칙 (제3조)

1.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2. 차별금지
3.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
4. 인간의 다양성·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5. 기회의 평등
6. 접근성
7. 남녀평등
8.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 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

## CRPD 비준국가의 일반적 의무

- 필요한 경우 입법 및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 관습, 또는 관행을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 모든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를 포함시킨다.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관행을 억제한다.
- 모든 개인, 단체 또는 사기업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RPD 이행과 인권 실천

- 국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들과 협의**하여야 함.
  - 협약은 공적/사적 기관들에게 장애인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할 것을 요구함.
  - 선택의정서는 **진정절차와 조사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절차는 CRPD를 모니터링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직접 참여 하에 인권의 틀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장애의 개혁을 진전시킴.
- ⇒ 핵심 메시지는 장애인은 관리되는 '객체'가 아니라, 동등하게 인권을 존중받고 향유하는 것이 마땅한 **'주체'**라는 것임.

###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은 ?

- 모든 장애 영역과 모든 정책(입법) 영역을 망라하는 법적 도구
- 법적 구속력: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적 문서  
권리보장을 위한 의무와 주체, 권리와 의무간의 관계를 명확히 개념화 함
- 국제 인권 도구이며, 개발협력 촉진 도구

##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총 50조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표

- 전 영역에 걸친 권리의 인정.
- **복지/시혜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이동**
- 권리 기반의 발전 보장 촉구

###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

-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을 향유 재확인
-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을 보장. 장벽철폐를 위한 '편의제공'결여와 '적극적 조치'의 결여도 차별임을 인정함.
- 기본적 욕구충족을 인정하여 본질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곧 권리실현
- 장애의 종류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 상 지위의 차이 제거
- 모니터링 (감시와 검토)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
- **선택의정서 총 18조**

21

## 권리 협약의 구조 (1)

전문 Preamble

1. 목적 Purpose

2. 개념 Definitions

3.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4. 일반의무 General obligations

5. 평등과 비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6. 여성장애 Women with disabilities

7. 아동장애 Children with disabilities

8. 인식 개선 Awareness-raising

9. 접근성 Accessibility

10. 생명권 Right to life

11.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12. 법앞의 평등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13. 사법 접근권 **Access to justice**

14. 신체 자유 및 안전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5.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6.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17. 개인의 존엄성 보호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18. 이주 및 국적의 자유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19.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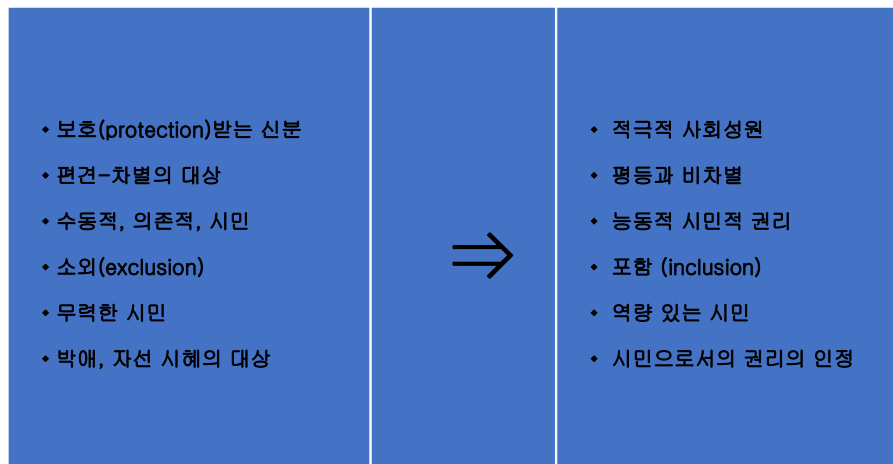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 권리 협약의 구조 (2)

- |   |   |
|---|---|
| 20. 이동권 <u>Personal mobility</u>  | 29. <u>시민생활 참여권</u> <u>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u>                                 |
| 21. 표현의 자유, 정보권 <u>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u> | 30.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br>Participation in <u>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u> |
| 22. 사생활 존중 <u>Respect for privacy</u>   | 31. 통계와 자료수집<br><u>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u>   |
| 23. 가정생활존중 <u>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u>                                   | 32. <u>국제 협력</u> <u>International cooperation</u>   |
| 24. 교육권 <u>Education</u>  | 33. 국내이행 및 감독 <u>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u>   |
| 25. 건강권 <u>Health</u>   | 34 to 40. <u>International monitoring mechanism</u>   |
| 26. 재활 <u>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u>                                       | 41 to 50. <u>Final clauses</u>  |
| 27. 근로 및 고용<br><u>Work and employment</u>   | <u>Optional protocol</u>  |
| 28. 적절한 생활수준 <u>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u>               |   |

## CRPD의 현안과 과제

## 장애인의 신분적 변화



### Needs Paradigm → Rights Paradigm 시민으로서의 장애인 신분 변화

- 보호(protection)받는 신분 ⇒ 적극적 사회 성원으로
- 편견-차별의 대상 ⇒ 평등과 비차별의 추구
- 수동적, 의존적, 부정적 시민 ⇒ 능동적, 독립적 사회성원
- 배제(exclusion) ⇒ 포함
- 무력함 (Powerlessness) ⇒ 역량 강화
- 박애, 자선 시혜의 대상 ⇒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

Needs 와 Rights 간의 긴장은 쉽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님  
단,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기회가 보장된다면 존엄성을  
인정받는 시민적 자격을 향유할 수 있음

## 인권의 개념

-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음.
- 본질적으로 문화적 배경, 가치관, 연령, 성별, 능력, 환경 등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
- 일정기간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 평생 동안 보장 받는 것.
-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정부나 국회, 법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 인권에 대한 기본적 접근

- 1)인권감수성
  - 장애인의 실태,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고 접근하는 노력
- 2)인권적 판단력
  -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동이 인권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는 노력
- 3)인권 의식의 동기화
  - 다른 가치와 비교 하여 장애인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 하려는 노력
- 4)인권옹호행동의 실천의지
  - 장애인의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



## 인권의 개념과 헌법/ 국제법

-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연대성에 입각한 복지국가원리 수용'
- 제 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권(제31조), 근로의 권리(제 32조), 노동3권(제 33조), 건강권(제36조 3항), 가족생활 및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행복추구권(제10조), 남녀평등권 등
- UN 인권헌장 22조 :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실현 하는 권리를 갖는다.
- 대한민국 헌법과 UN 인권헌장 22조: 사회복지의 구체적 이념 위 법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 줌.

## 권리기반 접근

- 장애인을 권리의 소유자, 모든 사람과 대등한 인권/법을 가진 주체로 인식한다.
- 인간의 장애를 인간 다양성의 한 요소로서 인식하고 존중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과 태도 등 인권 향유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
- 사회와 정부가 장애인의 인권, 완전 통합, 참여를 지지하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 물리적 환경을 확실히 만들 수 있도록 책임을 짐.

## 장애인 중심 서비스

- 장애인 권리 중심 서비스 : '그 원리와 방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님
- 첫 단계부터 장애인 중심 서비스 계획으로 시작된다.
- 서비스기관의 기본전략:
  - ①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철학과 사명이 기관의 가치로 표방.
  - ②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자연적 권위를 인정하는 적극적 참여,
  - ③ 장애인 중심 서비스 전달을 위한 조직 문화 개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 (현존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장애인 중심 서비스 철학이 상충되는 요소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④ 장애인 중심 서비스는 사명감의 지속적인 점검과 기관 장의 성찰이 요구
  - ⑤ 장애인 중심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식과 전문성 (예, 서비스 전달에 사용되는 용어, 어투, 직원의 선발 등)을 위한 직원 및 이해당사자의 훈련을 위한 투자가 요구 됨.
  - ⑥ 장애중심 서비스 실천이 장기적인 실무형태로 자리 잡게 함. 상호존중, 장애인과 가족의 권위 인정, 이해 당사자와 업무상의 파트너십 관계 강화

## 권리기반 서비스 개발의 미래 방향성

- **개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존중으로 부터 :**
  -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취향을 기본으로..
  - 장애당사자의 강점을 인정하여 이에 반응하는 접근으로..
  - 장애 당사자의 주변인들로 하여금 선택된 지원에 강한 영향이 미치도록.
  - 가능한 한 공식화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것.
  -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할 것

## Vision: 완전통합 지향적 서비스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 장애인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
- 핵심욕구의 규명과 개념화
-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경청
-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사에 대한 존중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속적인 관계성의유지
- 서비스의 결과 보다 과정상의 질에 더 깊은 관심.
- 높은 수준/질의 결과를 보장하는 서비스 개발

## 권리기반 장애인 서비스

- '인권'기반의 장애인 기관은 완전통합(inclusion)을 위한 기회 창출과 장애인을 위해서(not for)가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하는(but with) 서비스 전달 지향
- 첫째, 기관을 찾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둘째,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하는가?
- 셋째, '서비스 plan의 개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이 plan은 공유되는가?
- 넷째, 서비스는 기관의 일방적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 다섯째, 기관 직원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여섯째,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들의 일상생활 환경과 패턴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가?
- 일곱째, 기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 여덟째, 기관의 직원/ 전문가들은 그들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 아홉째, 당사자의/부모의 자연적 권위는 인정하는가?
- 열번째. 기관의 자원과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인권문화의 확산 -Culture of Human Rights

- ◆ 강력한 인권문화를 구축하여 인권이 소수의 법률/ 인권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 차원에서 국민의 소유물(Owership)이라는 인식의 확산 필요
- ◆ 법적,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반국민의 관심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확산 되도록.
- ◆ 효과적인 인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개인적인 동기부여, 개인의 비전과 헌신 + 공동체의 총체적인 지원
- ◆ 인권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이상. 인간공동체의 비전.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정열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비전과 확신.
- ◆ 인권은 인류를 통합시키고, 평화와 정의, 상호에 대한 존경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게 할 수 있다는 확신.

‘한국사회/지구촌의 인간화’를 위해 이 보다 더 강한 이상이 있겠는가?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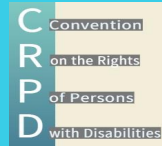


## 5. UN CRPD를 활용한 장애인의 실천적 역할

강의자 : 송정문  
주최 :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UN CRPD를 활용한 장애인의 실천적 역할



강사 :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 정 문

## 두 개의 제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지원인 제도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 활동지원사 제도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 등을 방문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지원인 제도

- 식사 보조 불가
- 화장실 이용 등 신변처리 지원 불가
- 근로지원 시간 외 출장이 종종 발생할 경우 조정 어려움

❖ 동시 이용 불가  
❖ 각각의 자부담금 부과

### 활동지원사 제도

- 출장지원 시 비용지원 불가
- 근로업무 지원 불가

## 차별에 대한 저항



“nothing about us! withou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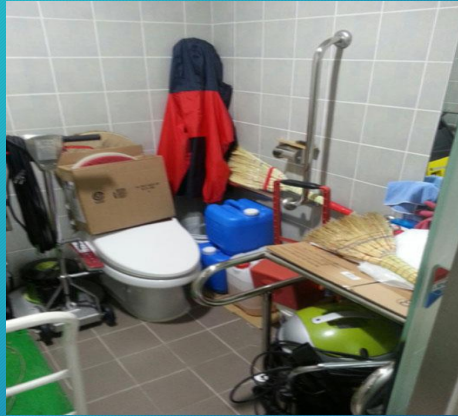
## 인권은 억압에 대항하는 저항을 통해 확장

C Convention  
R on the Rights  
P of Persons  
D with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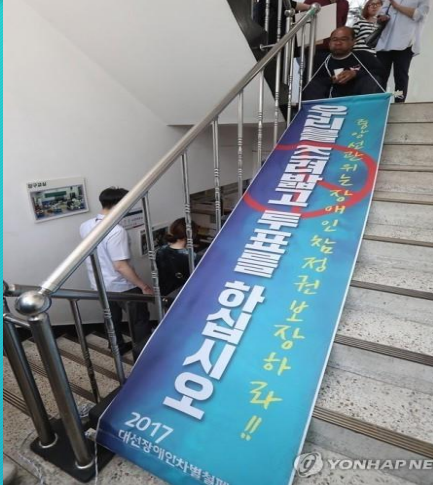
## 인권은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C Convention  
R on the Rights  
P of Persons  
D with Disabilities



## 인권은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C Convention  
R on the Rights  
P of Persons  
D with Disabilities



## 문제 개선의 필요

C Convention  
R on the Rights  
P of Persons  
D with Disabilities

### 근로지원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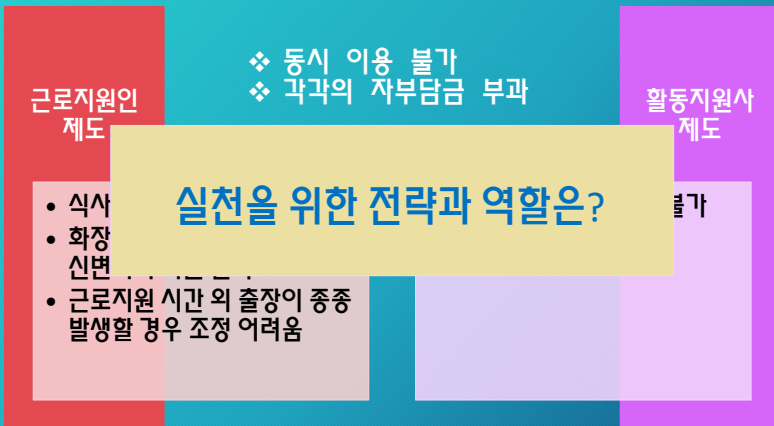
- 식사 보조 불가
- 화장실 이용 등 신변처리 지원 불가
- 근로지원 시간 외 출장이 종종 발생할 경우 조정 어려움

- ❖ 동시 이용 불가
- ❖ 각각의 자부담금 부과

### 활동지원사 제도

- 출장동행 시 비용지원 불가
- 근로업무 지원 불가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전파	-핵심 -무엇을 누구에게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세 내용 전파	
문제사례 또는 피해사례 파악	
권리 구제 지원	
피해장애인과 조직의 임파워먼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CRPD,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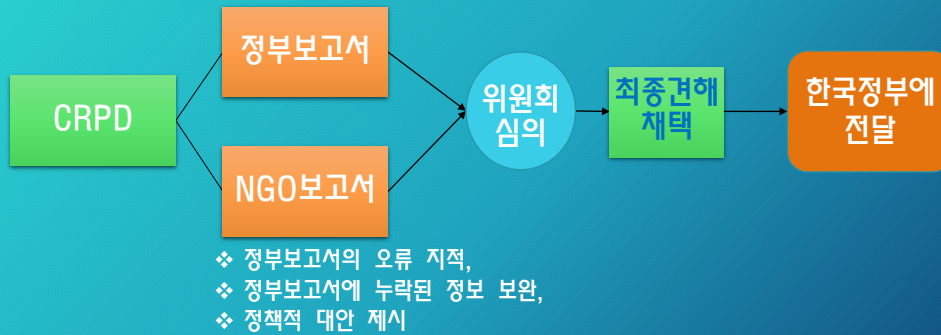
- 국제법도 비준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헌법 제6조 제1항)
- 2008년 12월 2일 한국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
- 그러나...
- 건강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제25조 제1항과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비준**

## CRPD, 장애인권리협약을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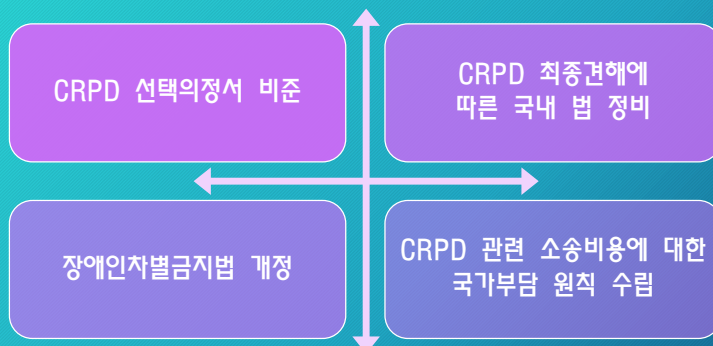


-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힘은 없음
- 그러나 당사국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나라는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됨**
-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함

## CRPD,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 UN CRPD를 활용한 행동 방향



## UN CRPD를 활용한 행동 방향 1



### 1.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현재 27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NGO연대’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지만, 국내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산발적인 비준 촉구 활동이 필요함

#### ※ 개인 진정제도

- ① 권리 침해를 느낀 당사국 내 정원인이 국내 권리구제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못 받은 경우 조약별 인권위원회에 통보
- ② 위원회는 당사자 주장을 심리, 당사국에 국제인권조약 위반 여부를 결정
- ③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 조치와 국내 법령 등 개정을 권고

## UN CRPD를 활용한 행동 방향 2



### 2. CRPD 권고(최종견해)에 따른 국내 법 정비

권고한 내용을 근거하여 정비가 필요한 국내법과 제도, 구제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절차적 행동이 필요

-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의
- ❖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및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외 삭제
- ❖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대리의사결정제도를 자원의사결정제도로 대체
- ❖ 보호작업장 등의 고용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배제 삭제
-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권리구제절차 개선
- ❖ 시범지원체계 개선 등등등

## 한국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중 일부



### 제8조 인식제고에 관한 CRPD 최종견해 (2014. 10. 03)

- ❖ ...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2019.03.08) 일부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 확대(이행률 저조)
-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2018년) 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 중이며, 교육 미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1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전파	-핵심 전달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2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세 내용 전파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3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문제사례 또는 피해사례 파악	-실제로 어떤 문제발생 또는 불이익을 당했는가? -몇 명이나 피해를 받았으며,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4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권리 구제 지원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는 어떠한가? -제도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5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피해장애인과 조직의 임파워먼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의식화할 것인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중 일부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CRPD 최종견해 (2014. 10. 03)

- ❖ 위원회는 당사국이 거주시설 내 외부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모든 폭력, 착취, 및 학대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심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의 강제 노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2019.03.08) 일부

- 국내 18개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8개소 피해장애인심터 설치·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공후견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체계 구축 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적은 인원으로... 업무가 과다하고, 피해장애인 심터의 부족 등 지역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 알아보기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전파	-핵심 전달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세 내용 전파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사례 또는 피해사례 파악	-실제로 어떤 문제발생 또는 불이익을 당했는가? -몇 명이나 피해를 받았으며,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권리 구제 지원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는 어떠한가? -제도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피해장애인과 조직의 임파워먼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도록 어떻게 의식화할 것인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중 일부



###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통합에 관한 CRPD 최종견해

(2014. 10. 03)

❖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 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증가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2019.03.08) 일부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에 탈시설 및 주거자원 강화
- 대규모 거주시설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소규모화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시설 전반의 개편 모델도 마련할 것
- 활동지원제도 예산은 2013년 362,786백만 원에서 2017년에는 605,795백만 원으로 증가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 알아보기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전파	-핵심 전달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세 내용 전파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사례 또는 피해사례 파악	-실제로 어떤 문제발생 또는 불이익을 당했는가? -몇 명이나 피해를 받았으며,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권리 구제 지원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는 어떠한가? -제도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피해장애인과 조직의 임파워먼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도록 어떻게 의식화할 것인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안은 무엇인가?

## UN CRPD를 활용한 행동 방향



### 3.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현재 우리나라 장차법은 차별금지 내용과 적극적 조치, 합리적 조정 등이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개념 내에서 혼재되어 있음.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 편의증진법에 의거한 편의제공 의무 사항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우선순위 및 적용 문제 발생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적극적 조치 개념 도입 필요



예)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2(General comment No.2) 해석의 준용

※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 실질적인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조치.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
- 적극적 조치는 '합리적 조정' 과 구분되어야 함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 알아보기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전파	-핵심 전달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세 내용 전파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사례 또는 피해사례 파악	-실제로 어떤 문제발생 또는 불이익을 당했는가? -몇 명이나 피해를 받았으며,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권리 구제 지원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는 어떠한가? -제도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피해장애인과 조직의 임파워먼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도록 어떻게 의식화할 것인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안은 무엇인가?

## UN CRPD를 활용한 행동 방향



### 4. CRPD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원칙 수립

현재 법원의 소송을 통한 법률구조가 적은 이유는 비용의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소송을 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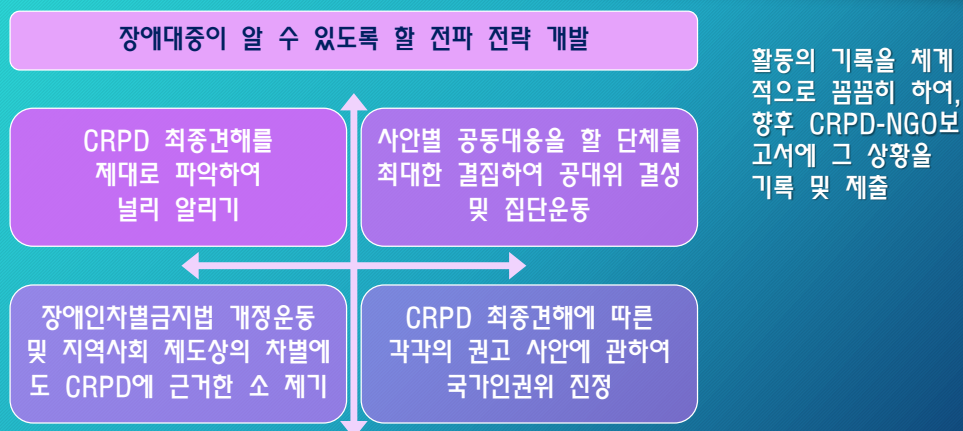
- ❖ 차별 등 장애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자금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 만이 대상이 아님.  
즉 모든 장애인의 문제
- ❖ 따라서 장애인차별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우, 자금 능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 알아보기



역할	실천에 앞서 파악해야 할 것들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전파	-핵심 전달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 상세 내용 전파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사례 또는 피해사례 파악	-실제로 어떤 문제발생 또는 불이익을 당했는가? -몇 명이나 피해를 받았으며,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권리 구제 지원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는 어떠한가? -제도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피해장애인과 조직의 임파워먼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도록 어떻게 의식화할 것인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의 역할은?



##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 ❖ 배제를 포함한 차별과 편견은 그저 사회적 약자여서 오기도.
-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동할 때,  
진정한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6. UN CRPD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강의자 : 우주형  
주최 :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강사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 와 「심신장애자복지법」

- 1981년 -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
- 이 해에 우리나라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국 장애인복지의 기본법  
⇒ 1981년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에 태동기를 여는 해

##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 와 「심신장애자복지법」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 기준으로 4기 구분
  - 제1기(1981년 이전) : 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절
  - 제2기(1981~1988) :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장애인복지이념의 등장과 태동기
  - 제3기(1989~2006) :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
  - 제4기(2007~현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

##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 와 「심신장애자복지법」

- 2007년 : 장애인법제사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
  - 장애인계 숙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
  - 「장애인복지법」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 와 「심신장애자복지법」

- 1945년 8·15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제는 주로 군경희생자 중심
  - 이 시기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로는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등으로 장애인복지가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로서는 최초의 개별법에 해당하며, 그 당시 중학교 평준화에 따른 문제해결책으로서 미흡하나마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
- 1981년에는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처음엔 주로 권고조항과 선언적 의미의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이루어진 법률이었음.
  - 이 법의 제정으로 그나마 장애인이 법률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장차 장애인복지 발전의 기반 마련
  - 당시 정부의 법률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

## 「장애인복지법」의 역사

- 70년대 초부터 장애인복지관련법 제정은 정부에 건의되고 약속되었으나, 유엔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 관련해 급물살 탐.
- 유엔은 1975년 12월 9일, 제30차 총회에서 '장애인 권리선언' 채택
- 다음해 12월 16일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을 위한 해(International Year For Disabled Persons)'로 정함.
- 1979년 11월 27일 제34차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장애인을 위한 해(International Year For Disabled Persons)'라는 명칭을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로 변경
- 주제도 '완전한 참여(full participation)'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으로 변경
- 유엔은 1981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IYDP)'를 선포하면서 각 국에 28개항의 조치를 권고하였는 바, 핵심적 내용 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습관의 제거를 위해서 현존 법률을 재검토할 것'이 포함
- 이러한 유엔의 권고는 우리 정부가 장애인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1980년에 '장애자복지법' 제정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게 됨.

## 「장애인복지법」의 역사

- 1980년 4월,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국에서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7월 ‘심신장애자복지법’ 초안 마련
- 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와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981년 5월 8일 국회 제출
- 그러나 확정된 정부안의 내용은 당초 초안보다 후퇴함.
- 예컨대, 국무총리 직속 심신장애자대책협의회 설치 조항과 장애자실태조사 제도화 조항 등 삭제
- 대부분의 강행규정(～해야 한다)을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변경
- 이 결과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실효성 있는 법이 아닌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형식적인 법이 됨
- 정부의 장애인 인식은 적절한 복지제도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유엔 등의 권고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재활분야의 새로운 상황들을 세계기구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이었음. - 보여주기식 장식용 법

## 「장애인복지법」의 역사

-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회 보건사회상임위원회에서 3차례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고, 1981년 5월 19일 제 107회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동년 6월 5일 제정·시행
- 최초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본문 5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현행 「장애인복지법」 9장 90개조항에 비해 간단한 내용의 장식용 법으로 출발
- 「심신장애자복지법」의 문제점
  - 국제기구의 압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법 제정, 법 내용 다수의 임의조항, 시행령·시행규칙의 미비, 예산조치의 부족 등
-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지금까지 3차례 전부개정과 수십 차례의 일부개정 있음.
  - 이 법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만큼 이 법의 개정도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점에서 국회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항상 계류 중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님.

## 1) 1989년 전부개정

- ①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함.
- ②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
- ③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규정
- ④ 장애인등록제 실시 및 장애인 수첩제도 도입함.
- ⑤ 복지조치 다양화
- ⑥ 장애인복지시설 개편
- ⑦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 및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 ⑧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주간 설정

⇒ 기존 법에 비해 복지조치 등에서 매우 구체적이며 다양한 조항들이 규정되었으나, 여전히 다수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

⇒ 개정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 시행되어 특히 저소득장애인에 대해 의료비·자녀교육비 지급, 보장구 교부, 자금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계보조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

## 2) 1999년 전부개정

- ①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둠.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요 행사, 민간주최의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하도록 함.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과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
- ④ 장애인보조견의 육성·보급 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거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이용거부를 금지함.

### 3) 2007년 전부개정

- 2000년 이후 장애계는 자립생활 및 사회적 모델의 맥락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실천적 이념으로 소비자주의와 당사자주의를 결합한 ‘**이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가 대두되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 과정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청됨.
- 그 결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의 전환 등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게 됨.
- 2007년 전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에서 수행되어온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당사자주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게 되었음.

### 4) 2007년 이후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들

- 1)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 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상의 기존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개정이 이루어짐.
- 2) 소위 가짜 장애인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2007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문 심사기관으로 장애등급 판정심사가 확대되면서 법률 규정에 국민연금공단을 명시(2010년 5월 일부개정).
- 3)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상의 활동지원급여 규정을 정비
- 4) 2011년 3월 일부개정 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하는 것이었음
- 5) 2012. 1. 개정 법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및 외국 인도 장애인등록 허용
- 6) 언어재활사를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자격증으로 신설
- 7) 장애인 학대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2012.10.22. 일부개정)
- 8) 2015년 6월 개정 법은 장애인학대를 다루는 전문기관의 설치를 명문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4) 2007년 이후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들

- 9) 2015. 12. 개정 법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대상 교육기관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확대,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증 인정 규정 신설함.
- 10) 2017. 2. 개정 법은 장애인 가족지원 규정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1) 장애인의 문화환경 정비 규정에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외에 '관광활동' 추가(2017.9.19. 일부개정)
- 12) 2017. 12. 19. 일부개정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 마련, 장애인등록 가능 외국인에 난민인정자 추가 등

##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 「장애인복지법」은 전반적인 내용상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에 해당
- 오늘날 장애인 관련 법은 복지를 권리로서 인정하여 복지권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질적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법제도인 것
-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인권 및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법이었음.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권리(제4조)와 차별금지(제8조)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의료·교육·직업·사회 재활 등에 관한 복지서비스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 국가의 사회보장급부의무의 목적은 국민의 사회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권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자유권 및 정치권 등의 영역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권보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현행법상의 체계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보아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그 외의 개별법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기본법으로서의 두 개 축으로 하면서 개별영역별 특별법에 해당함.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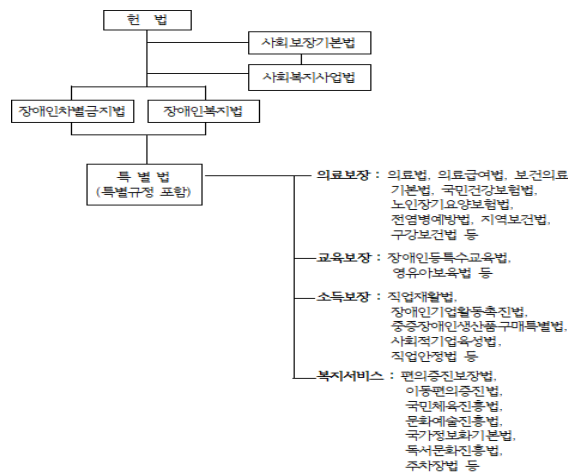
일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특별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편의증진보장법, 이동편의증진법,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표> 장애인 관련법상의 일반법과 특별법

#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의 하위법
  -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체계 내에 속하는 법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하나
  -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에 해당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국내 장애인관련법 체계상 일반법 내지 기본법에 해당

#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그림> 현행법 체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의 지위

# 「장애인복지법」의 구성

장 제목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제3조(기본이념)/제4조(장애인의 권리)/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제8조(차별금지 등)/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0조(국민의 책임)/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제14조(장애인의 날)/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제19조(사회적응훈련)/제20조(교육)/제21조(직업)/제22조(정보에의 접근)/제23조(편의시설)/제24조(안전대책 강구)/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제27조(주택 보급)/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제3장 복지 조치	제31조(실태조사)/제32조(장애인 등록)/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조의5(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제36조(삭제)/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제41조(자금 대여 등)/제42조(생업 지원)/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제44조(생산물 구매)/제45조-제45조의2(삭제)/제46조(고용 촉진)/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제49조(장애수당)/제50조(장애아 동수당과 보호수당)/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 계좌)/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장애인복지법」의 구성

장 제목	내용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제59조의2(삭제)/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제59조의7(응급조치외무 등)/제59조의8(보호인의 선임 등)/제59조의9(금지행위)/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제59조의12(사후관리 등)/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제61조(감독)/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제66조-제68조(삭제)/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제75조(보수교육)/제76조(자격취소)/제77조(자격정지)/제78조(수수료)
제8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제80조(비용 수납)/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제81조(비용 보조)/제82조(압류 금지)/제83조(조세감면)/제83조의2(정문)/제84조(이의신청)/제85조(권한위임 등)
제9장 벌칙	제86조(벌칙)/제86조의2(벌칙)/제87조(벌칙)/제88조(벌칙)/제89조(양벌규정)/제90조(과태료)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본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 장애인권리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하면서 최초의 국가 이행 보고서를 2014년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검토보고서인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 동 위원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을 밝힘.
-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에는 한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 이 병합 보고서는 1차 보고서의 우려 및 권고사항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답변하고 있음.
- 이 두 보고서에 나타난 권리협약 이행사항 중에서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1) 장애(인) 개념의 사회적 모델 전환에 관하여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PD/C/KOR/CO/1)에서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나타내고 있음에 우려 표명
-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동법이 협약이 지지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시키도록 할 것을 권고
- 또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새로운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하면서, 결과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 ⇒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복지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확대 보장될 것을 권고함.

## 1) 장애(인) 개념의 사회적 모델 전환에 관하여

- 장애개념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제1조~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정의·일반원칙 및 일반의무의 기본 토대이며 출발선  
⇒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이 의료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반함.
- 장애인 개념은 복잡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논쟁이 많은 개념이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은 포괄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정의함.
- 국제사회에서의 장애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도적으로 제시되었고, 선진국에서도 이에 기반하여 장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는 추세 - ICF

## 1) 장애(인) 개념의 사회적 모델 전환에 관하여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서비스가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복지법」개정(2017년 12월 19일)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본 개정 법률은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된다고 답변하고 있음.  
⇒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중증/경증으로 개편하는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으로 보기 어려움.  
⇒ 장애개념의 사회적 모델을 실질화하려면 현행 15가지 유형의 법정장애인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낙인을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등록제도까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장애개념의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은 단순한 장애등급제 폐지 수준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문제에까지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2) 장애여성에 관하여

-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장애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냄.
- 위원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거주시설 내, 외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 우려 표명하고, 아울러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장애여성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우려
-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등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는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는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면서, 당사국이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 2) 장애여성에 관하여

- 이에 대한 제2:3차 병합 보고서의 답변
  - ① 한국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여성장애인 지원강화'를 2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도 '여성 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장애인의 소득, 고용,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지원을 확대해왔음.
  - ② 특히, 정부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출산비용 지원을 운영하고 있음. 모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출산비용(태아기준, 1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③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남성장애인에 비해 경증(남 30만원, 여 40만원) 및 중증(남 50만원, 여 60만원) 여성장애인에게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 시설장비 용자 시 여성장애인 채용에 가점을 부여하고, 고용촉진유공자 선정 시 여성장애인 채용비율에 가점을 부여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생 모집 시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여성 맞춤형 직무개발 및 보급을 통해 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2) 장애여성에 관하여

- 현행「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여성 관련 규정
  -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3) 인식제고에 관하여

-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 등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함.
-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견고히 할 것을 권장
-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



### 3) 인식제고에 관하여

제2·3차 병합 보고서의 답변

- ① 2015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하였음.
- ② 다만,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무교육대상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저조한 편임. 이에 정부는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증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2018년)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지표개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강사양성시스템, 교육 모니터링 제도화, 민간부문 대상 인식개선교육 확대방안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증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임.
- ③ 한편,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2017년 11월 28일 개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 미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 ④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NGO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차별정도는 점차 나아지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아직까지 장애인차별 정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정부가 더욱 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4)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 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장애인에 여전히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음에 우려하고, 당사국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우려함.
- 위원회는 당사국이 거주시설 내 외부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모든 폭력, 착취, 및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게 접근가능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함.
-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의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

## 4)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2·3차 병합 보고서의 답변

- ①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총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국에 설치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피해 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지원을 위한 총 8개소의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 중임.
  - ② 구체적으로 폭력, 학대, 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장애인을 긴급 분리 조치한 후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하면서 심리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공후견법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체계를 구축 운영중임.
  - ③ 한편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였으며, 전국의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대전담기관 합동으로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2018년 5월) 함.
- ⇒ 2015년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59조의10이 신설되고, 2017년 개정으로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이 추가되었으나, 현장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적은 인원으로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가 과다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절대 부족 등 지역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

## 5)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리 분별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게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대해 우려함.
-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을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철회할 것을 권고

## 5)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제2-3차 병합 보고서의 답변

- 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 그러나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리 분별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보호자, 초청자, 연고자 등)마저 없는 경우 본인과 타인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적용하는 최소한의 규정임.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현금급여의 경우 국외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유사 타 법령에서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예를 들어 일자리 지원, 편의·이동 관련 감면·할인 등의 경우는 외국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이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제5호를 신설(2017년 12월 19일)하여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장애인 등록을 가능토록 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보편주의에 입각한 권리보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 6)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가정에 한정되는 것에 우려
- 심지어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서비스 조차 불충분한 실정이며, 또한 위원회는 원가정보다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더욱 많은 보조금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복잡한 인연을 직면하는 미혼모 등 원가정이 장애아동을 유기하도록 촉진하며 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 6)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3차 병합 보고서의 답변

- ①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를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회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외에도 장애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지속 추진하고 있음.
- ② 정부는 장애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장애아동의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인지 입양 부모인지 여부를 차별하고 있지 않음.
- ③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가족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 지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등)에 근거하여 산전·산후조리 도움 지원사업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임신·출산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라는 이유로 입양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6)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장애인권리협약은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에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 「장애인복지법」은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지 못하였음.

⇒ 관련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음.

⇒ 2017년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신설

## 6)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7)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정 수준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
- 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지원혜택 대상자 기준이 기존의 장애등급제에 기초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에 한정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였고, 또한 당사국이 장애등급제와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

## 7)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3차 병합 보고서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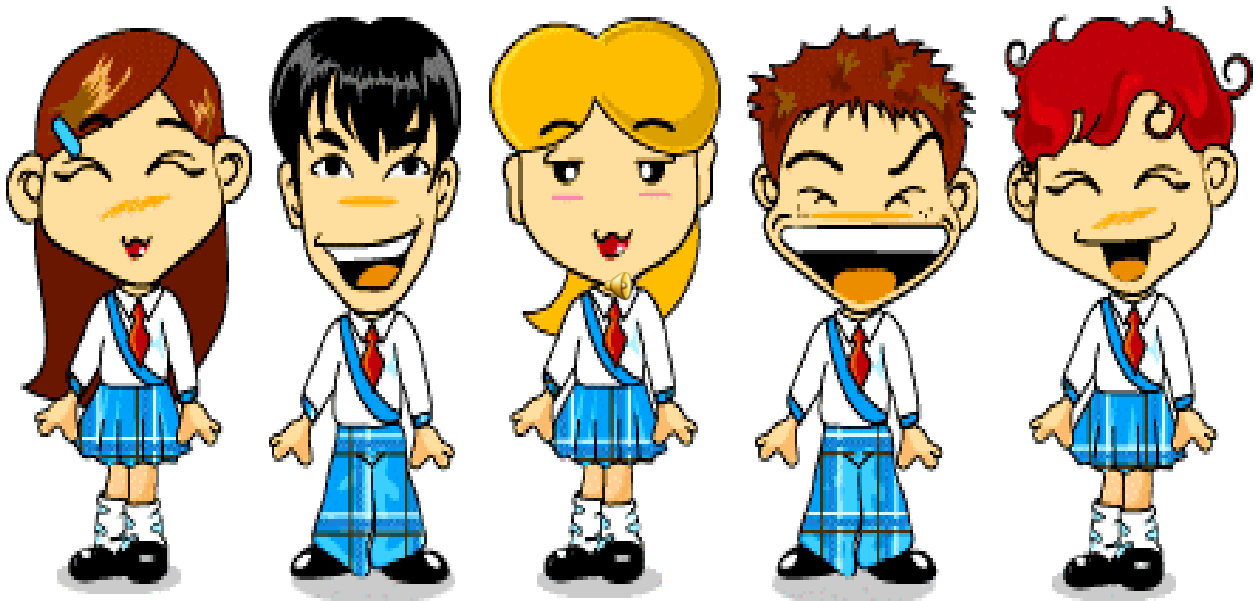
- ①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의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209,960원~289,960원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급여 수준이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정부는 기초급여액을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 나갈 계획임.
- ② 한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18세 이상의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20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장애수당은 2~4만원을 지급함.  
  
이미 2015년에 장애수당을 1만원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향후 단계적으로 장애수당을 인상할 계획임.

## 7)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여전히 복지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 가장 주된 이유는 장애인의 소득보전 대책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급여 대상의 제한과 급여 수준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
-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수당제도 역시 보편주의 방식이 아닌 선별주의 방식으로 집행함으로써 수당제도 개념의 혼동을 가져오기도 함.
- 법에는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는 보호수당제도(「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2항)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권리 차원이 아닌 여전히 시혜나 동정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

## 향후 「장애인복지법」의 방향성에 관하여

- 「장애인복지법」은 처음엔 형식적인 장식용 법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도 커져옴.
- 이 법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의 기본 틀과 체계를 세우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음.
- 오늘날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며 권리로써 정착되어가는 추세에 서비스법 역시 권리보장법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
- 최근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견과 장애인기본법과 자립생활지원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음.
-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이 권리보장의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에는 찬동하나, 법정책을 제대로 아우르며 집행할 전달체계의 확립으로서 별도의 특별법인 ‘국가장애인위원회법’의 제정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 좋은 법제도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온전한 하드웨어인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될 때 비로소 잘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임.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7. UN CRPD와 장애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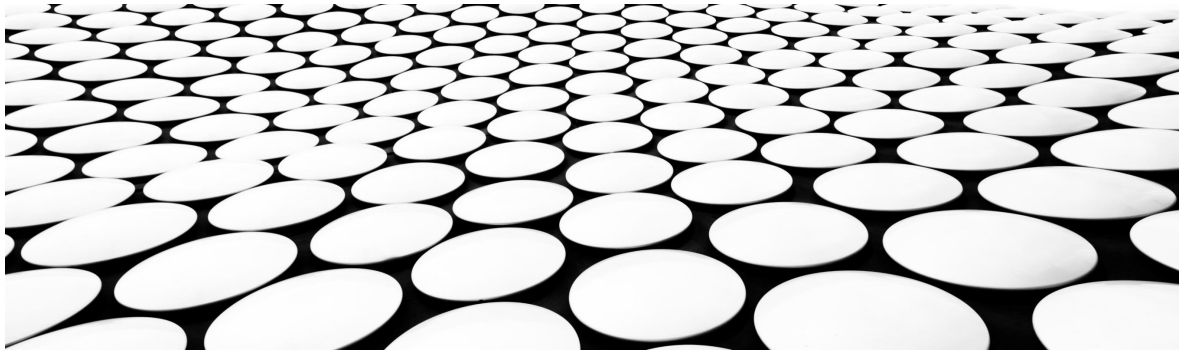
강의자 : 김효진  
주최 :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여성

김효진



---

### 강사 소개

- 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장애차별분야 전문위원
-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포장(대통령상)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2021-08-13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2015

-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범위의 인권을 향유해야 함
- 차별 금지와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함
- 사회적 장벽 제거를 위한 편의 제공과 적극적 조치 결여는 차별임
- 영양, 수질, 공중위생, 빈곤 완화, 사회보장, 교육, 고용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해야 함
-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막론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함
- 모든 정책 형성 과정과 평가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함

2021-08-13

## 인권의 구성 요소(4E)와 장애인 인권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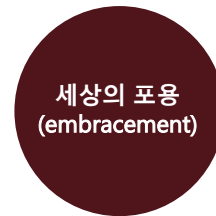
- 세계인권선언(1948)
- 지적장애인권리선언(1971)
- 장애인권리선언(1975)
- 장애인권리협약(2006 채택, 2008 20개국 비준발효)
- 장애인차별금지법(한국 2007)
- 장애인 인권 또는 권리 조례(200여개)



- 보완대체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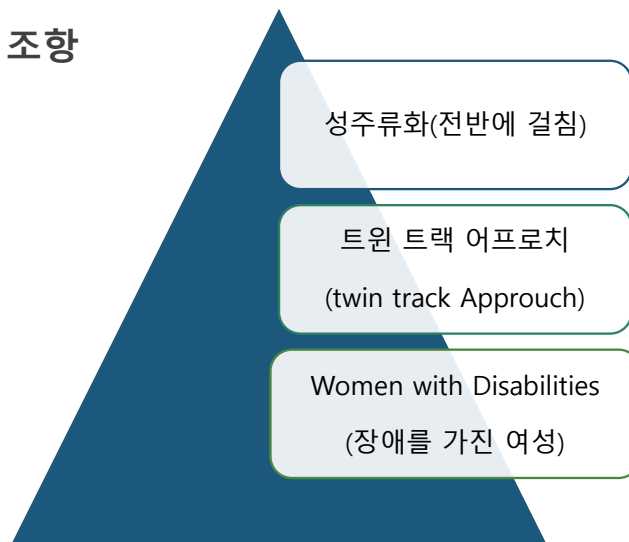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 피플 퍼스트 운동



- 발달장애인 일하는 회사, 베퍼베티

\* 출처 : 인권의 지평(후마니타스) 참조

## 장애여성 관련 조항



2021-08-13

## 전문과 일반원칙

### 성인지적 관점

#### Gender Perspective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때로는 갈등하는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여성 특유의 경험을 반영하며, 특정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

### 남녀평등

-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역이 장애남성 중심적인 성격을 가져왔기에 장애여성은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2021-08-13

## 전문과 일반원칙

### 장애소녀

#### Women and Girl with Disabilities

장애소녀들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조치 촉구, 장애아동의 개념에서 간과되기 쉬운 성인지적 관점에 관한 충돌 피하고 장애아동 조항 지지할 수 있게 됨.

### 폭력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폭력 및 학대 등에 관한 강력한 조치의 근거 마련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처한 폭력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 인식 촉구. 가정 안팎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해, 학대, 방치, 소홀히 대우됨, 폭사 그리고 착취 등 나열

2021-08-13

---

## 장애여성 단독조항

### 다중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 이중차별론은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경험을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비장애여성 또는 장애남성의 경험과 같을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장애여성의 고유한 경험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결국 한국의 장애여성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장애여성들의 차별경험을 다중차별로 보고 전 세계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이를 장애여성 조항에 반영해냄.

### 개발(development)과 향상(advancement), 역량강화(empowerment)

- 지향점.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마련 및 이행의 의무 강조

2021-08-13

---

## 일반 조항

### 8조 인식제고

-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정관념, 선입견 유해 관습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강조

### 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남녀간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의료서비스의 성적 불평등 개선. 생애 전반에 걸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및 시행. 여성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서비스, 교육 및 정보 접근권, 여성생식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문화관습적 관행 제거

2021-08-13

---

## 25조 건강

남녀간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의료서비스의 성적 불평등 개선. 생애 전반에 걸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및 시행.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서비스, 교육 및 정보 접근권, 여성생식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문화관습적 관행 제거

## 28조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조

2021-08-13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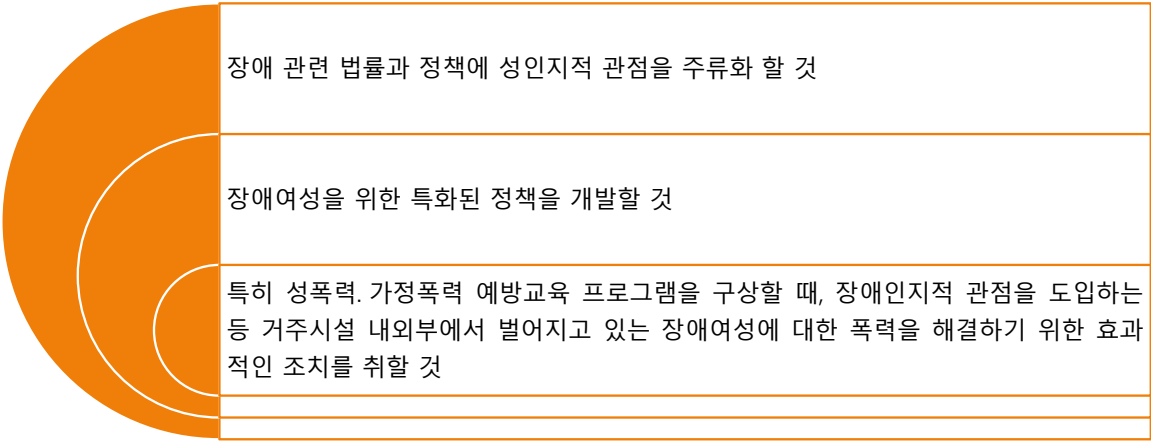
-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14년 9월 17일과 18일에 개최된 제147차, 14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CRPD/C/KOR/1)를 심의
-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165차 회의에서 최종견해 채택
- 대한민국은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점, 협약 제25조의 유보철회와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 쉼터의 설치 등을 권고받음.
-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치료의 폐지 및 외부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탈시설 정책 추진 등을 지적함.

2021-08-13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여성 관련 권고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할 것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등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2021-08-13

---

### <권고> 제6조 장애여성

- 13.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거주시설 내, 외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장애여성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2021-08-13

- 
-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등 거주시설 내,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든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는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2021-08-13

---

### <권고>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 33. 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관한 정보가 부재함에 우려를 표한다.
-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과 지역사회, 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강제불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의 효과 및 접근성 보장을 포함하여,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불임 사건을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2021-08-13

---

## <권고> 제27조 근로와 고용

- 51.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여성을 비롯한 장애인의 실업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장애여성의 고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를 발간할 것을 권고한다.

2021-08-13

---

##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중 장애여성



2021-08-13

## 제2, 3차 병합 민간보고서(1차 초안, 2019. 10. 03) 중 장애여성 - 6조 장애여성

이슈	권고를 위한 질문
1. 성인지적 장애인 정책 부재	임신·출산 지원 중심의 가족지원에서 장애여성 당사자 지원으로 전환
2. 계획조차 없는 장애여성의 고용확대	장애여성 채용 목표제 등 장애여성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조치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강화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과 의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
4. 만연하는 장애여성 폭력, 대응 못하는 국가정책	장애여성 폭력피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화된 전담 보호시설 운영과 사후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

2021-08-13

## 제2, 3차 병합 민간보고서(1차 초안, 2019. 10. 03) 중 장애여성 - 제17조 개인의 완전한 보호

이슈	권고를 위한 질문
1.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 실태 파악 불가 및 사전보호제도 부재	실제적인 통계조사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조치
2. 장애여성 강제 불임에 대한 보호 방안 부재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강제 불임 시술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강화	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을 완전히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대체법안을 마련할 계획

2021-08-13

## 제2, 3차 병합 민간보고서(1차 초안, 2019. 10. 03) 중 장애여성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이슈	권고를 위한 질문
2.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신출산 정보 제공 및 진료시설 절대 부족	안전하고 편리한 병원이나 진료시설 관련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2021-08-13

## 여성장애인지원법



출처 : 에이블뉴스(2021. 4. 29)

- 여성장애인 : 장애여성
- 지원법 : 기본법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전담 부서)
- 장애여성 참여
- 성통계, 성예산

2021-08-13

---

## 장애여성 관점

- 남성중심, 비장애중심주의 해체
- 장애인정책에서 성인지 관점
- 여성정책에서 장애인지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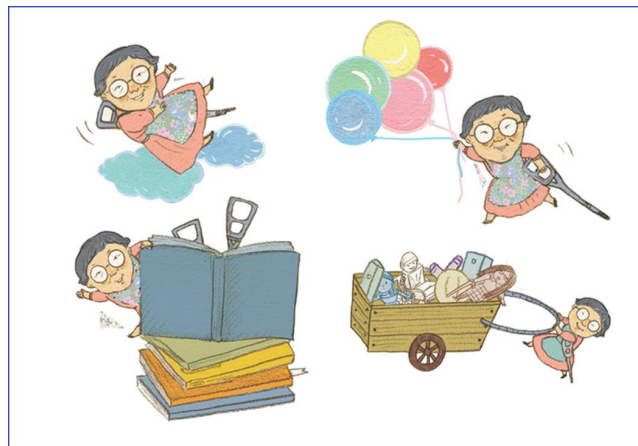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장애여성정책!  
모두를 위한 유연장애인권리협약!

2021-08-13

---

감사합니다!



2021-08-13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8. UN CRPD와 장애아동

강의자 : 최복천

주최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아동

---

2021. 10. 28

최복천 (전주대)

들어가며

## 국제적 장애인권리

- UN 19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결의  
1975년 '장애인 권리 선언' 채택
- UN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이룰 것을 권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 ADA(1990), 영국 DDA(1995) 등  
\*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2008)
-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채택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국제법적 성격)  
\* 한국 2008년 국회에서 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지님

3

## 장애인권리운동 사례\_탈시설

### ▶ 탈시설화를 위한 조치들

- 대규모시설 축소 및 폐지  
- 최소기준 충족의무화/'98년까지 118개 시설 폐쇄)
-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 1960년 존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켰음
  - 지적 장애인에 관한 대통령자문회의 신설
  -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센터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 승인
- 시설 장애인의 감소
  - 정신질환자의 수는 1955년 55만 8천명을 정점으로 감소
  - 지적 장애인은 1967년 19만 4천명을 정점으로 감소



4

## 장애인권리운동 사례\_교육권

### ➤ 장애인부모단체들의 옹호활동

- 1950년 정신지체자녀를 위한 전국협의회 구성(National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 지금의 ARC)



- 1975년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제정  
(→ 장애인교육법으로 1990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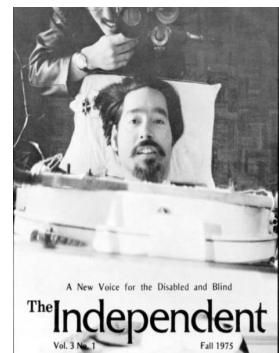


5

## 장애인권리운동 사례\_자립생활

### ➤ Independent Living Movement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인 권리운동의 중요한 중심축 중의 하나
- 에드 로버츠(Ed Roberts)는 자립생활운동을 이끈 주요 리더 역할
- 자립생활철학: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자기결정, 선택의 자유, 동등한 접근성, 의미있는 사회 참여 등
- 1972년 최초의 자립생활센터 설립 → 2000년 336개 센터와 253개 지부가 미국에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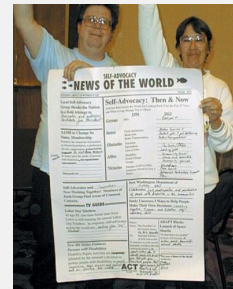


6

## 장애인권리운동 사례\_ 발달장애인

### ▶ Self-advocacy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기선택 강조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축이 된 자조집단 및 자기옹호 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되고 활동
- 대표적인 단체들
  - People First
  - Self Advocates Becoming Empowered(SABE)



7

## CRPD 기본 이해

8

## 제정 추진 경과

- 2001년, 53차 UN총회 장애인권리협약 제안
  -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 최초 제안
- 2002~2006년 특별위원회 개최(8차례)를 통해 협약안 수립
- 2006년 8월, 장애인권리협약안 완성
  - 12월, UN 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
- CRPD: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한 세계 최초의 국제규약
  - \*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일한 장애관련 국제협약

9

## 국내 추진 경과

- 2007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 협약 서명
- 2008년 12월, 협약 비준 국회본회의 통과
- 2009년 1월, 협약 국내발효
- 2011년 6월,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 2019년 3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

10

## 협약 구성 내용(총 50개 조항)

분야	하위분야	CRPD 해당 조항
일반		1. 목적/ 2.정의/ 3. 일반원칙/ 4. 일반의무
사회권	접근권	9. 접근성 / 20. 개인의 이동 21. 의사소통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사법행정 및 참정권	12. 법 앞에 평등 / 13. 사법접근/ 29. 정치와 공적생활 참여
	자립생활	19.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28.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교육 및 문화	24. 교육/ 30.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
	건강	25. 건강 / 26.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인재활
	노동	27. 근로 및 고용

11

## 협약 구성 내용

분야	하위분야	CRPD 해당 조항
자유권		5. 평등과 차별금지/10. 생명권/11.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14. 개인의 자유와 안전/15.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 자유/16.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의 자유/17. 개인의 고유성 보호/18. 이주 및 국적의 자유/22. 사생활 존중
여성, 아동 및 가족	여성	6. 장애여성
	아동 및 가족	7. 장애아동 / 23. 가정과가족에 대한 존중
기타	인식개선	8. 인식개선
	이행기제	31. 통계와 자료수집/32. 국제협력/33.이행 및 모니터링/ 34. 장애 인권리위원회/35. 당사국 보고/36. 보고서 심사/ 37. 당사국과 위원 회 간의 협력/38.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39. 위원회 보고서 /40. 당사국 회의/41. 기탁/ 42. 서명/43. 지속적 동의/44. 지역통합 기구/45. 발효/ 46. 유보/47. 개정/ 48. 협약의 폐기/49. 접근 가능 한 형식/50. 정본

12

## 장애 개념과 정의

- 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음.  
대신, 전문 (e)에서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또한 장애는,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
  - 목적 조항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개방적인 서술로 규정
- 장애 개념 **사회적 모델** 반영(\*사회적 환경, 문화적/역사적 변화)
- 장애(인)에 대한 정의 = 폐쇄적이 아닌 **열린 개념(개방형)**으로 접근

13

## [참고] 장애(인) 정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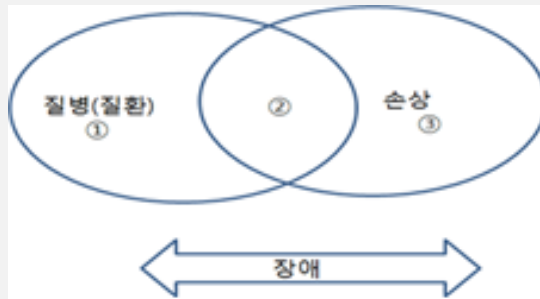
- **폐쇄형**
- 장애 범주 및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열하는 형태
  - 예: 한국, 일본 사례
- **개방형**
- **비범주적 접근 방식**
  - 지침 등에서 예시적 차원에서만 장애 유형(상태)를 제시
  - '무엇이 장애에 포함된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장애를 설명
  - 예: 영국, 미국, 독일 등

14

## [참고] 장애 정의와 범위

### ➤ 질병-손상-장애간의 관계성(다양성과 복잡성)

	손상	질환(질병)
선천성	(A) 선천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 (예, 청각 상실)	(B)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예, 희귀성 유전 장애)
후천성	(C) 후천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 (예, 척수장애)	(D) 후천성 질환 혹은 노화로 인한 장애 (예, 심장병, 뇌졸중)



15

## CRPD 장애아동 깊게 들여다보기

16



## CRPD 제7조(장애아동)

### ➤ 왜 별도의 조항?

- **포괄적인 권리 보장 필요**
  - 장애아동에 대한 접근이 일부 건강(예. 치료), 복지(예. 돌봄)에만 집중되어 왔고, 보다 포괄적인 아동권리 실현에 한계 노출
- **주류화(mainstreaming)**
  - 통합교육의 추세와 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주류화되어야 할 필요성 증대
- **(장애)아동 관련 국제협약의 효율적인 목적 실현**
  - 아동권리협약(CRC,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과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동일하게 장애아동 문제가 포함되어야 효과적으로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음

17

## [참조] 아동권리협약의 별도 장애아동 조항

### 제 23 조 (장애 아동)

- ①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그들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여건에서, 충분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향유해야 함을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특별한 돌봄을 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아동과 그들의 양육자에게 아동의 여건과 부모 및 기타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③ 장애 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경우 부모나 기타 양육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이 가능한 사회적 통합, 문화적 정신적 발달을 포함한 개인의 발달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이 교육 훈련, 의료 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여가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④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접근할 수 하는 것을 비롯해 예방의학 및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 분야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18

## CRPD 다른 조항과의 관계

### ➤ 병렬접근방식(Twin track Approach)

- 제7조(장애아동) 독립적인 조항을 존치하고, CRPD 타 관련 조항에 장애아동의 권리 및 이들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관련 조항

- 전문 (r)호: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장애아동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다시 강조
- 제3조(일반원칙):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한 개인으로서 장애아동이 갖는 정체성에 대해 존중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출생등록권 보장, 그에 따른 이름, 국적,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19

## CRPD 다른 조항과의 관계

### ➤ 관련 조항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2항]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유형의 양육시스템에 있어 **장애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필요한 경우 **양육의 책임을 지원**하도록 규정
  - [3항] 가족 내에서, 가정생활에 있어 장애아동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
  - [4항] 합법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해)
  - [5장]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확대가족,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 반드시 보장할 것을 보장**

20

## CRPD 다른 조항과의 관계

### ➤ 관련 조항

- 제24조(교육) : 장애아동의 교육권 인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마련의 의무를 규정
- 제25조(건강) : 장애아동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장애에 대한 예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명시
-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 장애아동의 교내활동, 놀이, 여가활동 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명시

21

## 내용 및 의의

### ➤ 제7조(장애아동) 제1항 & 제2항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 의미

- 비차별(Non-discrimination) & 동등한 권리
- 포괄적인 권리(the right of live, survival, and development) ⇒ 전인적 관점
- 적절한 조치와 지원의 책임성(가족, 지역사회, 국가)
- 정책, 프로그램, 의사결정 등에 있어 장애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구현 ⇒ 장애아동 중심의 관점

## 내용 및 의의

### ➤ 제7조(장애아동) 제3항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 ➤ 의미

- 보편적인 발달적 욕구와 **생애사적 과업** 향유,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필요성
- **자기선택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필요성 ⇒ 단순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권리실현의 주체**

23

## 생각해 보기

24

## 장애아동 현황과 특성

### ➤ 국내 등록 장애아동 현황

- 2020년 기준 등록장애 아동(만18세 미만)은 대략 7만5천명 수준이며, 전체 아동대비 0.9% 수준
- 장애아동 중 발달장애(지적+자폐성)아동이 전체 아동의 67.6%, 뇌병변장애아동(뇌성마비) 13.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발달, 중복/중증 장애아동의 특성에 조응하는 지원 필요

(20.12월, 단위: 명)

종별	계	지적	뇌병변	자폐성	청각	시각	언어	지체
인원	75,482	35,517	9,964	15,454	3,855	2,125	4,486	2,843
비율	100.0%	47.1%	13.2%	20.5%	5.1%	2.8%	5.9%	3.8%
종별	심장	정신	뇌전증	신장	간	안면	장(요)루	호흡기
인원	269	15	220	188	388	37	75	46
비율	0.4%	0.0%	0.3%	0.2%	0.5%	0.0%	0.1%	0.1%

## 장애아동 정의와 범위

### ➤ 의료적 정의 방식 vs. 지원 중심 정의 방식

#### □ 발달장애란

- 1) 심각한 선천적인 장애로 정신 또는 지체장애, 정신 및 지체장애의 혼합이 원인이고
- 2)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 3) 무기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 4) 자조기술,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성,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인 자급자족과 같은 주요한 생활영역 중 3가지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보인다.
- 5) 평생 또는 장기간에 걸쳐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된 특수한 지원, 간학문적이거나 포괄적인 지원, 개별화된 지원,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에 대한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다.

### ➤ 장애아동 범위와 지원서비스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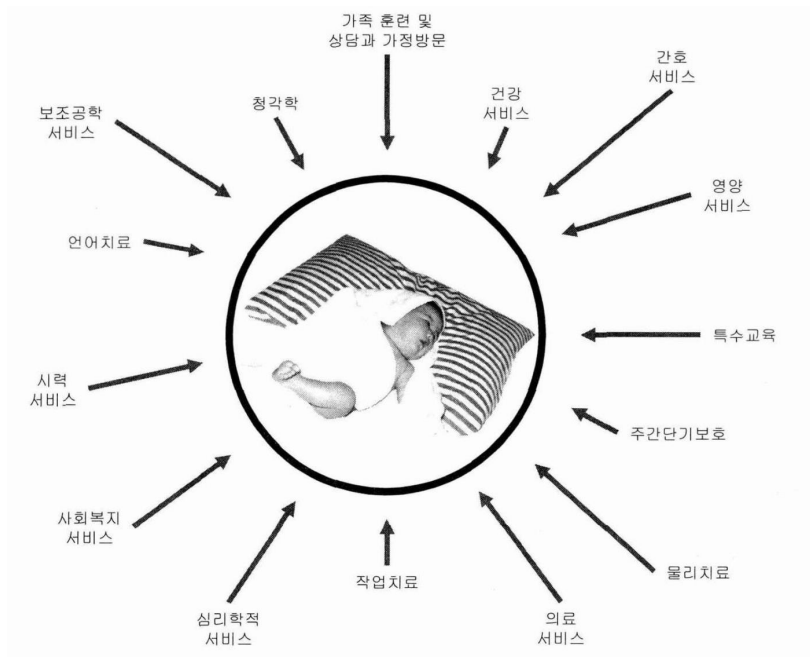
- 국내 법률 및 부처간 지원 대상자에서도 상이(예. 건강장애)
- 복지서비스는 등록장애아동에 한정? (예. 발달지연)

26

# 장애아동 특성\_지원의 다양성

## 장애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유형

출처: 이소현(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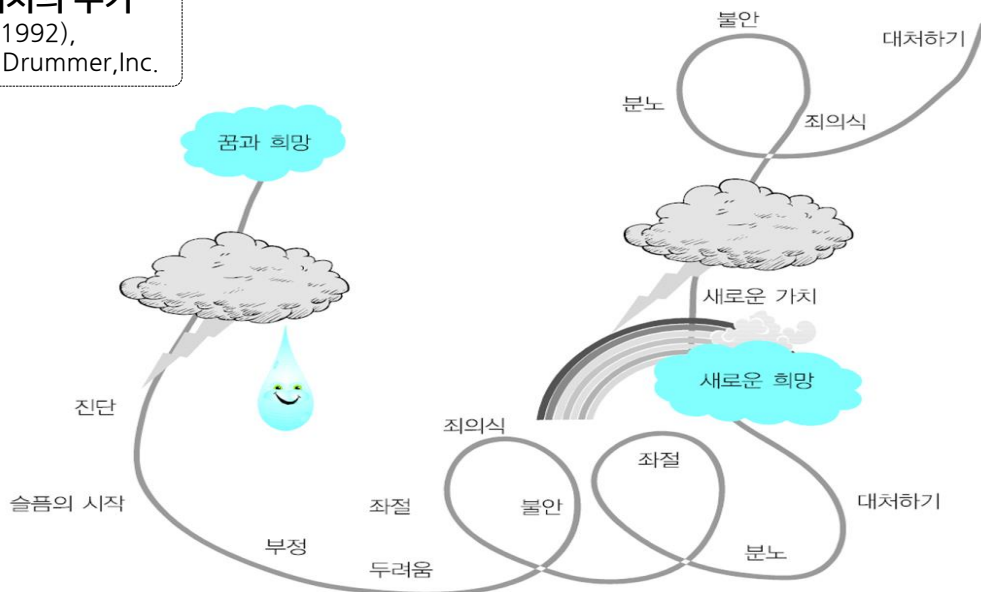


27

# 장애아동가족 특성\_생애주기적 도전

## 슬픔과 대처의 주기

J. S. Ransdell(1992),  
The Different Drummer, Inc.



28

## 장애아동가족 특성\_가족전체성

### 부모(부부관계)

- 경험하는 어려움: 양육문제, 경제활동 제약, 사회활동 및 여가생활 기회 부족, 신체적/정서적 돌봄 부담, 부부간의 갈등 및 이혼 위험 증가 등

### 형제자매

- 경험하는 어려움: 소외감, 외로움, 자기 정체성형성문제, 심리적 적응문제 등  
- 긍정적 영향: 성숙, 높은 책임감, 자립심, 자아존중감 등



### 조부모

- 경험하는 어려움: 손자녀 신체적 돌봄 및 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 치료 및 교육 등 정보 부족, 사회 지지망 부족 등

장애아동

29

## 장애아동가족 특성\_주요 어려움

### ➤ 장애아동 가족지원의 양대 산맥

#### 경제적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부과하는 주요 요소 2가지
  - 1\_ 추가비용
  - 2\_ 노동참여 제한
- 정책적 대응 : 소득 보존
  - 보편적 서비스 or 추가비용상쇄를 위한 현금급여
  - 노동참여 보장 (법적 보장, 공적 돌봄 서비스 지원)
  -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및 현금급여

#### 돌봄 지원

- 돌봄
  - = 개별적 특성+노동+정서+관심+시간+비용+관계+장소 등
- 정책적 대응 : 다양화, 지역근거, 주 돌봄자를 돌보는 체제

30

##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의 원칙

(가족) 전체성의 원칙	- 장애아동 지원은 가족 중심적이어야 함 →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구성원을 지원하는 것
개별화의 원칙	- 장애인아동과 그 가족의 개별적 특성, 다양한 욕구에 부합해야 함
지속성의 원칙	- 장애아동 및 가족의 욕구는 생애주기를 따라 변화함 → 장애아동 지원은 전 생애사적 차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보편성의 원칙	- 장애아동 지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선별적 제공 서비스(소득수준, 장애정도)→ 보편적 권리로 보장

##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 장애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 - 성장과정에 따라 문제의 강도와 양상은 변화 가능함 : 단편적 서비스→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 필요
통합성의 원칙	- 지금까지의 파편적,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 지양 →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서비스들의 연계 + 통합적 제공 필요
주류화의 원칙	-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 의한, 일반서비스와 연계 제공 필요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
강점중심. 역량강화 지향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가진 긍정적 면, 능력, 자원, 욕구, 열망, 그들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 및 존중 필요 → 장애아동의 잠재적 역량 고양 + 전인적인 아동발달 촉진 → 장애아동 가족의 '사회적 역량' 강화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9. UN CRPD와 장애노동

강의자 : 정지웅

주최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0년 장애인  
인권 · 권리교육



## UN장애인권리협약 노동 : 이해와 적용

- 국제인권규범 이해
- 장애인권리협약 이해
- 장애인권리위원회 쟁점목록
- 국가보고서, 민간보고서 내용

2020.11.20 한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사: 정지웅 교수(배재대 복지신학과)

### 수강 후 과제: 적용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나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장애공동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 비장애인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 우리 단체가 권리보장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개관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
- 2008년 5월 3일 발효
- 2018년 10월 기준, 서명국 162개, 당사국 177개

##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 개념

-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

### 유엔헌장(1945년)

-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

### 세계인권선언(1948년)

- 60개 이상의 국제인권 관련 규범 탄생에 기여
- 단, 법적구속력은 부재: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미제시

###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년)

-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설치 검토 권고

### 국제 인권 협약 구분

-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 세계인권선언 +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 주요(core) 인권협약 = 국제인권장전 + 인종차별철폐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고문방지협약 + 아동권리협약
-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규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강제실종협약

### 유엔의 인권 분야 이행점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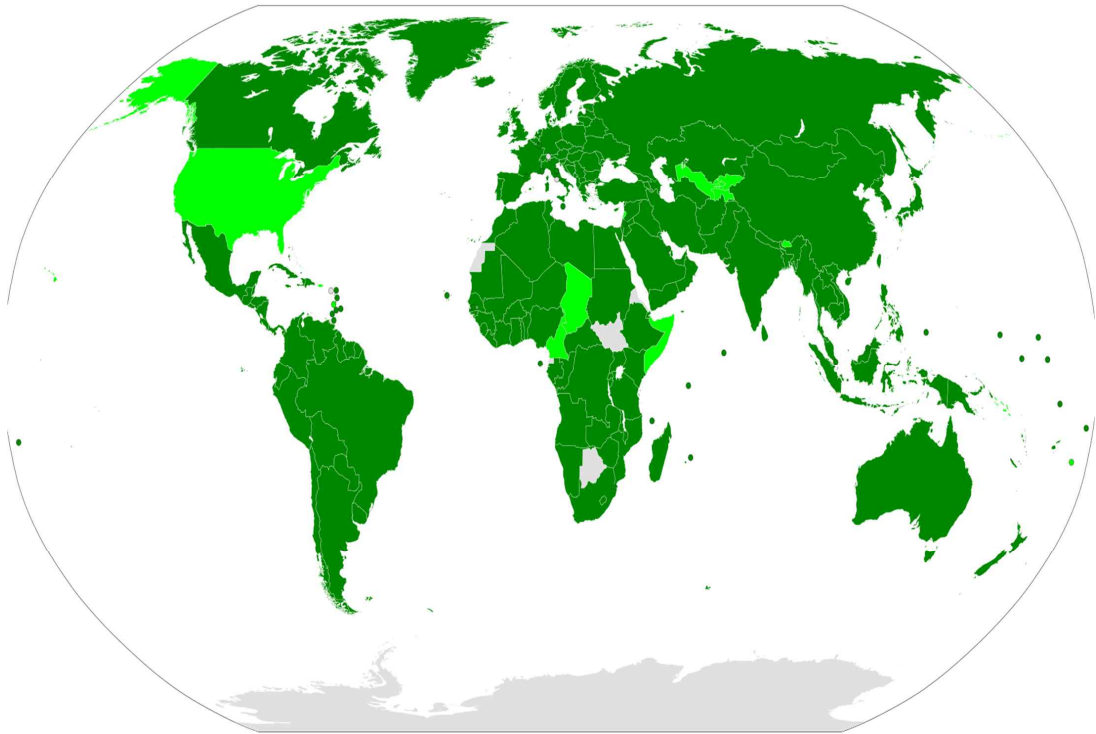
정례인권검토 (U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UN회원국의 국내 <b>인권상황</b>을 <b>주기적으로 심사</b>하는 제도로, 회원국 상호간의 심의(peer review) 형식으로 진행</li> </ul>
국제인권조약 이행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인권조약에 <b>가입한 국가</b>가 조약의 <b>국내 이행 상황</b>에 관한 <b>국가보고서</b>를 <b>조약기구</b>에 제출하고, 조약기구가 정기적으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b>심의</b>를 실시하는 제도</li> <li>우리나라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사회권규약) 등 7개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였음</li> </ul>
특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절차란 특정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임</li> <li><b>특별보고관, 실무그룹, 독립전문가</b> 등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나, 기능 및 역할에 차이는 없음</li> <li>우리나라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수락 국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상시초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방문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음</li> </ul>
개인진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국이 비준한 <b>국제인권조약</b> 또는 <b>선택의정서</b>에 근거하여 개인이 직접 국제인권기구에 조사 등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li> </ul>

### 대한민국의 국제인권협약 발효일

협약명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b>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b>	1990.4.10	1990.7.10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4.10	1990.7.10
-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미가입	
<b>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b>	1990.4.10	1990.7.10
- 선택의정서	미가입	
<b>인종차별철폐협약</b>	1978.12.5	1979.1.4
<b>여성차별철폐협약</b>	1984.12.27	1985.1.26
- 선택의정서	2006.10.18	2007.1.18
<b>고문방지협약</b>	1995.1.9	1995.2.8
- 선택의정서	미가입	
<b>아동권리협약</b>	1991.11.20	1991.12.20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2004.9.24	2004.10.24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2004.9.24	2004.10.24
-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b>장애인권리협약</b>	2008.12.11	2009.1.10
- 선택의정서	미가입	
<b>이주노동자권리협약</b>	미가입	
<b>강제실종협약</b>	미가입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배경

- 장애인의 권리는 **여타 인권 조약들**(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의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거나 규정되지 못하였음
-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인권조약**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진행
- 마침내 2006년 12월에 UN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
- 각 당사국 정부 및 장애인 당사자 들의 공동노력의 결실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천명한 여덟 번째 국제인권협약이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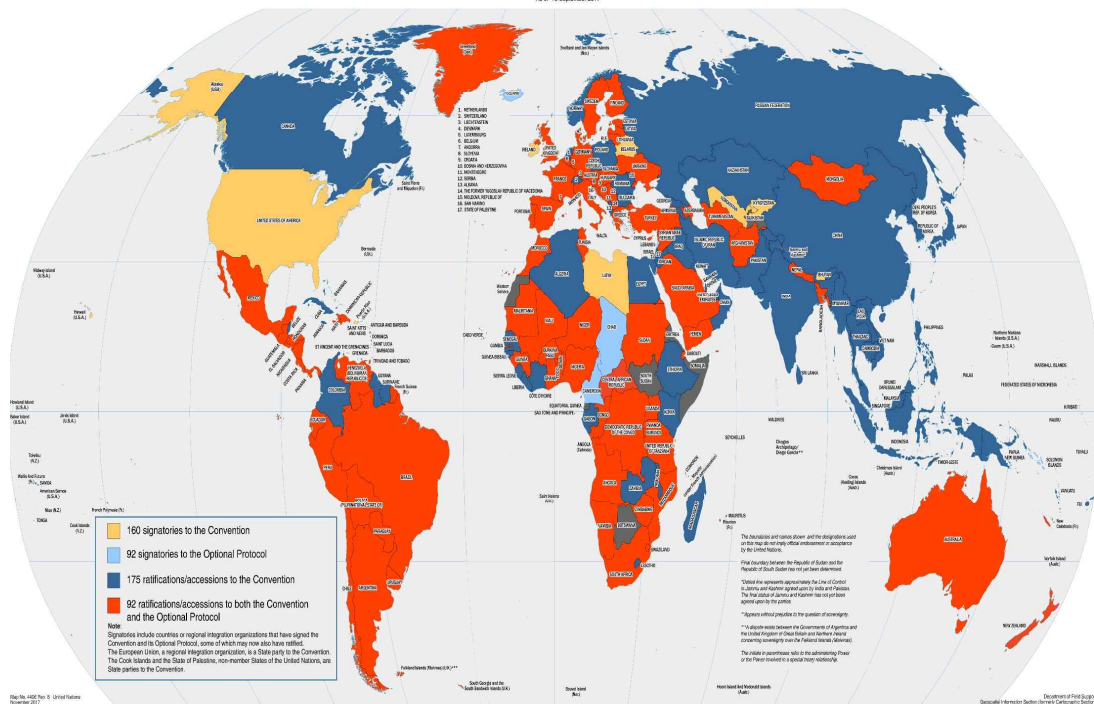


녹색은 체결국; 연두색은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음; 회색은 서명하지 않음



■ Not Signed ■ Signed Convention ■ Signed Convention & Protocol ■ Ratified Convention ■ Ratified Convention & Protocol

As of 19 September 2017



## CRPD의 기본정신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 세계최초 국제규약  
: 유일한 장애 관련 국제법규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 장애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시혜적 보호대상 →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
- 개방적인 장애정의: 의료모델과 사회모델 모두 포함. 장애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정의 (향후 장애범주 확대 여지 마련)  
→ CRPD 전문 마항: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장애인 개인의 손상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

## CRPD의 구성

- 전문과 본문 총 50개 조항
  -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권익보장 내용 포함
  -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한국: 보험가입 관련 25조(e)항 유보
- 선택의정서: 총18개 조항
  - 선택의정서는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 개인 청원 시 협약 당사국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조사절차** 등 내용 포함
  - 한국: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 CRPD 핵심내용

-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며,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 촉진
- **접근성**: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성취하여야 함
- **사법적 평등**: 장애인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법적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안전보장**: 무력분쟁 등 위험상황 및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 보장 및 착취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보장
- **자립생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 지역사회와의 통합 촉진
- **교육권**: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 보장
- **건강권**: 장애인들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 이에 상응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노동권**: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 및 고용조건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함
- **문화권**: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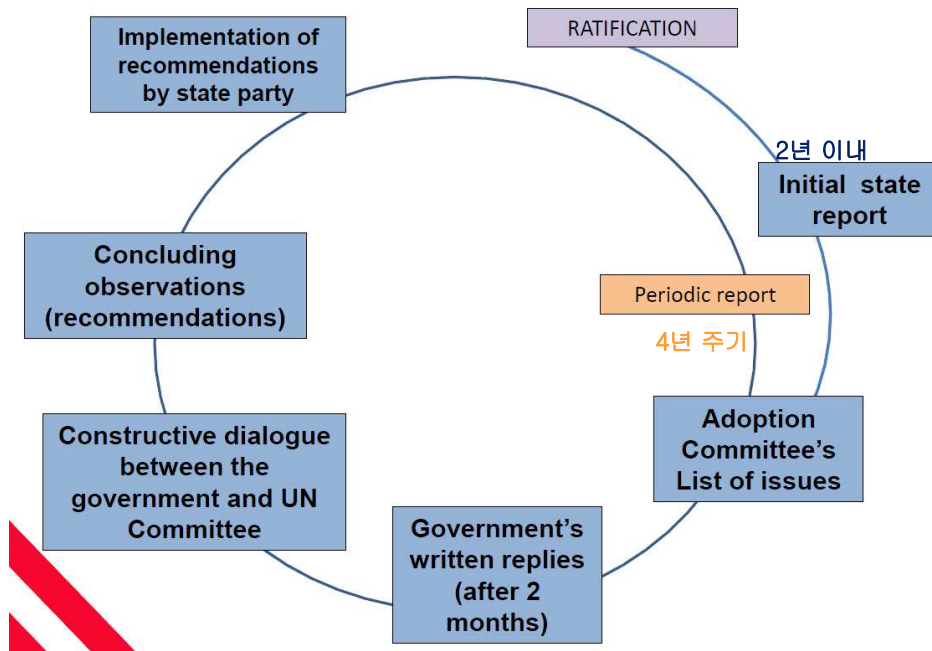
<표 1>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항

조항	제목	조항	제목
전문	전문	제26조	재활
제1조	목적	제27조	근로 및 고용
제2조	정의	제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3조	일반원칙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제4조	일반의무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31조	통계와 자료수집
제6조	여성장애인	제32조	국제협력
제7조	장애아동	제33조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
제8조	인식 제고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제9조	접근성	제35조	정부보고서
제10조	생명권	제36조	보고서 심의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제37조	각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제13조	사법 접근성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40조	당사국 회의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41조	기탁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42조	서명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제43조	등의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44조	지역통합기구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45조	발효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46조	유보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성	제47조	개정
제22조	사생활 존중	제48조	협약의 폐기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49조	접근가능한 형식
제24조	교육	제50조	정본
제25조	건강		

<표 2> 기본권의 유형에 따른 장애인권리협약 각 조항 배치

분야	하위분야	해당 조항
자유권		5. 평등과 차별금지
		10. 생명권
		11.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14. 개인의 자유와 안전
		15. 고문이나 잔혹함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 및 처벌로부터 자유
		16.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17. 개인의 고유성 보호
		18. 이주 및 국적의 자유
		22. 사생활 존중
		22. 사생활 존중
사법접근권		12. 법 앞에 평등
		13. 사법접근
참정권		29. 정치와 공적생활 참여
사회권	접근권	9. 접근성
		20. 개인의 이동
	자립생활권	21. 의사소통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19.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교육권	28.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24. 교육
문화권		30.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
		25. 건강
건강권		26. 가할 및 재활
		27. 근로 및 고용
대상별	여성	6. 장애여성
	아동	7. 장애아동
	가족	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기타	인식개선	8. 인식개선
		31. 통계와 자료수집
	이행기제	32. 국제협력
		33. 이행 및 모니터링

## CRPD 이행 보고과정



## 국내추진 경과

- 2008.12.11 협약 비준. 국회본회의 통과(25조 마(e)항 유보, 선택의정서 미비준)
- 2009.01.10 협약 국내발효
- 2011.06.22 제1차 국가보고서(최초보고서, Initial report) 제출
- 2014.04.17 위원회 질의목록(List of Issues = 쟁점목록 = 현안목록) 채택
- 2014.06.30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답변서 제출
- 2014.07.28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 의견서 발표
- 2014.09.11 NGO보고서(Shadow Report = Parallel Report = 민간보고서) 제출
- 2014.09.17/18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 2014.09.30 최초보고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 권고사항) 채택
- 2018. 3월 질의목록 채택(2, 3차보고서제출위한)
- 2019. 3월 제2, 3차 국가보고서 제출
- 2019.03.04 제2, 3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 의견서 발표
- 2019.10.28 제2, 3차 NGO보고서 초안 공청회(CRPD NGO연대)
- 2022. 8월 또는 2023년 3월(豫) 제2, 3차 국가보고서 심의

## 민간보고서 역할 및 기능

- 정부보고서 검증 기능

- **비장애인 통계와 비교**하여 장애인의 차별적 상황을 증명

↔ 정부보고서는 보통 장애통계만 제출

- 민간보고서는 **현존하는 차이(gap)**에 대해 보고

↔ 정부보고서는 **시정이 된 사항**에 초점을 맞춤(자랑)

- 핵심 우선순위 이슈 확산

Figure 1 - Link between the SDGs and the CRPD



**33**  
core article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80%**  
of countries have  
ratified the CRPD

**1 bill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worldwide

**1 in 5**  
of the world's poorest  
people have disabilities

**17**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3**  
countries must in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chieve the SDGs



##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 (카)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 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라)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쟁점목록

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2018.2.14 ~ 3.9)

### 노동과 고용(제27조)

28. 다음 각 호 관련, 당사국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관련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 (a) **지적 또는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는가?
- (b)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 (c)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용을 지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가?
- (d)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를 효과적 시행을 위해 장애여성의 채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가?
- (e) 장애인의 **공공 부문 취업**을 보장하는가?

28-a. 지적/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폐지?

<쟁점목록 단락 28-a에 대한 답변>

-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27개 법률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제한** 관련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
-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관련 결격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
-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 다만 모든 자격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자격 결격사유의 적정성 및 차별적 법률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

28-b.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 제공?

<쟁점목록 단락 28-b에 대한 답변>

-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여 운영
- 정부는 중증장애인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부담,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구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구제율/구제건수** 등의 통계를 제시하여 실제로 얼마나 구제가 되었는지 적시 필요



### 28-c. 보호작업장 사용을 지양하고 대안을 모색?

#### <쟁점목록 단락 28-c에 대한 답변>

- 일반 경쟁고용시장의 경우, 일정 수준 근로능력을 갖춘 경증장애인의 고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기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정부는 장애정도·장애특성에 따른 고용격차를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고, 향후 경쟁고용시장으로 옮겨 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된 고용환경’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호작업장’을 일반 고용시장에서 채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운영방식에서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격리된 보호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고용되어 공동으로 생산·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일반 경쟁고용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 28-d. 고용할당제 효과적 시행을 위해 장애여성의 채용 증진 노력?

#### <쟁점목록 단락 28-d에 대한 답변>

-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2년 2.35%, 2017년 2.76%).
- 장애인고용 독려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대상 서비스로는 장애인고용 통합컨설팅 실시, 모집대행서비스 제공, 대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시설장비 용자,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 정부는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강화, 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강화, 명단공표제도 개선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
- 또한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하여 부담금 감면 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채용을 전제로 무상 훈련을 제공하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참여 인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기간 동안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

## 28-e. 장애인의 공공부문 취업을 보장하는가?

### <쟁점목록 단락 28-e에 대한 답변>

-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장애인지원관 제도를 신설하여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였음
-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정부부문 중 2016년 대비 2017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0.07% 증가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0.42% 증가했음

## 제2, 3차 심의를 위한 NGO보고서 초안 2019년 10월 작성

### <이슈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노동시간은 월평균 135시간, 임금은 월평균 375천원, 시급은 3,416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
- 보호작업장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보다는 보호, 훈련, 복지 기능이 강조
-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439천원이고 약 5.7%정도의 근로자가 1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저임금 등 열악한 고용여건에 놓여있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정도
- 한국은 장애인연금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제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했으나, 논의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도입 움직임은 없음

### 권고를 위한 질문

- 장애인의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했는가?
-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충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가?

### <이슈2: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 2018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2.92%, 민간 기업 2.67%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쌓이고 있음
- 기업은 장애인 대상 사회적 책임 이행 선호 방식 중 장애인 직접고용 방식 선호는 36.9%에 불과
-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담금 수준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보다 훨씬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유리
- 한편 2018년 장애인고용률 민간부문 2.67%, 공공부문 2.92%는 중증 장애인 2배수 산정제가 적용된 값임. 2배수 산정제를 적용하지 않을 시, 실제 2018년 장애인고용률은 민간부문 2.09%, 공공부문 2.52%
-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를 통해 고용률을 높게 보이려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며 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음

#### 권고를 위한 질문

-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구체적인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가?

### <이슈3: 제 역할 못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서 보호작업장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게 근로의 기회와 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경쟁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정의
- 보호작업장에 중증장애인 고용과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라는 모순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그 결과 직업재활시설에서 경쟁고용시장으로 옮겨가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나 대안조차 없음

#### 권고를 위한 질문

- 보호작업장에서 경쟁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보호작업장의 기능을 전환할 방법이 있는가?

## 적용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나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장애공동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 비장애인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 우리 단체가 권리보장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10. UN CRPD,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

강의자 : 윤상용  
주최 :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윤상용(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주요 내용

- 장애담론의 검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이  
념을 중심으로
-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장  
애인복지 현황
- 장애인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 장애담론의 검토

## 장애담론의 개관

- 산업혁명 이전의 장애 인식
  - ▣ 신의 저주의 결과
  - ▣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의료적 처치를 통해서 개선 가능한 질병
  - ▣ 공동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산업혁명 이후의 장애 인식
  - ▣ 노동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담론이 형성되면서 장애인은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 사회에서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
- 저항담론의 형성
  - ▣ 장애는 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므로 사회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론의 등장
  - ▣ 장애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벽의 해소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저항담론의 본격적인 형성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론에 기초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주도
- 산업혁명 이후 대표적인 장애 담론
  - ▣ 분리 vs. 노멀라이제이션(통합)
  - ▣ 개인적 책임 vs 사회적 책임 → 개별적 모델 vs. 사회적 모델
  - ▣ 전문가 주도 vs 장애인당사자 주도 → 재활모델 vs. 자립생활모델



# 분리 vs 노멀라이제이션(사회통합)

## 분리(social segregation)

- 사회진화론, 우생학의 영향
- 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분리하여 보호, 치료
- 대규모의 혼합수용방식의 보호시설
- 장애는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
- 지속적 역할 손상으로 인해 하급 시민, 나태한 존재, 아이와 같은 지위 부여

##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 1960년대 후반 북유럽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원칙으로 제기
- 대규모의 시설 보호로 인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반대
- 사회의 주류에 합류, 일상생활에서의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갖는 생활을 강조(Nirje)
- 1970-80년대를 거쳐 장애인 재활, 교육, 복지 등에서 중요한 실천 방향으로 자리매김
- 사회적역할강화이론(social role valorization)으로 발전(Wolfensberger)
-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념에 기여

# 사회통합과 사회참여

## □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이 정체성을 갖도록 통합하는 일(위키백과)

## □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take part in)
- 시민적 참여(투표, 노동 등) / 사적 사회활동(사클럽 참여, 사교활동 등)

# 사회적 역할 강화이론

-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란 사회적으로 가치가 저하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회 문화에서 가치있는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가치있다고 인정되는 역할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가능한 많이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가치절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조치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
  - 장애인의 역량 향상

# 개별적 모델 vs 사회적 모델

## 개별적 모델

- 치료모델 또는 개인중심의 모델
- 장애는 개인이 가진 의학적·기능적 문제이며, 장애로 인한 기능제약 또는 심리적인 상실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 해결책과 목표 :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 개인의 적응과 행동의 변화 등

## 사회적 모델

- 사회행동모델 또는 환경중심의 모델
-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시각.
-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들의 집합체
- 해결책 : 사회행동, 환경의 개조

# 재활모델 vs 자립생활모델

항목	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	자립생활모델(Independent Living Model)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직업기술의 부족	사회적 억압/ 전문가친척에의 의존
문제의 위치	장애 개인 (disabled individual)	환경과 사회/재활 과정 (disabling society)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 상담원 등 전문가	동료 상담원, 옹호, 자조, 소비자주권 사회적 장애 제거 등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환자 및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조정자	전문가	소비자 자신
접근방법의 특징	개인적 비극이론에 기초함. 개인적인 치료에 의존한 재활의료적인 접근(병리적 차원) 전문가집단에 의해 조정, 관리, 지배됨 전문가적 지식이 요구됨. (예, 정신의학,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각종 치료사 등)	사회적 억압이론, 정상화 이론, 통합화 이론에 기초함.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행동과 조치가 요구됨 자조 활동적인 접근 개인, 집단적인 책임 장애에 대한 경험적 체험이 요구됨.
기타특징	개인의 적응(심리적응, 사회적응 등), 개인적 인 정체성, 편견, 태도, 보호, 통제, 보호가 요 구됨.	장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긍정과 지 지(affirmation) 집단적인 정체성, 차별, 행동권리, 선택, 정치, 사 회적 변화 요구됨
추구하는 결과목표	최대한의 ADL(일상생활활동)	자립생활

## 자립생활의 이해

- 자립생활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
  - ▣ **‘정치적(political)’**: 장애인복지의 주도적 역할이 재활 전문가에서 장애인 당사자로 이전되어 가는 사회적 현상(운동)을 자립생활이 표상
  - ▣ **‘이념적(ideal)’**: 사회적 맥락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에 새롭고 주목할만한 철학적 사상을 자립생활이 내포
  - ▣ **‘실천적(practical)’**: 장애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로서 자립생활이 활용

# 자립생활과 자율성

- 자립(independence)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음. 우리 모두는 타인과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타인과 세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립은 의존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며, 자립의 본질은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즉 자율성의 문제이다.
- 자율은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다. 즉, 개인이 자신과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이다 (Raz, 1987). 이러한 시각에 맞춘다면, 자율은 장애, 치매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의사결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결정을 내리거나 처음부터 타인에 의해 본인의 복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원조를 위해서는 자기결정이라는 전제하에 더해지는 타인의 도움까지 자율범위에 포함하여 '지원받는 자율'까지 개념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秋元美世, 2010).
-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 타인의 조언, 의견 또는 기술의 지원을 통해 개인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본인이 수동적인 사람이라 비난받지 않는다 (Carney, 2013).

# 자립생활운동의 배경(미국)

- 시민권(복지권, 수급권) 운동
- 소비자 운동을 통한 소비자 주권주의의 신장
  - 장애인정책 및 재활서비스의 전문가 주권 현상에 변화
    - 상호 합의에 의한 재활계획의 수립, 권익옹호센터 등장
- 자조운동
  - 장애인 자조조직으로 자립생활센터 등장, 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안적 서비스 제공
- 탈의료화와 자기가료(self-care)운동
  - 생애의 전반에 걸쳐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도한 의료화 현상에 대항하는 자조운동의 형태로서 탈의료화 및 자기가료운동 등장
  - 의료적 안정기 이후의 장애관리를 위한 과도한 의료적 개입은 불필요하며 역효과를 가져옴

## 자립생활운동의 배경(미국)

- 의료모델
  - ▣ 의료모델의 많은 가정은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급상황을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 스스로 의료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
- 환자역할(The Sick Role)
  - ▣ 의료전문가에 대한 의존성과 자신에 대한 책무 면제로 요약되는 환자역할의 수용은 시민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
- 탈시설화와 정상화운동

##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 1962년 일리노이대학 장애학생프로그램이 자립생활운동의 자생적 시발
- 1972년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에드 로버츠가 이끈 최초의 자립생활센터 개소
- 1970년대 중반 재활법에 근거해 자립생활센터가 제도화
- 2004년 현재 재활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는 354개소

# 한국의 자립생활운동 역사

- 1993년 한국장애인연맹이 'ADA의 충격' 번역 소개
- 1997년 한국소아마비협회 버클리자립생활센터 방문, 1998년부터 정립회관이 일본 자립생활센터 '휴먼케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자립생활 철학 및 이념 확산
- 2000년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서울),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 설립
- 2002년 서울시가 5개 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3억원)
-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7개 자립생활센터에 2년간 예산 지원(연간 최고 4,500만원)
- 2005년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실시->2016년말 기준 62개소에 1개소당 약 6천만원 지원)
-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계기관으로 사업 참여
- 2016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227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

## 자립생활운동의 핵심 가치 및 요소

- 자립생활운동의 핵심 가치
  - **개인의 선택(individual choice)** →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 **개별적 통제(personal control)** →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며, 서비스 제공자(기관)의 고용 및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
  - “위험의 고귀함(dignity of risk)”은 자립생활의 진수이다. 실패의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진정한 독립과 온전한 인간의 상징인 선택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Dejong, 1983)”

# 자립생활운동의 핵심 가치 및 요소

## □ 자립생활의 핵심 요소

- 정책결정과 운영상의 소비자 주도
- 서비스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소비자 주도
- 전 장애영역 강조
- 지역사회 기반과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부응
- 동료역할모델
- 개인적인 독립의 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4대 핵심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의뢰,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 옹호
  - 기타서비스: 주택서비스, 이동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보장구지원, 커뮤니케이션, 법률서비스, 교육서비스, 직업서비스, 상담, 여가서비스 등
-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
- 상시적이며 열려있는 서비스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살펴 본 한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 장애인복지지출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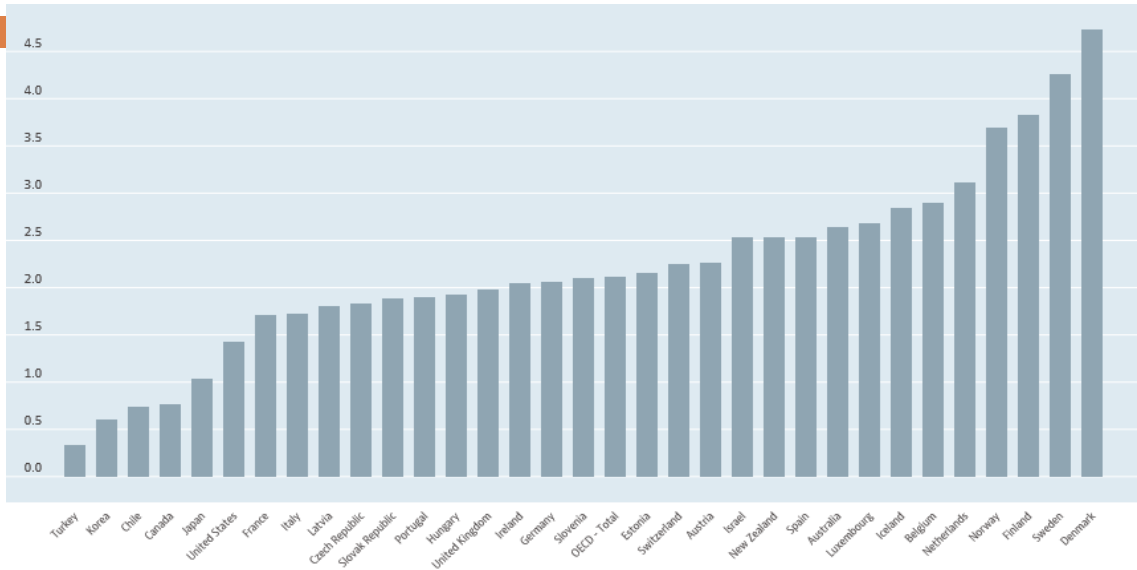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은 1981년 14 억원에서 2021년 3조 6,784억원으로 급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지출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2000년 이후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OECD 국가가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복지확대 추이 속에서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이 약간 증가하다가 지난 10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0.6%에 불과. 반면에 OECD 평균은 1.9%,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는 4.4%

## 장애인복지지출 국제 비교

- 2015년 기준 GDP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분포를 보면,
  - OECD 평균의 경우, 현금급여 비중이 8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1%로서 우리나라의 현금급여 비중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 현금급여의 세부 급여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의 경우 장애연금 59.1%, 기타 현금급여 13.6%인데 비해, 한국은 장애연금 33.3%, 기타 현금급여 19.4%의 비중을 보임으로써 장애연금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



구분	1990	2000	2005	2006	2014
한국	0.3	0.4	0.5	0.6	0.6
OECD 평균	2.3	2.3	2.3	2.2	2.1

구분	소득수준(1인당 GDP)	장애인복지지출 비중(%)
OECD 평균 (A)	3만불	2.58
한국 (B)	2.8만불(2014)	0.61
A-B		1.97

구분	현금급여						현물급여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가사 돌봄 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OECD 평균(A)	1.05	0.06	0.03	0.36	0.21	1.71	0.24	0.07	0.10	0.40
한국(B)	0.12	0.16	0.05	-	0.05	0.39	0.02	0.01	0.20	0.22
A-B	0.93	-0.10	-0.02		0.16	1.32	0.22	0.06	-0.10	0.18

구분	현금급여						현물급여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가사 돌봄 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OECD 평균(A)	61.4	3.5	1.75	21.1	12.3	100.0	60.0	17.5	25.0	0.40
한국(B)	30.8	41.0	12.8	-	12.8	100.0	9.1	4.5	90.1	0.22

주요 장애인복지지표를 통해서 살펴 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20~64세 인구기준 & 2000년대 후반 기준)

- 장애출현율
  - ▣ OECD 회원국 평균 13.8%
  - ▣ 우리나라 6.0%
- 전체 국민 평균소득 대비 장애인 소득비중
  - ▣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 평균 소득의 85%
  - ▣ 우리나라 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 평균 소득의 80%
- 장애인 빈곤율(중위소득 하위 60% 이하 기준)
  - ▣ OECD 회원국 평균 22.1%
  - ▣ EU 회원국 평균 19.1%(2012년, 16세 이상 기준)
  - ▣ 우리나라 35.6%

주요 장애인복지지표를 통해서 살펴 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20~64세 인구기준 & 2000년대 후반 기준)

- 장애인고용률
  - ▣ OECD 회원국 평균 43.6%
  - ▣ EU 회원국 평균 47.9%(2012)
  - ▣ 우리나라 44.7%, 35.6%(2013, 15~59세)
-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 ▣ OECD 회원국 평균 1.2%
  - ▣ 우리나라 0.2%
- 장애급여 수급율
  - ▣ OECD 회원국 평균 5.7%
  - ▣ 우리나라 1.6%

# 장애인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 산업화와 재분배(복지) 역사와 전망

구분	등장 시기	기술적 특징	노동자의 지위(정체성)	장애인의 지위	복지정치		비고
					제도적 특징	자본-국가-노동 권력관계	
1차 산업 혁명	18세기	- 기계의 발명/공장의 탄생 - 광산업/면방직업 - 혁신적인 발견과 발명을 통한 본격적인 산업화의 동력 확보	자본의 착취 대상(그야말로 생산수단)	우생학(사회진화론) 관점에 의한 열등 유전자를 가진 도태되어야 하는 자->생산무능력자(빈민)	<b>전 복지국가</b> - 빈민통제 목적의 공공부조 시행	- 노동자의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과 제도 마련 - 자본>>>국가>>노동: 자본의 절대우위	<b>기술과 복지 정치의 진보가 노동자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불평등 감소</b>
2차 산업 혁명	19~20세기 중반	- 전기의 이용, 전화의 발명(통신망의 구축) - 동력의 개선 및 분업과 표준화 공정에 기반한 대량생산체제	- 대량생산상품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및 유지	장애에 대한 사회 책임론 등장 but 의료적모델(재활담론)에 따른 보호자/생산무능력자	<b>복지국가의 등장과 황금기</b> -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국가의 중재를 통해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성장을 후원하는 최적화된 시스템, 자본주의와 복지의 황금결합 - 자본>>국가>노동 → 자본=국가=노동: 국가의 중재를 통한 자본의 양보와 노동자의 권력 강화	

구분	등장 시기	기술적 특징	노동자의 지위(정체성)	장애인의 지위	복지정치		비고
					제도적 특징	자본-국가-노동 권력관계	
3차 산업 혁명 (1차 정보 혁명)	20세기 후반	-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 기반의 정보통신기술혁명 산업과 생활영역을 변화 - 생산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 (고용없는 성장)	- 생산자로서의 지위 약화(고용 불안) - 노동자의 소외 (일자리감소, 실질임금의 하락, 고용안정성 약화) -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적 하락	사회적모델(자립생활담론) 사회통합과 참여 강조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대안노동력으로 간주	<b>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정체</b> - 복지지출의 감소, 근로연계복지 등	- 과도한 복지지출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신우파(신자유주의)의 득세->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 자본>국가>노동: 다시 자본의 절대적 우위 시대로 회귀	<b>기술의 진보와 복지정치의 후퇴가 노동자의 지위와 삶의 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 → ?</b>
4차 산업 혁명 (2차 정보 혁명)	21세기 초반	-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세계의 통합(사이버-물리시스템)이 인간 생활 전반에 영향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에 기반한 자동화의 고도화로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일자리 감소 예상	- 노동자 소외의 가속화	다중사회에서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	<b>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요구</b> -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아실현을 돕는 복지 - 생존노동기반 복지->탈생존노동기반복지	- 자본 절대 우위의 기술어린 운동장 지형을 다시 자본=국가=노동 구조로 만들기 위한 복지정치의 필요 - 자본의 양보(자동화로 인한 전례없는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환원 요구): 기업의 사회보험 기여분 증대 / 로봇세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 등 도입	

## 한국의 산업화와 복지적 대응의 역사

산업화	시기	정치경제적 특징	노동자의 지위	복지적 대응	
				제도적 특징	의의
1차	1945~1961	전근대적/가부장적 경권하 원조경제 전산업 또는 초기산업시대	산업예비군	시설 복지	공공복지의 부재
2차	1961~1987	국가주도 경제 개발 국가자본의 동맹하에 노동자 희생에 기반한 고성장 시대	저임금 완전고용	공공부조 중심의 최소한의 공공 복지	빈약한 공공복지를 기업복지와 비공식복지가 보완
	1988~1997	노동조합의 합법화 및 노조조직률 증대를 통한 국가와 자본의 제한적 양보 시대	제한적 임금 인상 -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사회보험 도입 및 제한적 확대	
3차	1998~2016	신자유주의와 생산자동화로 인한 불안정 노동시대의 등장과 가속화 - 비정규직 확대 - 노조조직률 약화 - 불평등 심화(중간층의 붕괴)	고용안정성 저하 (비정규직 확대) 실질임금 하락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사회보험의 지속적 확대 -공공부조의 성숙(인구학적 기준 폐지 기초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도입) -사회수당형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도입과 확대	공공복지의 점진적 확대 - 재분배 효과미미
4차	2017~	중도노선 경권의 공공지출 확대(소득주도성장)를 통한 불안정 노동 해소 추구 - 비정규직 확산 억제 - 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단축 - 사회수당형 급여 확대	고용안정성 개선 및 실질임금 상승 예상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자산형성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아동장려금, 실업부조 등) 도입과 확대 -돌봄서비스(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도입과 확대	공공복지의 도약적 확대 추구 - 재분배 효과 강화 추구

# 장애인복지 역사와 전망

구분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특징
		재가서비스	거주시설	
<b>장애인복지 1.0</b> (해방~장애인복지법 제정 이전)	-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단순 시설보호
<b>장애인복지 2.0</b> (장애인복지법 제정~2000년대 중반)	장애수당 보호고용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b>전문화 추구</b> 유형재편 재활/요양/공동생활 가정 시설평가	제한적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전문화
<b>장애인복지 3.0</b>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후반)	장애인연금 지원고용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폐지	- 자립생활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확충 - 활동지원서비스 도입과 확대	<b>인권 추구</b> 소규모화 인권지킴이단 서비스 최저기준	소득보장의 확대와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권리 강화
<b>장애인복지 4.0</b> (2020년 이후)	장애인연금 개혁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확대 의무고용률 상향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 장애인 근로자 임금보조	개별유연성 현금급여 (개인예산)	<b>자립생활 추구</b> 탈시설	충분한 소득보장과 이용자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장애인정책 진단

- ▶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노동유연성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불안정노동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절대 다수의 노동인구가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개인과 가구의 현재의 필요와 미래에의 대비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로의 본격화 이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의 도입 등 공공부조의 개편,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형 급여의 도입 등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역설적이게도 소득 양극화 추이는 갈수록 심화되어져 왔음

- ▶ 불안정노동사회의 도래와 함께 장애인은 노동시장 내부와 외부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내부에서 장애인은 저임금 임시직이라는 최하위층에 속해있으며, 노동시장 외부에서는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지원고용서비스,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서비스가 장애인의 고용율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 한편, 2010년 새로운 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한국은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3단계 안전망에 기반한 소득보전급여체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구성된 추가비용급여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형식적으로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장애 소득보장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나, 수급자 수가 제한적이고 지급액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장애가 초래한 경제적 비보장에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효과성 측면에서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61.7만원)의 66.9%에 불과하였으며, 장애인 중 절대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16.3%로서 전체 국민의 수급자 비율인 3.2%보다 무려 5.1배 높았음

- ▶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인해 장애인의 신체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서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을 증가시키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18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의 31%를 차지 할 만큼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
  - 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역사회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을 넘어서서 교육과 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기본방향

- ▶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소득보장정책,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정책이 상호간에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며,
  - 우선적으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전통적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어 온 장애인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하여 장애인의 고용율을 제고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47%에 달할만큼 고령화된 장애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고용제도, 지원고용,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며, 동시에 의무고용제도의 이행률 제고,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인 소득보장제도와 고용서비스가 상호간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함
  - 우선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지급하는 급여의 충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소득활동능력평가 체계 구축에 기반한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추진함
-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제고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산활동으로의 유인을 강화함
  - 이용자 욕구 중심의 사정 체계 강화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불어 활동지원 수급자의 근로 및 교육훈련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요약하면,

- 분배(보상)위주 정책에서 분배와 인정, 대표 정책의 균형으로 나아가야
  - 분배 정책: 경제적 안정 -> 소득보장, 고용률 제고
  - 인정 정책: 가치절하된 지위의 회복 -> 활동 지원, 탈시설, 문화 및 여가 확대
  - 대표 정책: 합당한 대표 -> 참정권 제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 장애인의원 진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 추진과제

### ▶ 장애인 고용률 제고

- 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 확대
  - 의학적 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해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매우 낮을뿐만 아니라, 장애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등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재제하에서는 고용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등록 장애인을 의무고용제도 등 고용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등록 장애 기준과 별개로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선별하는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의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2002년 장애범주 확대 이후 추가적인 범주 확대가 없었음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지원의 필요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장애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의무고용제도, 지원고용서비스, 보호고용서비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써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은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하는 차별적 조치와 함께, 의무고용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자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인해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인적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장애인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추진 방안
  -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부담금의 수준을 높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적 부담금 제도를 도입함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국가의 사례를 반영하여, 현재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무고용대상 사업장 기준을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낮추도록 함
  -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일자리의 유형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화함

##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선진화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강화를 통한 장애인 최저생활보장 강화
  - 국민연금(장애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급 대상 확대와 급여수준 인상
  -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가급여는 경증장애수당과 통합하여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 급여 분리, 즉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로서의 장애수당으로 이원화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병급으로 장애인의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 ◦ 세부 추진 방안

-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장애인 노령연금 조기특례제도 도입, 장애연금 수급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요소 도입, 일정기간 이상 가입 장애인의 경우 가입전 장애의 악화로 근로능력상실시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 지급 기준인 가입 의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 혹은 40년으로 상향
- 단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현재와 같이 장애인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선제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적 적용을 받지 않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형식적, 내용적 완결성을 갖는 범주형 공공부조로 정립함. 이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닌 장애인연금을 통해 최저생활보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임

○ 장애급여의 충분성 제고

• 소득보전급여의 충분성 제고

- 장애가 초래한 소득활동능력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적 보상이라는 소득보전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18~64세의 적극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 지급액의 준거를 현재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액과 동일하게 설정하기보다, 생산인구 대상 소득보전급여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급액 준거로서 최저임금을 도입함
- 세부 추진 방안
  - 단기적으로, 노인, 아동 등 타 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소득활동능력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50%로 설정함
  -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70%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함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기준

국가	제도 명칭	지급액 기준
일본	장애기초연금	최저임금액의 50%
덴마크	Førtidspension	실업급여의 91%
스페인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	장애연금의 80%
영국	Employment Support Allowance-Income Related	최저생계비
독일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최저생계비
네덜란드	Wajong Toeslagenwet	청년최저임금의 21~70%
이탈리아	Pensione per invalidi civili	최저임금

## 주요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비중 비교

국가	제도 명칭	수급자격 및 지급액 (2018년 1인 가구 기준 기본급여 최고액)	월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대비 장애인연금 비중
일본	장해기초연금	- 1·2급 중증장애인 - 1급 월 81,177엔, 2급 월 64,941엔	177,232엔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 848 엔 적용	45.8%
독일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 18~64세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 노동시장의 여건에서 하루 3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 - 지급액: 월 416유로	1,498.00유로	27.8%
네덜란드	Wajong	- 17세 전에 발생한 장애로 25%이상의 근로능력손상을 입은 65세 미만의 자 - 지급액: 최저임금의 75% *장애근로자의 경우 임금과 지급액을 연 동하여 합산 소득이 최저임금의 100% 보장	1,578.00유로	75%
프랑스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 20세 이상으로서 장애율이 50% 이상인 자 - 지급액: 월 819유로 - 부가급여: 아래 급여 중 하나 . 자립지원급여(장애율 80%이상): 월 104.77유로 . 소득보전급여(근로능력5%미만): 월 179.31유로	1,498.47유로	54.7%

국가	제도 명칭	수급자격 및 지급액 (2018년 1인 가구 기준 기본급여 최고액)	월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대비 장애인연금 비중
호주	DSP(Disability Support Pension)	- 16~65세 미만으로서 신체장애율 20%이상인 자로서 주 15시간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자 또는 2년 이내에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가 불가능한 자 - 지급액: 826.20호주달러 - 부가급여: 최대 67.30호주달러 - 에너지급여: 14.10달러	3,117호주달러	26.5%
미국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장애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 지급액: 월 750달러	1,515.25달러 *연방정부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 적용	49.5%
한국	장애인연금	- 18~64세로서 장애정도가 1,2급 및 3 급 중복인 자 - 지급액: 월 25만원	174만원 *2019년	14.3%

- 추가비용급여의 충분성 제고
  - 정확한 계측조사를 기반으로 파악되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금액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 준거로 설정함
  - 계측된 추가비용의 100%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함
  - 세부 추진 과제
    -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장애수당의 지급액 준거로 활용되어 온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장애 추가비용을 지급액 준거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서베이방법을 통해 장애인실태조사에서 계측된 추가비용이 실제 추가비용보다 과소 추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출기록법을 활용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계측된 추가비용을 추가비용급여의 지급액 준거로 활용함
    -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가비용의 특성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수당(데모그란트)으로 지급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추가비용의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추가비용 급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유형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추가비용 계측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유형별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을 차등화 함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선진화를 반영한 장애급여 개요

구분		소득보전급여	추가비용급여	
제도명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 요건	장애	근로능력손상 25% 이상	장애 최저 기준(등록장애인)	장애 최저 기준(등록장애인)
	자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최저임금 50% + 월 평균추가비용 이하(103만원) - 조사범위: 개인	- 소득인정액 하위 90% - 조사범위: 개인	- 소득인정액 하위 90% - 조사범위: 가구
	연령	18~64세	18세 이상	18세 미만
급여 수준	기준금액	최저임금 50%	최고 16만원	최고 20만원
	실지급액	근로능력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80~100: 50% - 50~79: 40% - 25~49: 30% ※ 소득인정액과 기준금액의 차액 지급(보충급여)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 라 차등 지급 - 중증: 16만원 - 경증: 8만원	의학적 손상(중경 증)에 따라 차등 지 급 - 중증: 20만원 - 경증: 10만원

주: 2019년 기준의 소득보전급여 기준금액 대안은 다음과 같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512,102원 / 최저임금 50%: 872,575원 / 최저임금 40%: 698,060원 / 최저임금 30%: 523,245원 / EU 평균: 110만원(2010년 기준).

-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로능력평가 요소가 반영된 수급 자격 심사를 통해 규명된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및 고용서비스를 차별화**
  - 첫째,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수준을 강화
  - 둘째,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소득보전급여로서 일시 장애 급여(일시 장애연금과 일시 장애인연금)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유도
  - 셋째, **근로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 대상에서 배제하되, 보편적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업 유도를 유도하고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 유도를 유도

소득활동능력 (장애) 정도	소득보전 급여 (장애연금/장애인연금 기초급여/기초보장제도)				고용서비스	
	기여 여부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소득활동능력 완전 상실 (완전장애)	기여	완전 장애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원칙적으로 고용서비스 대상은 아니나, 장애인고용서비스(보호 고용, 지원고용) 참여 가능	
	비기여	-	장애인연금 (최고 급여)			
소득활동능력 부분 상실 (부분장애)	기여	부분 장애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장애인 고용서비스 (의무고용, 보호고용, 지원 고용 등)
	비기여	-	일시장애인연금 (중간 급여)			
소득활동능력 양호	기여	실업급여	실업부조		보편적 고용서비스(취업성공패 키지 등) 또는 장애인고용서비스(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비기여					

## □ 보호수당 및 장애인장려세제 도입

- 장애인을 보호함으로써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기회비용을 보전(보호수당의 현실화)
-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제고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장애인장려세제 도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수급자의 근로 및 교육훈련 인센티브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가 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선택(ex. 호주, 일본), 또는 기능상태 및 사회 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75세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마련(ex. 프랑스)
-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신청자격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정의와 분리 즉 이미 장애인복지법과 별개로 제정되어 있는 **특별법인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서비스 이용자격을 별도로 정의하여 잠재적 장애인도 서비스 대상에 포괄**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와 동등한 기능상태를 갖고 있는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활동지원 이용자에게도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서비스가 제공**
  - ▣ 이는 거주시설이 궁극적으로 24시간 상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최종증(장애정도가 매우 심한) 장애인의 의료 및 돌봄 욕구를 지원하는 거주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
  - ▣ **기능은 같으나 욕구가 다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와 거주시설은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대체재로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 참고문헌

- 윤상용 외, 2019. 장애인복지론. 신정출판사
- 김용득 외, 2016. 장애인복지: Inclusive Society를 향한 상상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이명현, 강대선, 2015. 영국 권리옹호서비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의사대변인(IMCA) 제도의 분석과 전망. 한국장애인복지학 30권. PP. 71-96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11. UN CRPD와 접근권

강의자 : 남세현  
주최 :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 UN CRPD와 접근권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남세현



- I UN CRPD
- II UN CRPD와 접근권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 과제

## I. UN CRPD

### UN 장애인권리협약

- UN 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의 인권 협약
-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회원국 192개국 만장일치)
- 국제 인권법에 따른 21세기 최초 인권조약이며

UN의 8개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

-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구성



## I. UN CRPD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UN 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0일 국회에서 비준 : 생명보험에 관해 규정한 제25조 e(마)항과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 채택은 유보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생)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I. UN CRPD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 UN 장애인권리협약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우리나라가 비준을 유보한 조항

- (1) 제25조(건강) :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마(e).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I. UN CRPD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 UN 장애인권리협약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우리나라가 비준을 유보한 조항

- (2) 선택의정서 : 당사국에 의한 협약 조항의 위반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자로부터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권한을 승인(1조).
  - 통보를 접수한 이후 본안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언제라도, 위원회는 주장되고 있는 위반의 희생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임시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라는 요청을 당사국에게 긴급 고려사항으로 전달(4조).
  -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는 물론 그 밖에 입수가 가능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라고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음. 근거가 충분하고 당사국이 동의하면,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음(6조).
  - 위원회는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의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음(7조)

## I. UN CRPD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갖는 의미
  - '장애'의 개념 :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 개념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태도 등을 반영.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학적 손상을 근거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보다 진보된 개념

## I. UN CRPD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갖는 의미
  - 장애인의 법적 능력, 접근권, 자립생활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비준 국가의 장애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는 직접적 강제력이 없지만 당사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후진국으로 낙인(국제망신).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원의 판단에 영향 끼침



## I. UN CRPD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보고서와 민간 보고서
  - 협약에 따라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 설치.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 위원회가 검토 후 권고
  - 국가보고서는 해당 국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어 권리위원들이 해당 보고서만을 토대로 협약 이행을 권고하기 어려움. 그래서 각국의 시민단체에서는 당사국 보고서의 문제점과 미진한 협약 이행 실태를 밝히는 민간보고서를 작성해 장애인권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회의 사이에 민간보고서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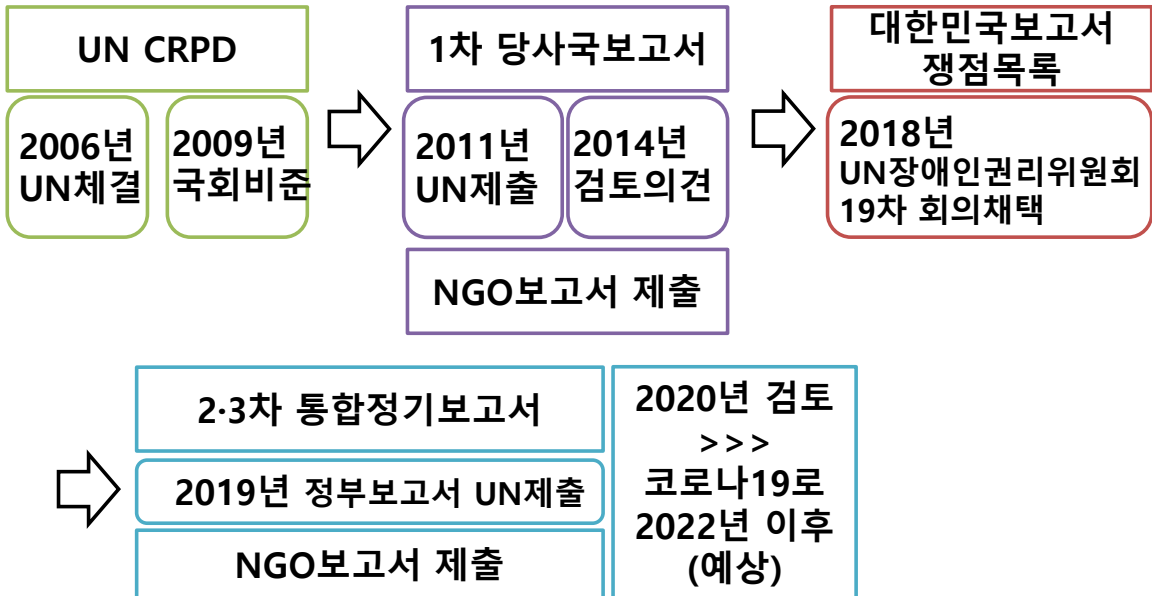
## I. UN CRPD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보고서와 민간 보고서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회의를 매년 2차례 개최하고 회의마다 3개국의 보고서를 심의
  - 우리나라의 당사국 보고서는 2011년 1차보고서 제출 후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2·3차 병합보고서를 2019년에 제출
  - 국가보고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NGO)에서도 의견서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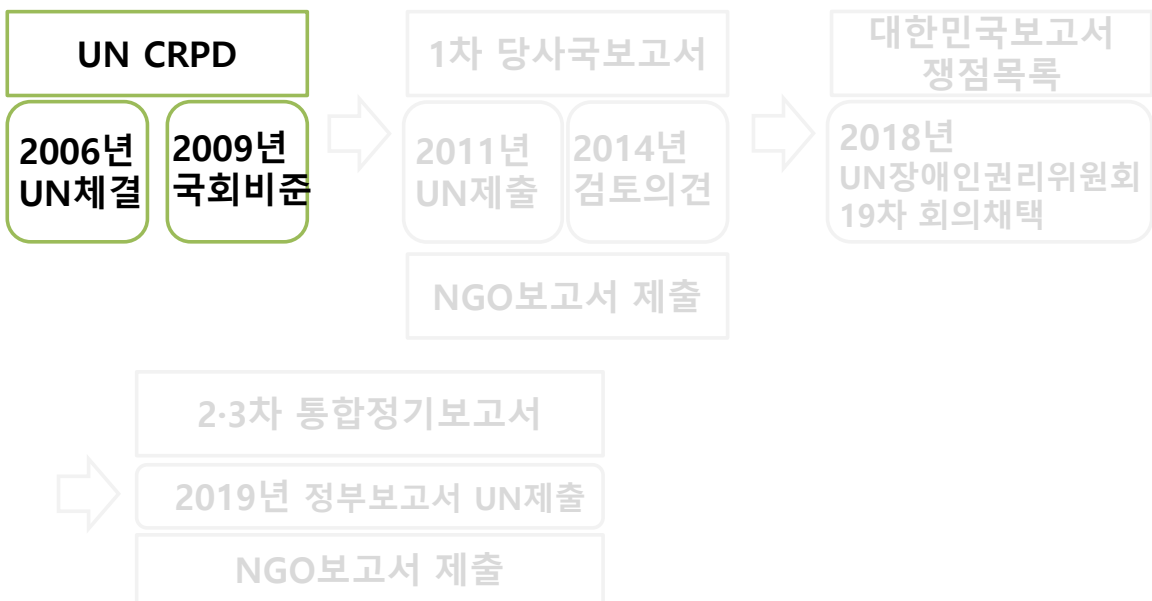
# I. UN CRPD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 절차



# II. UN CRPD와 접근권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접근권



## II. UN CRPD와 접근권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접근권

- 전문

- 본 협약의 당사국은,

- (v)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제3조 일반원칙

-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a.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b. 비차별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녀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 II. UN CRPD와 접근권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접근권

- 제9조 접근성 (Accessibility)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a)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b)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 II. UN CRPD와 접근권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접근권

#### ● 제9조 접근성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b)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c)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d)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II. UN CRPD와 접근권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접근권

#### ● 제9조 접근성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e)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f)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g)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h)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 II. UN CRPD와 접근권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접근권

####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a)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 (b)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c)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 (d)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 II. UN CRPD와 접근권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접근권

####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a)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b)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II. UN CRPD와 접근권

### U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접근권

- (c)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d)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e)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 II. UN CRPD와 접근권

###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접근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II. UN CRPD와 접근권

###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접근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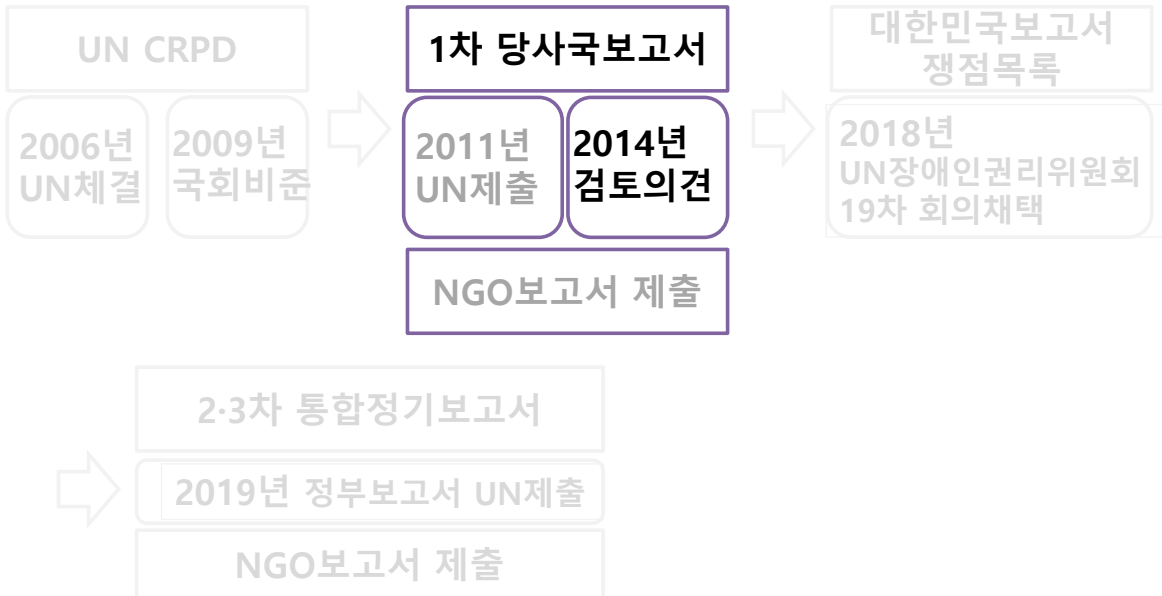
## II. UN CRPD와 접근권

###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접근권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보고서 검토의견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보고서 검토의견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긍정적 측면
    - 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고, 2012년 8월 5일 발효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채택을 포함하여,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감사한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환영한다.
    - 5. 위원회는 특히 인천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보고서 검토의견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 : B. 구체적 권리(5~30조)  
제9조 접근성
    - 17. 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최소 크기, 용적률, 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고, 아직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웹사이트가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며, 청각, 지적, 정신 장애와 같은 각각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웹 접근성도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 18. 위원회는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9조 및 일반논평 2호에 따라, 건물의 크기, 용적률, 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각 및 기타 장애인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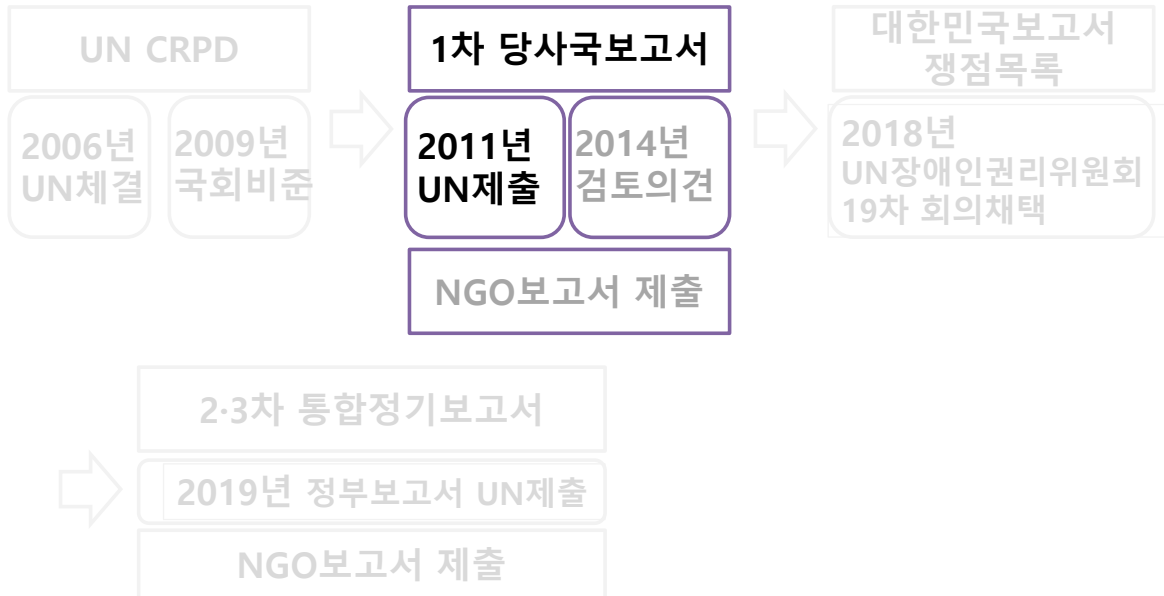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보고서 검토의견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 : B. 구체적 권리(5~30조)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41.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수화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선언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임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방송물(특히 TV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에 프로그램 양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이 없고, 수화, 자막, 화면해설, 이해하기 쉬운 내용, 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이 없음을 우려한다.
    - 4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한국 수화를 자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자국의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키고, 수화, 자막, 화면해설, 이해하기 쉬운 내용, 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보고서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서문

3. 대한민국은 (중략) 1997년에 제정된「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도로 및 설비 등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률 중 도로 및 교통수단,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은 2005년에 제정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분리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후략)

4. 정부는 1996년,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결의하였다. (중략) 현재『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계획에 따라 (중략)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정부는『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제1차 2000~2004, 제2차 2005~2009, 제3차 2010~2014)과『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제1차 2007~2011)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략) 이와 같은 장애인 관련 계획들의 기본 목표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07년 5월에 수립한 인권에 관한 종합 계획인『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 포함되어 있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서문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문화·예술 사업자 등에게 자막,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21조 제1항), 제공하여야 할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녹음테이프, 자막, 화상전화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동법에서 전자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하고, 비전자정보는 ‘전자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한다(제3조 제8호).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의사소통 방식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제9조 접근성

45. 대한민국은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먼저 「건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이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7조 제2항).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러한 편의시설의 예로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복도·계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화장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등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분야별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2008년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법적 의무 대비 실제 설치율은 83.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은 76.6%, 공원은 66.0%였고, 이들의 적정 설치율(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각각 59.7%, 69.1%, 57.9%였다(부록 표25 참조).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 제9조 접근성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제12조). 정부는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5-2009)』에서 편의시설 설치율 85%를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7.5% 밖에 달성하지 못한 점과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편의시설 비율이 55.8%인 점을 감안하여,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0-2014)』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을 88%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편의시설의 적정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의 건축 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건축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물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려 200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부록 표26 참조)(그 외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 종류 및 현황은 이 보고서 제90항~제94항 참조).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 제9조 접근성

47. 정부는 2008년부터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구역, 도시 등이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용이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건축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의거, 이를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도로 및 건축물에 이와 관련한 인증을 했다.

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법인·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1조). 그 정당한 편의의 예로는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화면읽기, 음성서비스 등이 있으며, 동법은 편의 제공의 부담을 고려하여 편의 제공 주체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점을 단계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편의 등을 제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제9조 접근성

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제15조 제1항)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쓰이는 각종 기기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 예로, 현재 국내에는 1,104대의 장애인용 CD·ATM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은행들은 2013년까지 1,01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CD·ATM기 5,000여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들은 향후 3년간 21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쉽게 은행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금융상품 조회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보고서 제98항~제100항 참조).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상기 접근성을 제공받지 못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록 표27 참조).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9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예로, 교통수단에서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이, 여객시설에서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접근로·주출입구·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이, 그리고 도로에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포장 및 기울기, 횡단보도 등이 있다. 2009년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72.3%, 여객시설의 73.4%, 도로의 51.7%만이 법적 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67.9%, 여객시설의 58.2%, 도로의 36.7%만이 법적 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6~38 참조).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저상버스를 일정 대수(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의 1/2, 시와 군의 경우 1/3) 이상 운행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4조). 정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10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여 3,19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였고, 이는 전국 시내버스의 11%에 해당된다.

9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애인 등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있고(제15조 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그 구조 및 재질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이와 관련, 도시철도사업자들은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바, 2010년 현재, 9개도 17개 도시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3.8%이고(부록 표39 참조), 2010년에는 53개의 도시철도 역사에 138대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가 추가 설치되었다(부록 표40 참조).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2006년 이래 8건)함에 따라, 휠체어리프트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당한 편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시철도사업자에게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할 것과 정부에 대해서는 그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과 법 개정을 권고하였고(2009년),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였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9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여야 한다(제16조 및 시행규칙 제5조). 2010년 6월 현재, 16개 시·도에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은 총 1,302대로,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9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유도신호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1항 관련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95. 정부는 장애인들이 이동보조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보조기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이동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그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보행보조차 등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있다(부록 표41~43 참조).

96.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보조기구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술을 지원하며,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67조). 이에 따라 정부는 시각·청각·일상생활 보조기구 등 대상 분야별로 핵심부품 및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0개 과제에 1,718백만 원, 2009년에는 13개 과제에 2,320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은 13개 과제에 2,426백만 원으로 규모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질 높은 보조기구의 유통 및 전달을 위하여 보조기구에 대한 '통합인증 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양질의 보조기구를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에 대한 국가 안전·품질 표시 기준을 제정하여 관련업체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0년 “국민편익 증진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휠체어결합형하지운동기구, 장애인용휴대폰단말기, 음성워드프로세서 등 총 8가지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 기술을 개발하였다(42.5억 원).

97. 정부와 민간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각종 할인, 감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근로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구입자금(개인당 1,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게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이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편의, 공용주차장 주차료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50%) 등이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철도, 도시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이용할 때에 요금이 할인(20%~50%)된다(부록 표44 참조).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98. 정부는 방송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방송정보가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10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방송편의 제공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상기 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2010년 중앙 지상파방송의 자막방송,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 비율은 각각 96.0%, 5.1% 및 6.0%이며, 정부는 이와 같은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 지상파방송과 유료 방송매체 46개사에 28.2억 원을 지원하여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수신기 7만대를 시·청각장애인에게 보급하였다(부록 표45 및 표46 참조). 또한 정부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방송법」(2000.1.제정)의 권고조항(제69조 제8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정보 접근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9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관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 제2항 제1호). 「국가정보화기본법」(1995.8.제정)은 국가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서비스의 제작 또는 제공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2조). 이에 정부는 웹사이트 설계자, 운영자 및 개발자들에게 정보통신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종의 국가표준 및 9종의 단체표준을 제정·배포하였다(부록 표47 참조). 이 표준에 의거, 2009년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86.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07년부터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2010년 현재 153개 웹사이트를 인증하였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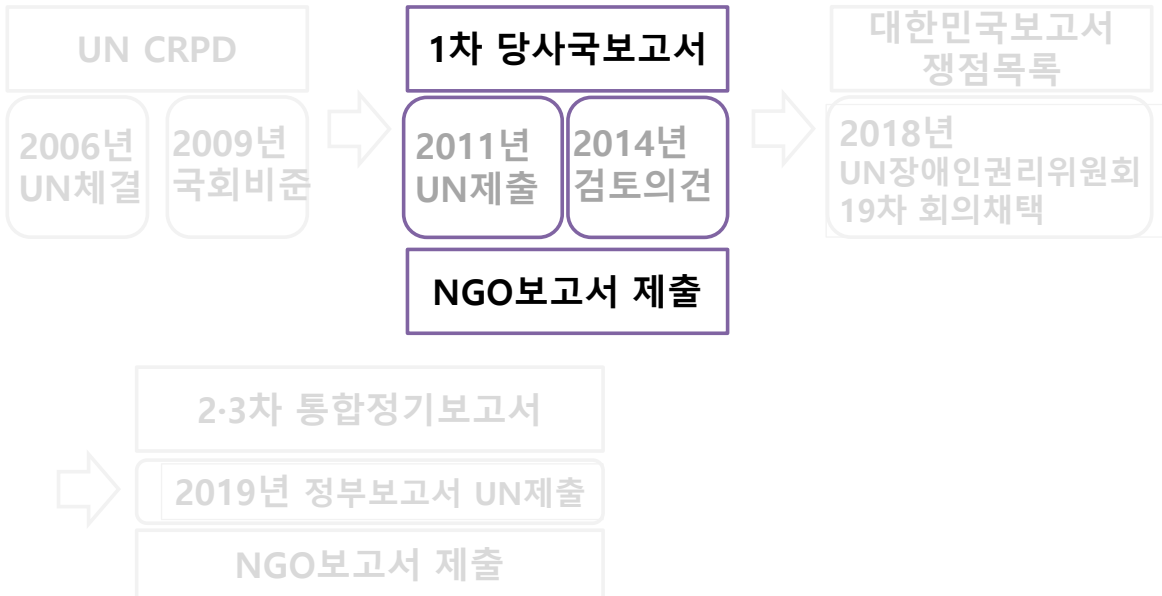
-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100. 2010년 5월에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통신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서비스나 문자서비스 등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이 법 조항은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2011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경기도 농아인협회는 화상전화기를 이용하여 3자간 통화(송신자-수화통역사-수신자) 방식의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정부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2009년 기준, 175개소 설치) 관공서 및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시 수화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출장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01. 정부는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과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2000년부터 『한국표준수화 규범제정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회화를 비롯한 각종 법률·종교·전문 용어 등이 담긴 수화 용어사전 및 수화 문법 사전 등을 발간하고 있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보고서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2014.8.20)

##### • 제9조 접근성

22.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2014년말까지 편의시설 설치율을 88%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하였지만, 2013년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0.2%를 맴돌고 있어 편의시설의 설치의 촉진을 위해 법개정과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건축기본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편의시설 관련 조항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건축기본법」의 경우는 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접근성 관련 사항은 모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로 건축기본법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고서에서 정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농어촌 주택 개조사업' 19억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나,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정부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으나 인증제도의 경우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공공시설 위주로 인증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은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2014.8.20)

##### • 제9조 접근성

23. 지하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각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리프트가 설치된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넓어 시각장애인,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저상버스는 정부가 수립한 목표인 2012년까지 33.5%에 크게 못 미치는 16.4%(2013년 말 현재)에 머물고 있어 2017년 말까지 41.5%를 저상버스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은 동결 또는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도 법정기준치에 60%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시외버스의 경우 리프트 차량이 없어 휠체어 이용장애인은 시외버스의 이용이 불가능해 도시와 도시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24.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 및 웹접근성 지침을 마련하고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발급하여 장애인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 많고,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의 특성에 맞춘 웹접근성은 취약한 상황이다.<sup>17)</sup> 스마트폰의 앱에 대한 접근성 지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지침의 수용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다. 민간 앱 개발자에 대한 지침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2014.8.20)

##### • 제9조 접근성

##### 권고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이행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단, 계획에는 반드시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접근에 있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한다. 모니터링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현재의 대중교통정책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대중교통정책의 재검토 및 개선을 위한 논의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의 참여에는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2014.8.20)

- 제20조 개인의 이동

51. 2013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64.1%가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중 42.2%는 보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자 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54.9%를 차지한다.<sup>39)</sup>

52. 지체장애인의 66.3%가 보장구의 구입비용의 부담때문에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하였으며 보조기기를 구입한 장애인 중 50.6%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의 구입에 따른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급여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소수 품목에 대해 소폭 인상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조기기에 대해 지난 9년동안 급여의 기준액을 동결하고 있어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3.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각 부처별 실적쌓기와 전시적 행정이 되고 있다. 상당수의 개발품목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개발제품은 전시실에서 성과를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54. 장애인권리협약 20조 c)항에 대한 법적근거도 정책도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2014.8.20)

- 제20조 개인의 이동

#### 권고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성별, 아동과 성인, 노인 등 개인별 특성과 거주공간 및 거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장구의 생산 보급을 위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강구를 권고한다. 강구된 정책에는 보조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장구처방기준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의 이동기술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마련을 권고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2014.8.20)

#####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55. 현재 한국에서 수화는 대한민국의 공신언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인(청각·언어장애)들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통의 어려움과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농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수어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법률로 제정되고 있지 않다.

56.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체계 등 관련 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5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방송 편성의 양적기준(지상파의 경우 수화통역 5%,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만을 준수하며 방송이 제작되면서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이 크게 취약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방송을 접하는 장애인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수화통역자의 방송화면 크기가 TV화면의 1/16에도 미치지 못해 수화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근거와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2014.8.20)

#####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권고

- 대한민국 정부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를 대한민국의 공식사용 언어로 인정하고 이를 법률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의 마련을 권고한다. 법률의 제정과정에는 반드시 농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권고한다. 지원은 법적근거를 가져야 하며 특히,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방송접근권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보고서 쟁점목록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보고서 쟁점목록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19차 회의 채택 대한민국 쟁점목록
  - 접근성(제9조)
    - 9.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14)의 제9조 '접근성'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십시오.
      - (a)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도시 간 교통수단을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b) 규모나 수용 인원, 건축 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한다.
      - (c) 모든 장애인들이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통신, 가전제품 등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 10.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시행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 Accreditation System)'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민간시설의 인증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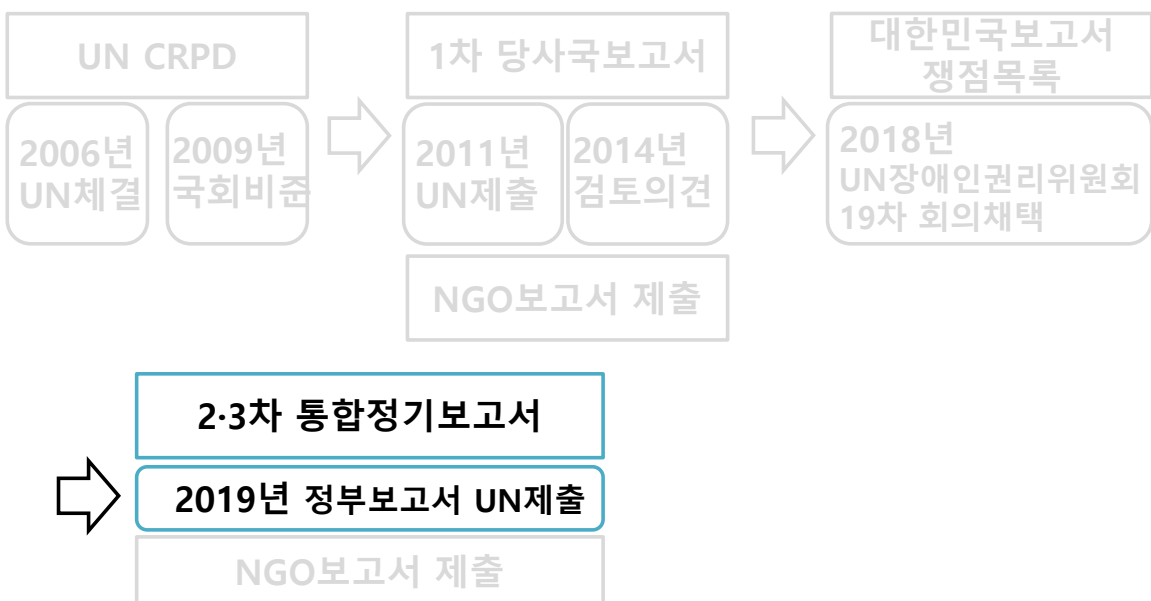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보고서 쟁점목록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19차 회의 채택 대한민국 쟁점목록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 22.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 (a)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기본법」을 적절히 시행한다.
      - (b) 장애인의 방송 및 인터넷 TV 접근성 관련 규정에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포함시킨다.
      - (c) 공공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과 '읽기 쉬운 방식(Easy Read)'으로 제공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접근성(제9조)

- <쟁점목록 단락 9-a에 대한 답변>

9.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14)의 제9조 '접근성'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십시오.

(a)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도시 간 교통수단을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44.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저상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7,134대의 시내버스 중 3,110대의 저상버스를 운행(운행률 43.6%)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저상버스 운행률은 2017년 말 기준 22.4%로 조사되었다(부록 <표 9-1> 참고). 대한민국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 일정 대수 이상(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2(특별·광역시)~1/3(시·군))의 저상버스를 보유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2017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3,812억을 지원 하였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접근성(제9조)

- <쟁점목록 단락 9-a에 대한 답변>

- 45. 또한 2013년부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331대의 법정대수 대비 43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운행률 132.6%)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률은 2017년말 기준 법정 의무대수 대비 126%로 조사 되었다(부록 <표 9-2> 참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6항은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2017년간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252억을 지원 하였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접근성(제9조)

▪ <쟁점목록 단락 9-b에 대한 답변>

- 46. 인천전략 국가행동계획의 세부목표 중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게 개발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는 2015년 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합성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부터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47. 2016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합성 확인제도”는 그동안 총155천건의 확인실적(16년도 49천건, 17년도 58천건, 18년도 9월말 현재 48천건)을 거두었다. 편의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엄격한 사전 확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적합성 확인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장애인들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14)의 제9조 ‘접근성’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십시오.

(b) 규모나 수용 인원, 건축 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접근성(제9조)

▪ <쟁점목록 단락 9-b에 대한 답변>

- 48.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장애인의 최소한의 접근권은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축물과 함께 동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음에 따라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미확보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협약 최종건해 권고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각각 2014년, 2018년에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편의증진 확대를 위해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되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시설 개선을 위주로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문 폭 확대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접근성(제9조)
  - <쟁점목록 단락 9-b에 대한 답변>
  - 49. 아울러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1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시 해당 면적을 바닥(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2호다목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 1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시 면적 산입제외 규정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바 있다.
  - 50. 또한 정부는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51.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12.3%p 향상되었으며 이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 보다 약 두배 정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접근성(제9조)
  - <쟁점목록 단락 9-c에 대한 답변>
  - 52. 대한민국 정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동등하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웹 접근성 국가표준(KS X OT0003)을 준수한 우수한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심사에는 장애유형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용자 심사(Usability Test) 절차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부록 <표 9-3> 참고).

9.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2014)의 제9조 '접근성'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십시오.  
(c) 모든 장애인들이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통신, 가전제품 등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접근성(제9조)
  - <쟁점목록 단락 9-c에 대한 답변>
  - 53. 2018년 2월에는「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를 개정하여 기존 ‘웹사이트’ 접근성과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접근성으로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기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 54.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가전제품 개폐장치(문, 손잡이 등) 접근성’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에 이어, 입력방식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KS A 5560-1 (2016년), KS A 5560-2(2017년))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가전제품이 점점 보편화 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애인 등 사용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가전제품 터치인터페이스의 접근성 지침(KS A 7256(2017년))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접근성(제9조)
  - <쟁점목록 단락 10에 대한 답변>
  - 55. 정부는 2015년 1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BF인증제도는 2018년 12월 기준 총 4,243건이 인증되었으며, 그 중 공공부문이 3,678건으로 약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부문에서의 인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표 9-4> 참고).
  - 56. 2018년 12월 기준 총 4,243건의 인증 중 민간부문의 인증 수는 565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BF인증제도 개선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BF인증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시행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 Accreditation System)'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민간시설의 인증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 22.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a)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기본법」을 적절히 시행한다.
- <쟁점목록 단락 22-a에 대한 답변>
- 119. 정부는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 120. 정부는 같은 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는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과 같은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한국수어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한국수어 연구 기반 구축 및 용어 정비, 한국수어 사용 확대 및 홍보 확산 등을 포함한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향후 5년간 한국수어 위상 강화와 한국수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이행한다.
- 121. 또한, 정부는 2016년 5월 29일 「점자법」을 제정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4조에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명시하였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 22.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b) 장애인의 방송 및 인터넷 TV 접근성 관련 규정에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포함시킨다.
- <쟁점목록 단락 22-b에 대한 답변>
- 122. 정부는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상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송사업자의 규제 준수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부록 <표 22-1> 참고).
- 123. 정부는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및 고시에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작방법, 준수사항 등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정책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2017년 12월 26일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및 제작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프로그램 제작 기본 준수사항 제시 및 방송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제작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독려 및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 <쟁점목록 단락 22-b에 대한 답변>
  - 124. 뿐만 아니라 장애인방송 제작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6년 이후 매년 정부예산(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방송 제작비 일부를 지원(2018년 기준 약 43억원) 하고 있으며,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수준 이상 기준에 충족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매년 인센티브 지급 예산 확대(2015년 2억원 → 2018년 4억원)를 통해 실질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125. 또한 방송사업자 및 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설명회(2017년 2회, 2018년 5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방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연중)하고, 필요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장애인방송 품질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표 22-2> 참고).
  - 126. 이러한 개선활동으로 인하여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 폐쇄자막방송은 2014년 72.1점 → 2018년 81.7점,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 78.3점 → 2018년 80.9점, 한국수어방송은 2014년 70.6점 → 2018년 81.3점으로 장애인방송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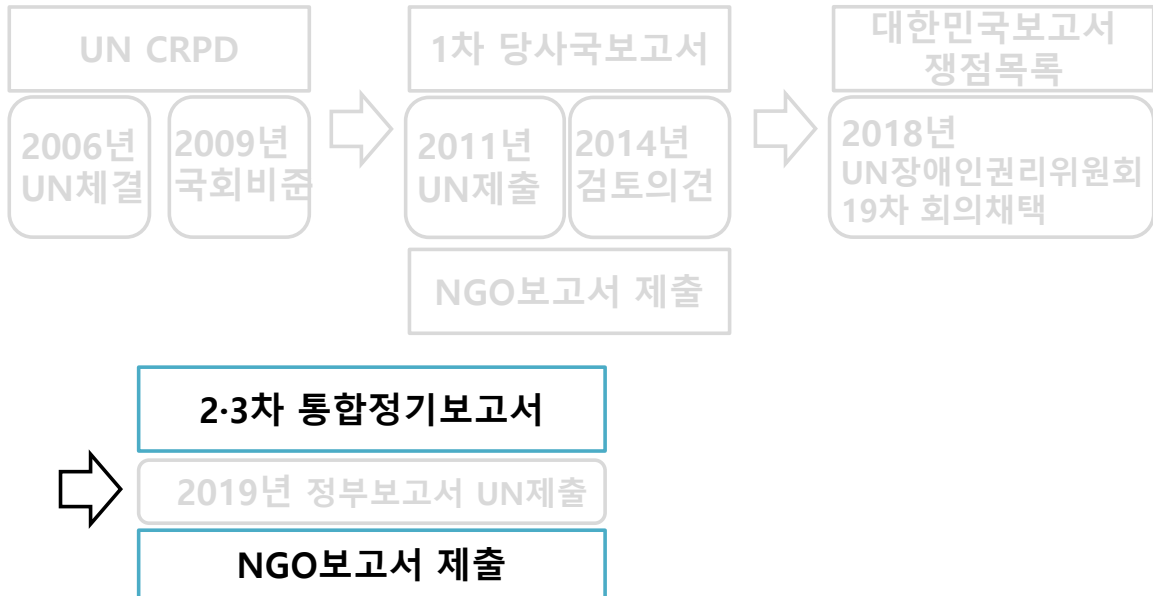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 <쟁점목록 단락 22-c에 대한 답변>
  - 127. 대한민국 정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동등하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한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술심사 중 사용자 심사(Usability Test)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심사하고 있다. (쟁점목록 31번 답변 참고).
  - 128.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인 전용 콘텐츠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7월 27일부터 EBS에서 제작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 오는 날 안전수칙' 영상, 유관단체에서 발간한 읽기 쉬운 도서(원문) 등을 수집 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콘텐츠 전용서비스 (<http://nld.nl.go.kr>) 제공하고 있다.

22.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c) 공공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과 '읽기 쉬운 방식(Easy Read)'으로 제공한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3차 통합보고서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접근성(제9조)

이슈1 휠체어로는 시외이동이 불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국내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중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은 2017년 기준 22.4%에 불과하다. 이는 교통약자법 제14조 ④항의 “도입”을 신규차량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교통수단<sup>34)</sup>의 경우, 지역별 보급 편차가 심하고 평균대기 시간이 63분<sup>35)</sup>에 이른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보급 사업은 2019년 9월 현재 4개 노선, 차량 10대(우등 3대, 일반 7대)로 총 3개월간 시범<sup>36)</sup>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탑승 가능한 전동형 휠체어의 종류를 4개사 제품으로만 한정하고, 특히 수동형 휠체어는 탑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다.

권고를 위한 질문

-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법 제14조 ④항의 “도입”에 대한 법률 내용을 “신규 및 대차 도입”으로 개정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환경, 안내시설, 매개시설, 정류장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시오.
- 또한 장애인 등이 접근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원 대상의 지속적인 장애이해교육과 지역 간 보급편차를 개선 및 장애인 등의 병원방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특별한 운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하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접근성(제9조)

##### 이슈2 생색만 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전체 건축물의 수는 700만여 개(7,191,912개)에 이르고 있다<sup>37)</sup>. 국가보고서에 밝힌 2018년 편의시설 설치율 80.2%는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시설 2.78%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불과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복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일부 편의시설 조사로 도출된 결과일 뿐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등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제외되었다. 시각장애인 안내 및 유도설비 설치율은 57.5%, 적정 설치율은 54.3%이다.

##### 권고를 위한 질문

- 정부는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한 장애인 접근환경 개선을 위하여 규모나 수용 인원, 건축 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공공시설과 생활근린시설 등의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고,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접근성(제9조)

##### 이슈3 여전히 차별적인 시각장애인의 정보기기 접근성

웹 사이트의 시각장애인 사용자 평가에서도 장애 유형별 과업성공률이 웹 사이트가 평균 58.9%, 모바일 앱이 평균 71.7%이다<sup>38)</sup>. 정부24 (gov.kr), 민원24(minwon.go.kr), 고용보험 (ei.go.kr), 워크넷(work.go.kr) 등 금융거래나 공공업무에 필수적인 웹사이트에서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인증 설치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등이 장애인 접근성을 가로막는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용하고 있어 민간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2018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였다<sup>39)</sup>. 또한 터치스크린형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가전제품 등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킹서비스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 권고를 위한 질문

-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또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막론한 웹사이트, 모바일웹,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은 물론 최근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 홈네트워킹 서비스 등에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접근성(제9조)

이슈4 열악한 장애인 여객 선박 접근권

-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6~2021)」 중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현황에 의하면,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17.6%로 항공기 97.7%, 철도차량 93.1%, 도시철도 및 전철 91.4%에 비해 가장 낮다.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선박탑승 거부 사례 등의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에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 보장, 선박·항만시설 이용 시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권고했으나, 실제로 여객선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는 6.9%,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은 25%에 불과하고 여객선의 휠체어 승강 설비는 53.1%로, 80~100%를 상회하는 타 교통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sup>40)</sup>.

권고를 위한 질문

- 이동편의시설 적합기준 설치율 17.6%에 불과한 여객선의 적합기준 설치율을 확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접근성(제9조)

이슈5. 장애인은 배제시키는 지역 간 교통 이동 시스템

대한민국 장애인의 통행빈도는 지역 내에서 주 5~6회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고, 이동교통 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지역 간 외출 빈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극심한 격차를 낫는데, 지역 간 연 20회 이상 이동한다고 답한 장애인은 4.4%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이 1.9%로 가장 낮았다<sup>41)</sup>. 현재 시외구간을 오가는 저상버스는 단 한대도 없고, 그나마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2층 저상버스만이 시범운영 되고 있<sup>42)</sup>는 등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권고를 위한 질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해 경기도와 서울을 벗어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접근성(제9조)

이슈6 0.05%에 불과한 생활환경 인증

2018년 전체 건축물의 수는 7,191,912개<sup>49)</sup> 중에서 2008년 처음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중 0.059%에 불과하다. UN CRPD는 제1차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 건축물의 크기, 용적률, 건축일자에 관계없이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2019년 5월 현재까지 법령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증된 건축물도 관리미비 시설물 2014년 60개소에서 2017년 130개소로 2.2배 증가하고, 관리미비 시설물 비율 2015년 49%에서 2017년 91%로 급증하고 있으나 2007년 인증제도 시행 이후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인증취소 사례는 전무하다. 또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BF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며, 의무화가 될 경우 소급입법적용을 통해 기존의 여객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권고를 위한 질문

- 정부는 공중이용 민간시설의 BF인증제 의무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또한 BF인증 이후 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 인증취소 사례가 없는 만큼 관리미비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조치 등이 이뤄졌는지 설명하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개인의 이동성(제20조)

이슈1 열악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보행환경

대한민국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종합만족도는 60.7점으로 고령자(79.0%)나 임산부(78.5점) 등의 다른 교통약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sup>92)</sup>. 특히 보행환경 만족도는 52.3%점으로 최하위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932건 민원 중 도보이동에 대한 민원이 73.6%로 가장 많았다. 2017년 기준 전동보장구 소지자는 10만 2천명<sup>93)</sup>으로 10년 만에 5배가량 늘었지만 인도침하나 벌여짐 현상이 자주 발생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의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등 담당 및 관리부처가 다원화 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권고를 위한 질문

- 10만 2천명이 넘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처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개인의 이동성(제20조)

이슈2 높은 자부담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장애인 보조기기

보조기기를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79.0%로서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보조기기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sup>94)</sup>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뇌병변장애에서 특히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필요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경제적 비용 부담'인 이유가 55.0%로 가장 많다. 건강보험급여대상 품목은 각각의 급여기준액이 있는데,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실 구매가격이 아닌 기준액의 90%만 지원해 자부담율이 높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정보단말기나,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기구 AAC는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빠져있고, 보청기의 경우, 건강보험 품목 대상이지만 내구연한이 5년이어서 고장이나 분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권고를 위한 질문

-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조기기의 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낮은 기준가와 높은 실구입비 등의 격차에 야기되는 고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지나치게 긴 내구연한과 건강보험 지원품목 확대 등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이슈1. 점자법이 있어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점자교재

국가보고서 #121와는 달리 그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있다. 현재 맹학교에서 점자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 시각장애인특수교사 중에는 점자를 모르는 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점자교육을 위한 공식적인 교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46%에 불과하며 시각장애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되어도 점자교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학기중반이 지나서야 점자교재를 지급받는다.<sup>95)</sup> 또한 대학입시준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방송인 EBS 점자교재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대학입시준비의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sup>96)</sup> 또한 점자·확대문자·음성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점자표기 오류와 점자규정 미준수, 기독성이 낮은 교재가 보급되고 있다.<sup>97)</sup>

점자법은 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만이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나머지 조항에 관한 시행령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점자법 제18조 2항에 점자전문가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마련된 대통령령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한국점자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점자위원회 설립과 교과용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는 입법과정에서 거부되었다.<sup>98)</sup>

## Ⅲ.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권고를 위한 질문

- 맹학교와 EBS 점자교재는 새학기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까?
- 점자전문가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까?
-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대체자료는 시각장애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점자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점자발전을 위한 한국점자위원회의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교과용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을 준수하는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 Ⅲ.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이슈2 전시행정적으로만 시행하는 방송접근권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sup>99)</sup>를 달성한 사업자는 96.1%이며, 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등에서 목표 편성비율을 100% 달성<sup>100)</sup>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목표 자체가 매우 낮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적 기준 평가에 불과하며, KBS, EBS, 연합뉴스, 채널A 등은 일부 자막이 송출되지 않거나 오탈자가 속출하는 등의 질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KBS1, KBS2, EBS, SBS, 종편4사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화면해설 편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들은 의무편성비율만 겨우 넘기는 편성을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에 장애인 방송 편성이 치중되는 것도 문제이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경우,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및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상에도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방송 관련 양적·질적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EBS에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4년간 총 106편 중 신규제작은 7편에 불과하다.

### Ⅲ.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권고를 위한 질문

- 정부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의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방송 접근환경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고 방영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 Ⅲ.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이슈3.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 모바일과 웹 접근성에서 현재 사용성 평가 등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없다. 현재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의 공인인증의 대체수단이 없고 키오스크 등의 접근성 또한 미비하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능력의 결여 등으로 우리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편견이 상존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당사자의 전 생활영역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권리라는 인식이 사회에 매우 부족하다.

권고를 위한 질문

-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의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또한 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이용, 선거, 형사 및 사법절차 등의 삶의 전영역의 정보를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게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 III. 접근권 보장의 구체적 이행과제

#### 민간보고서 1차 초안

-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체감 수준 : 명확한 온도 차이가 발생
- UN CRPD를 활용한 우리들의 정책 개선 노력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게 유도
  - UN CRPD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근거로 법률제정, 정책, 제도의 신설과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노력
  - 국내 장애계 연대·협력과 함께 국제적 공조체계의 구축
  - 통계, 실태조사와 같은 근거 기반 개선 노력
  - CRPD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기본 권리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감사합니다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12. UN CRPD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자유권을 중심으로

강의자 : 윤삼호  
주최 :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 '자유권'과 국내 법률을 중심으로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정되기 까지

### 국제권리장전

- 세계인권선언(1948년)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 B규약, 자유권 규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 A규약, 사회권 규약

### 장애와 인권에 대한 유엔 문서들

- 정신지체인권리선언(1971년)
-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 장애인세계행동계획(1982년)
- 장애분야 인간자원개발을 위한 행동에 관한 탈린지침(1990년)
- 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보건증진 원칙(1991년)
-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1993년)
-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 장애인과 관련된 유엔의 인간 문서들은 모두 장애운동의 성장이다!

## ‘자유권 조항’과 ‘사회권 조항’

### 자유권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기초함.
- 협약 조항 : 접근권(9조), 생명권(10조), 위험상황 및 긴급사태로부터의 자유(11조), 사법에 대한 접근(13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14조),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취급 및 형벌로부터 자유(15조),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17조), 이주 및 국적 선택의 자유(18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19조), 개인의 이동(20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21조), 사생활 존중(22조), 정치적, 공적 생활 참여권(29조)

### 사회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기초함.
- 협약 조항 : 교육권(24조), 건강권(25조), 가할 및 재활(26조), 노동 및 고용(27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28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체육생활 참여(30조)

## 접근권(제9조)

- “장애인이 독립해서 살고 모든 생활 영역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도시와 농촌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기술과 시스템 등 정보와 통신, 일반인에게 개방·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관련 국내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중 ‘정당한 편의제공’ 조항,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3조(편의시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 의의 : ‘접근권’과 ‘이동권’은 다른 소수자의 인권과 구별되는 장애인의 인권에 특수한 권리이며, 장애인 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생명권(제10조)

- “당사국은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졌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 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 같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관련 국내법:**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유전성 질환)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특소플라즈마증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7.]

\* **쟁점** : 여전히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한 임신중절의 범위가 너무 넓음.

## 위험상황과 인도적 긴급사태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제11조)

- “무력 충돌, 인도적 비상사태, 자연재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관련 국내법**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 사법 접근권(제13조)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14조)

-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 등 예심단계를 비롯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 등 직·간접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제13조)
- “당사국은 장애인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자유를 박탈당하면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의 보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 편의 제공 등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제14조)
- **관련 국내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 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수사 과정),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재판 과정),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 “당사국은 성적 착취·폭력·학대를 비롯하여 가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착취·폭력·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 등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착취·폭력·학대를 피하는 법, 인지하는 법, 신고하는 법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과 교육 대책 등 장애인, 그 가족, 돌보미를 위한 성·연령 감수성을 지닌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폭력·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이 같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령·성·장애 감수성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 **관련 국내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9(금지행위),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5조(신고의무), 제17조(보호조치)

## 개인의 완전함에 대한 권리(제17조)

-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정신적 완전함(integrity)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관련 국내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 쟁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시설',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인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입원제도'

##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제19조)

-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참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a)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와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정한 거주형태를 강요받지 않는다. (b)장애인은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개별지원을 비롯한 가정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c)장애인은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같은 서비스와 시설은 장애인의 욕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 관련 국내법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쟁점 : 현재 추진중에 있는 탈시설 정책은 효과적인가?

## 개인의 이동(제20조)

• “당사국은 장애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 독립적으로 개인 이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a)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과 시간에, 그리고 적절한 비용으로 쉽게 개인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b) 장애인이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보조공학,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와 매개자에게 접근하고 또 적절한 비용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d) 이동 보조기구, 장비, 보조공학을 생산하는 업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 • 관련 국내법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 사생활 존중(제22조)

• “거주지나 거주 형태가 어떠한 장애인도 사생활, 가족, 가정, 그리고 편지 등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임의로 또는 불법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명예와 명성을 불법으로 공격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런 간섭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관련 국내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 정치 및 공직 생활 참여권(제29조)

- “장애인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하여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공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다음 사항을 비롯한 공무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관련 국내법**

- <장애인복지법>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65조(선거공보), 제70조(방송광고),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 <공무원임용시행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쟁점**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제도 도입할 필요성.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13. 인천전략의 이행과 CRPD

강의자 : 김동호

주최 :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인천전략의 이행과 CRPD

2021년 11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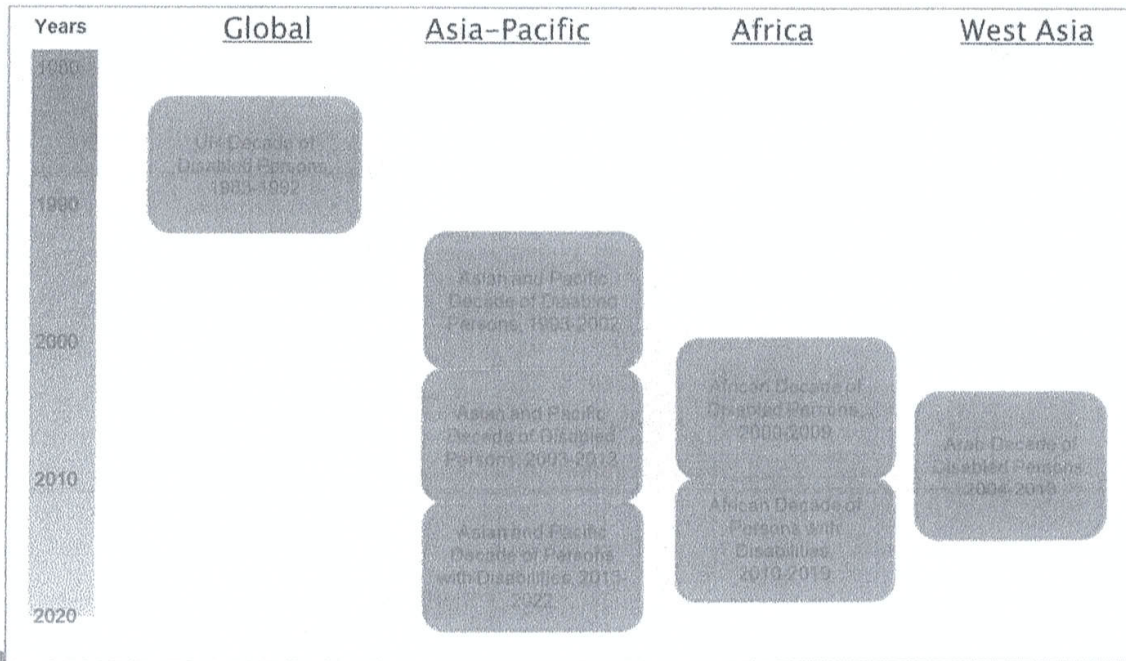
김 동 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 인천전략의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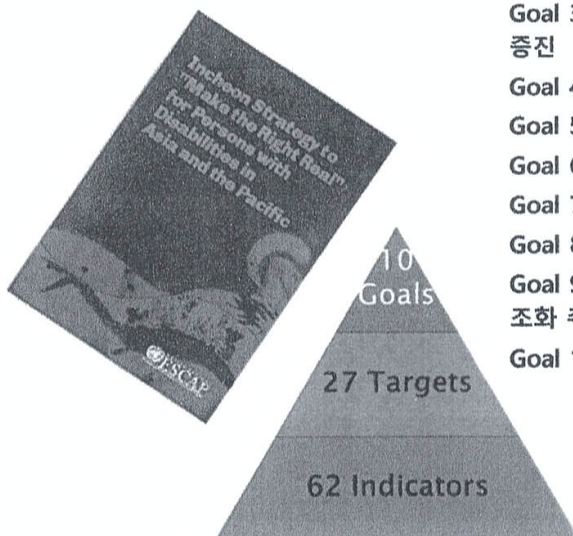
2

## 지역별 장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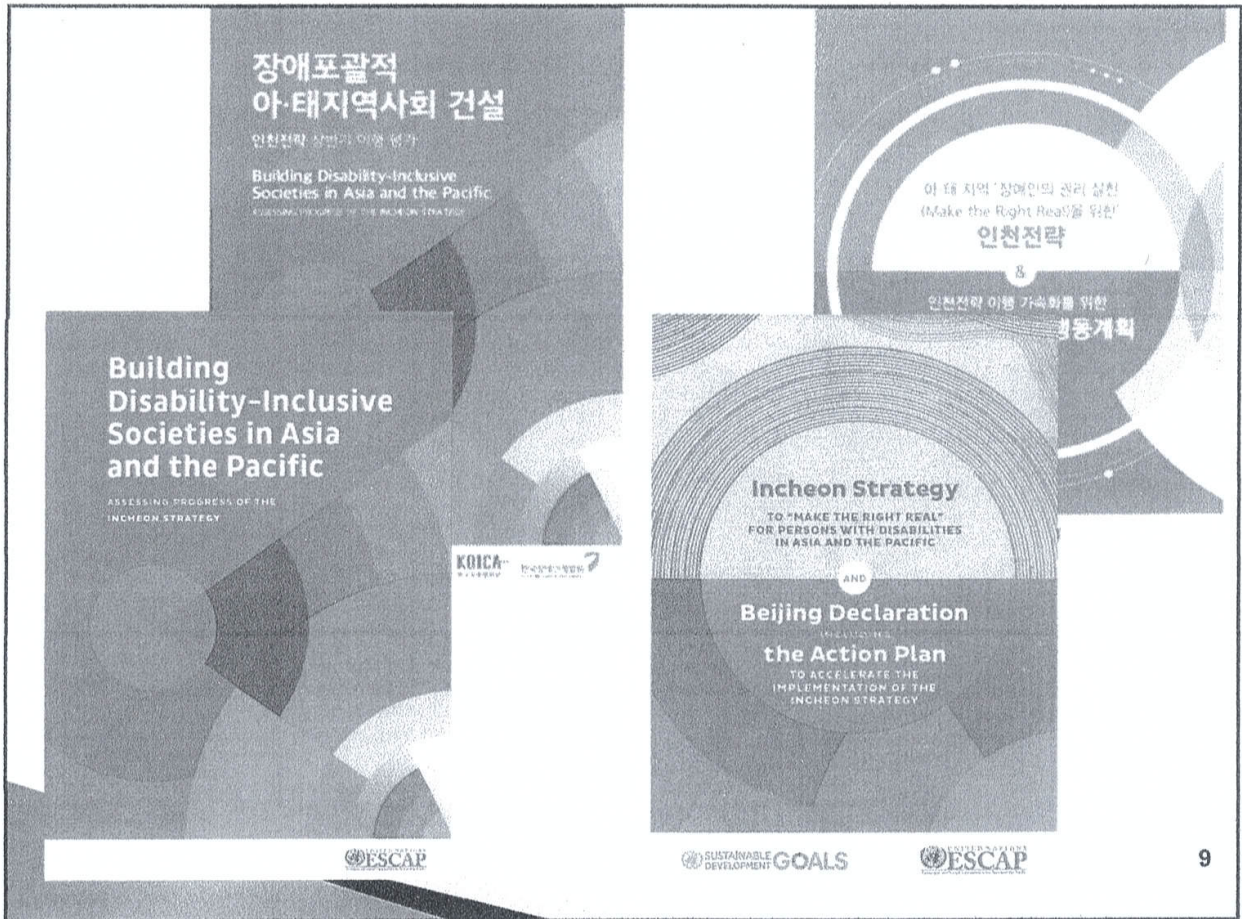
5

## 인천전략의 구성



- Goal 1: 빈곤 감소와 고용 증대
- Goal 2: 정치적 과정과 자기 결정에 있어 참여 증진
- Goal 3: 물리적 환경, 공공교통, 지식정보에 있어 접근성 증진
- Goal 4: 사회보장 강화
- Goal 5: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 및 교육의 확대
- Goal 6: 양성평등 보장과 장애여성의 역량강화
- Goal 7: 장애포괄적 위기감소 및 관리 강화
- Goal 8: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장애데이터 증진
- Goal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이행, 그리고 국내법과의 조화 추진
- Goal 10: 지역별, 지역간 협력 강화

6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 (핵심지표)
<b>목표 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b> 세부목표 1.A 장애인의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 세부목표 1.B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 연령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린다. 세부목표 1.C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한다.	1.1 세계은행에 의해 갱신되는 일일 1.25달러(구매력평가) 국제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1.2 전체 고용 인구 대 고용 장애인의 비율 1.3 훈련받은 모든 인구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
CRPD	
제24조(교육), 제27조(근로 및 고용), 제28조(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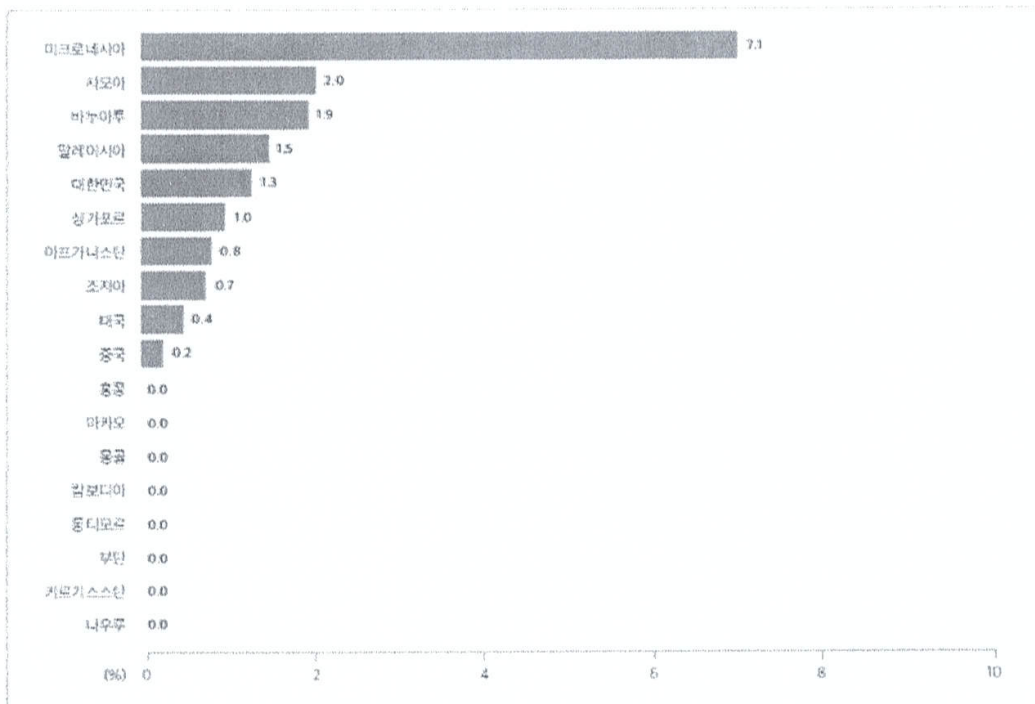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핵심지표)
<b>목표 2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b> 세부목표 2.A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2.1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비율
세부목표 2.B 정치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2.2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비율 2.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서 장애인의 비율 2.4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국가수도 내 투표소의 비율

CRPD
제4조(일반의무) 3항, 제29조(정치와 공적생활 참여)

1  
3

## 인천전략 이행과 CRPD(장애국회의원 비율)



1  
4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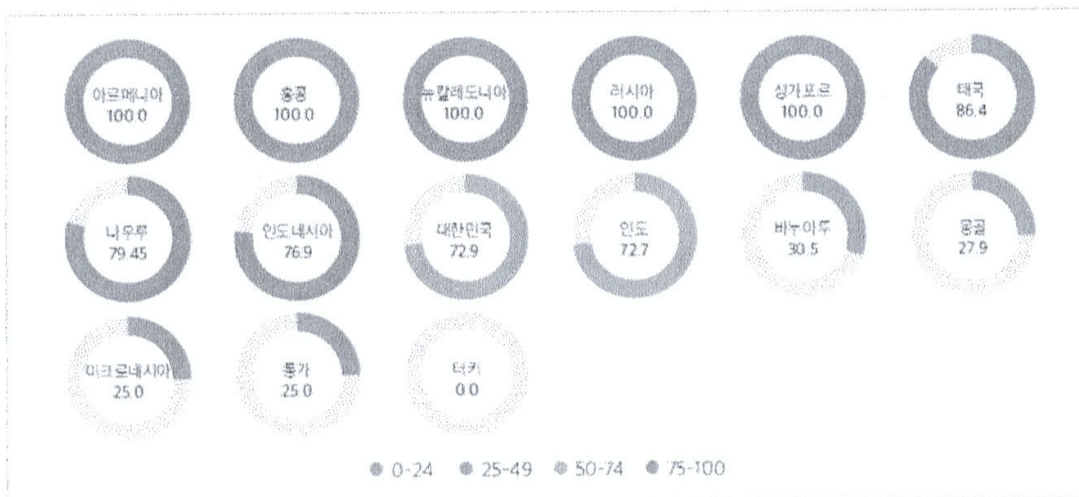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핵심지표)
<b>목표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b> 세부목표 3.A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게 개방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3.B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3.C 정보 및 의사소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3.D 적합한 보조기구나 생산품이 필요하나 이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3.1 국가 수도에서 접근 가능한 정부 청사의 비율 3.2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의 비율 3.3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제공되는 자막 및 수화통역의 비율 3.4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 비율 3.5 보조기구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보유한 장애인의 비율

CRPD
제4조(일반의무) 1항 f, g, h, l 호, 제9조(접근성), 제20조(개인의 이동),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접근성 보장), 제26조(가할 및 재활)

1  
7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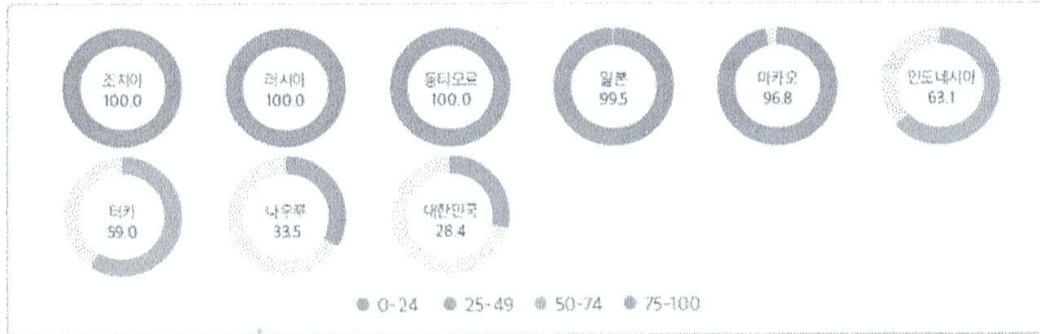
<도표 21> 접근 가능한 정부 건물의 비율



1  
8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도표 26> 정부 지원 장애급여를 수령하는 장애인의 비율



2  
1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 (핵심지표)
<b>목표 5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b> 세부목표 5.A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조치를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5.B 초·중·등 교육 취학을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격차를 반으로 줄인다.	5.1 유아기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수 5.2 장애아동의 초·중·등 교육 취학을 5.3 장애아동의 중·등 교육 취학을
CRPD	
제7조(장애아동), 제24조(교육),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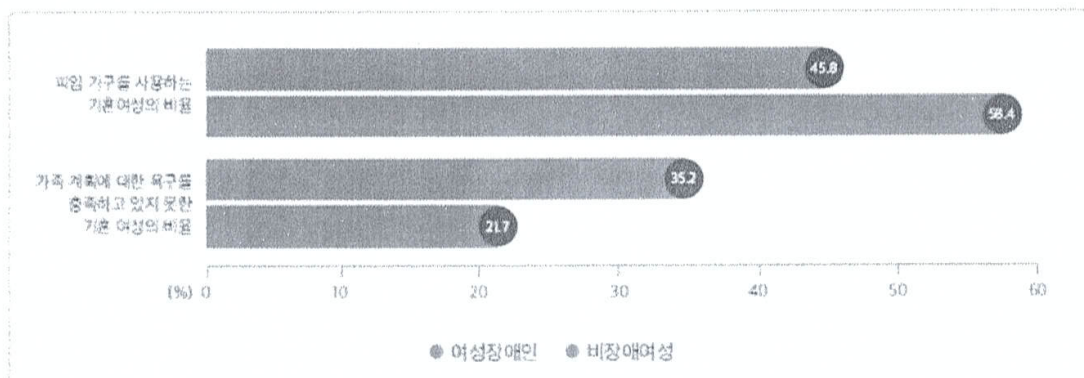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 (핵심지표)
<b>목표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b> 세부목표 6.A 장애 소녀 및 여성이 주류의 개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6.B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6.C 모든 장애 소녀 및 여성이 비장애 소녀 및 여성과 동등하게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세부목표 6.D 장애 소녀 및 여성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늘린다.	6.1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 6.2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 여성의 의석 비율 6.3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 6.4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수 6.5 여하한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 소녀 및 여성을 위해 재활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수
CRPD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	

2  
5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도표 31> 장애유무별 인도네시아의 성생식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혼 여성의 비율



2  
6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국가 혹은 지역	비상대피소 및 재난대피소	
	합계	접근 가능한 대피소 및 재난대피소의 비율(%)
조지아	105	0.0
홍콩	57	42.1
미키오	2	100.0
미크로네시아	32	25.0
몽골	387	---
대한민국	1,536	52.66
싱가포르	580	100.0

2  
9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측정지표 (핵심지표)
<p><b>목표 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b></p> <p>세부목표 8.A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장애통계를 생산하여 배포한다.</p> <p>세부목표 8.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의 중간시점은 2017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애 통계를 구축한다.</p>	<p>8.1 ICF 에 근거한 장애의 연령·성별·인종·사회경제적 계층별 출현율</p> <p>8.2 인천전략의 목표 달성 진척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2017년까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 수</p> <p>8.3 건강·성·생식 보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주류 개발프로그램 및 정부 서비스에서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분리 데이터의 가용성</p>
CRPD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	

3  
0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 CRPD 비준국 증가율

지역	당사국 수*		증가율 2012-2017 (%)
	2012	2017	
아프리카	34	46	35.3
아시아-태평양	27	43	59.3
유럽**	40	50	25.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23	31	34.8
서아시아	12	15	25.0
합계	127	174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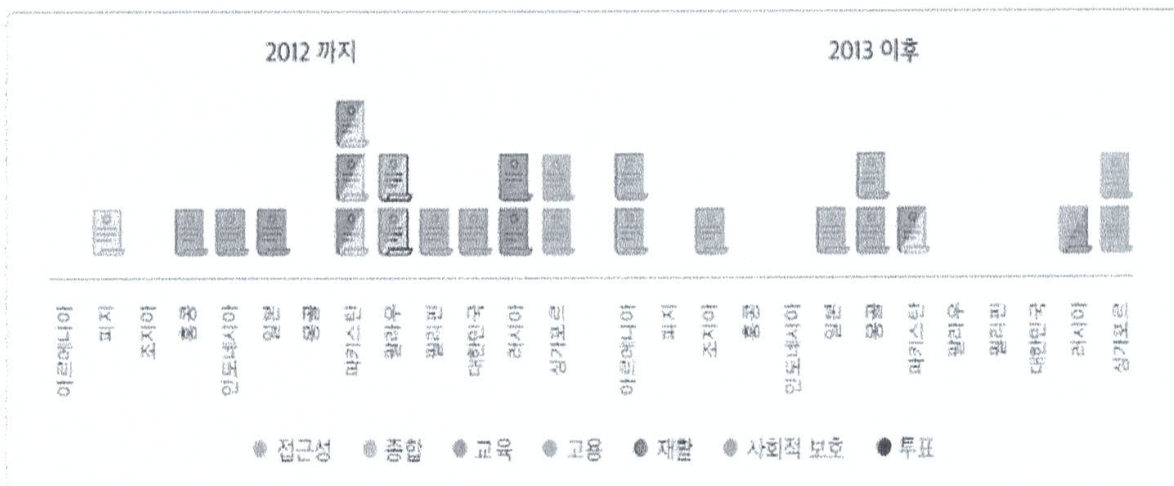
\* 표고 \*\*유럽의 지역 구분법에 따른 국으로 동북동남서부 국가는 해당 지역에 두 번 포함됨 \*\*참조에 비준한 유럽연합 포함

\*\* 출처 : CRPD 비준국 웹 사이트(CRPD depository website) 2017. 8. 검색 :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spx?id=10967>

3  
5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국가 현황(총13개국)



3  
6

# 인천전략 이행과 CRPD

<표 5> 연도 및 공여주체별 다자간 선택기금 기부금(2013년~2017년)

연도	공여주체(미 달러 기준 기부금액)
2013	호주 (50,000), 중국 (10,000), 대한민국 (50,000)
2014	중국 (10,000)
2015	중국 (10,000)
2016	중국 (10,000)
2017	중국 (10,000)

<표 7> 국가별 아 태지역 내 장애 관련 통계에 대한 훈련을 받은 통계 전문가의 수

국가	훈련 받은 통계 전문가의 수
이제르바이잔	4
홍콩	15
키르기스스탄	3
말레이시아	3
니우우	1
사모아	11
싱가포르	3
태국	2
통가	1
바누아투	8

<표 6> 연도 및 공여주체별 에스캅 장애 프로젝트 기부금(2013년~2017년)

연도	공여주체(미 달러 기준 기부금액)	지원하는 활동 범위
2013	일본재단 (87,300)	아시아-태평양 장애도괄 비즈니스 상
	중국 (250,000)	접근가능성 워크숍
2014	일본 (60,000)	장애도괄적 재난위험감소와 관리
	대한민국 (248,600)	장애통계수집
2015	대한민국 (360,000)	장애통계수집
2016	일본 (50,000)	장애도괄적 재난위험감소와 관리
	대한민국 (346,116)	장애통계수집
2017	대한민국 (421,668)	장애통계수집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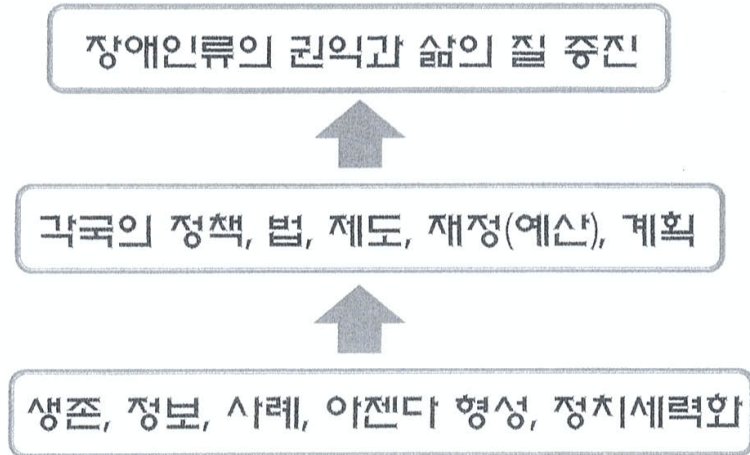
## 저개발국가 장애통계구축 지원사업

### 목표

- 인천전략의 지표에 따른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기본데이터 구축 지원
- 장애통계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통계 시스템 강화

\*2014년 부터 한국 정부가 지원

## 장애인의 권익 실현의 차원



## 국제협력: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 생존을 위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 아젠다 형성, 정책 형성으로의 지향
    - 역량강화
    - 리더육성
    - 네트워크 구축과 조직화 지원
  - 장애인을 위한 국제규범(CRPD, IS, SDGs)과의 동기화(Synchronization)
  - 정책형성 : 법, 제도의 구축
    - 국제기구(UNDP, WHO, UNICEF 등)의 활용
- \* 미얀마 장애인계획 수립 지원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 14. UN CRPD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강의자 : 조한진  
주최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sup>1)</sup>

## 1. 관련 조항

### 1)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동 협약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전담기구의 지정과 조정기구의 설치, 제2항은 독립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33조 국내 이행.감시

1. 조직 체계에 따라 당사국은 현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정부 내에 하나 이상의 전담창구를 지정해야 하며, 여러 부문.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 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2. 법률.행정 체계에 따라 당사국은 현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나 이상의 독립 기구를 포함한 조직을 당사국 내에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할 때 당사국은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지위.기능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은 감시 과정에 충분히 관계되고 참여해야 한다.

### 2) 국제적 모니터링

협약 이행의 증진 및 보장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제34조 이하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과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및 위원회의 정부

---

1) 양원태 (2007).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조한진, 강완식, 김미주, 김효연, 배용호, 양원태, 이광원, 이석구, 허일,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pp. 279-313). 서울: 한국 DPI.

보고서 심사권 등을, 선택의정서에서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 (1)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 회의’ (Conference of States Parties)의 비밀 투표로 선출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추가 60개국의 비준 또는 승인 이후에는 6명이 추가되어 최대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 선출 시에는 지역 안배와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며, 위원은 4년 임기로 한 차례의 연임이 가능하다.

####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김형식-김미주)

1.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함)를 설립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현 협약의 발효 시에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협약에 대해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 증가하여 최대 18명의 위원 수에 이르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일해야 하며, 높은 도덕성 그리고 현 협약에 의해 적용받는 분야에서 인정된 능력·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후보자를 지명할 때 당사국은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 제시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 받는다.
4.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분포, 여러 형태의 문명의 대표성과 주요 법률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잡힌 성 대표성,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등을 고려하면서 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그 국민들 중에서 지명한 사람의 목록으로부터 ‘당사국 회의’의 회의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가 되어야 하는 그들 회의에서, 위원회에 선출된 사람들은 최고 득표 수 및 출석·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투표 총 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6. 최초 선거는 늦어도 현 협약의 발효일의 6개월 후까지는 거행되어야 한다. 각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2개월 안에 후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당사국 앞으로 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어서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의 목록을 준비하고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표시해야 하며, 그것을 현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해야 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은 한 차례 재선출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이 지나

면 끝나는데, 첫 번째 선거 직후에 이들 6명 위원의 이름은 본 조의 제5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제비로 선택되어야 한다.

8. 위원회의 6명의 추가 위원의 선거는 본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선거 때에 거행되어야 한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 그 위원을 지명하였던 당사국은 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일하도록, 본 조의 관련 규정에 제시된 자격을 가지며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독자의 절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1. 유엔 사무총장은 현 협약 하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최초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2. 총회의 승인에 따라, 현 협약 하에서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가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그러한 여러 조건에서 유엔의 자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한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의 특권·면책에 관한 협약’의 관련 절에 규정된 대로 유엔을 위한 사명을 띤 전문가의 편의·특권·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 (2) 당사국 보고

각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최소한 4년마다 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5조 당사국에 의한 보고

1. 각 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에 관해서 현 협약의 발효 후 2년 내에, 현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에 관한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이룩한 진보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후에 당사국은 적어도 4년마다 또한 위원회가 그렇게 요청할 때는 언제나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이전에 제공된 정보를 그 후속 보고서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때, 당사

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서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서 제시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 받는다.

5. 보고서에서는 현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난제를 지적할 수 있다.

### (3) 보고서 심사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제안 및 일반 권고’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를 제출하며, 이를 관계 당사국에 송부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 요청이 담긴 당사국 보고서를 유엔의 전문기구나 기금, 프로그램,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해야 하며, 위원회의 ‘소견 및 권고’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도 함께 전달할 수 있다.

###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보고서에 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하고, 이것들을 관계 당사국에 발송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어떤 정보로 위원회에 응답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현 협약의 이행에 관련이 있는, 당사국으로부터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의 제출에서 크게 늦으면,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믿을 만한 정보를 근거로,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에서 현 협약의 이행을 검토할 필요성을 그 당사국에게 통지할 수 있다. 관련 보고서가 통지 후 3개월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에 관계 당사국이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일 그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응답한다면, 본 조의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3. 유엔의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보고서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 보고서와 관련된 제안과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당사국으로부터의 보고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조언이나 원조의 필요성에 관한 요청이나 지적을, 만약 있다면, 이들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권고와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그 보고서를 유엔의 전문 기구, 기금, 프로그램 및 기타 소관 조직들에게 보내야 한다.

#### (4) 개인 통보

위원회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 혹은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가 통보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통보가 익명이 아닐 것,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했을 것 등 제2조의 심리 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통보는 비공개로 당사국에 전달되며,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소명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에 대해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심리하며, 심사 결과 제안과 권고 사항이 있으면 이를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한다.

#### 제1조

1. 현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그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관할 내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을 대신한 통보를 접수하여 이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2. 통보가 현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계가 있다면, 위원회는 어떤 통보도 접수해서는 안 된다.

####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가 수리불가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 (a) 통보가 익명일 경우
- (b) 통보가 이러한 통보 제출권을 남용하거나 협약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c) 같은 사항이 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나 해결 절차 하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되고 있는 경우
- (d)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책을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그 구제책의 적용이 부당하게 미루어지거나 효과적인 구제에 이를 것 같지 않은 경우의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됨
- (e) 그것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 (f) 통보의 주제가 되는 사실들이 현 의정서의 발효일 후까지 계속되지 않는 한, 그들 사실이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현 의정서의 발효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 제3조

현 의정서 제2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어떤 통보를 비밀리에 당사국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 안에 그 수신 국가는 그 사항과, 만약 있다면, 그 국가가 강구했을지도 모를 구제책을 밝히는 서면 해명서나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

1. 통보를 접수한 후 그리고 본안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 언제라도 위원회는, 위반 혐의의 피해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할지도 모르는 임시 조치를 당사국이 강구하라는 요구를, 긴급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관계 당사국에게 보낼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 조의 제1항 하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것은 허용가능성에 대한 또는 그 통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5조

위원회가 현 의정서 하에서 통보를 검토할 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통보를 검토한 후에 위원회는, 만약 있다면, 제안과 권고를 관계 당사국 및 청원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 (5) 위원회의 조사권

위원회는 협약상의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국 동의하에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 논평 및 권고를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해서는, 당사국이 의정서에 서명·비준할 때 그 권한 불인정을 선언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하더라도 일정 조항은 불인정할 수 있음.)

### 제6조

1. 협약에서 진술된 권리를 당사국이 중대하게 또는 고의로 침해함을 나타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위원회가 얻는다면,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게 그 정보를 검토하는 데 협력할 것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 정보에 관한 소견을 제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2.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믿을 만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국이 제출했는지도 모를 어떤 소견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긴급 보고를 할 1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조사는 그 국가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이들 결과를 모든 논평.제안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보내야 한다.
4. 위원회가 보낸 결과.논평.제안을 받은 지 6개월 안에 관계 당사국은 위원회에 소견을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 제7조

1. 위원회는 현 의정서의 제6조 하에서 수행된 조사에 응하여 강구된 모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협약 제35조 하에서의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관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이러한 조사에 응하여 강구된 조치를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관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

각 당사국은, 현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할 때에,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다.

## 2. 배경과 쟁점

### 1) 배경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당사국의 실효적 협약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 이행의 확실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관련 조항들이 그것이다.

국내적 모니터링 조항은 각 당사국의 서명 및 비준을 통한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전제로, 당사국 내에서 정부의 협약의무 이행을 보장.촉진.감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협약 당사국 내에서의 협약의무 이행 및 그 이행상황의 모니터링을 위한 구조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사국 내의 협약 이행 관련 사안을 다루는 전담 창구(focal points)의 지정, 조정기구(coordination mechanism)의 설치 및 독립 기구(independent mechanisms)에 의한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은 협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근거로 각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감시·보장·촉진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구성 및 정부 보고서 심사를 포함한 동 위원회의 활동과 권한에 대한 규정들로, 그 일부인 개인통보 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와 동 위원회의 조사권 등은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에 규정되어 있다.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 조항은 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동 협약이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향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좌우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모니터링에 관한 동 협약 조항들을 장애인 인권 실현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협약 이행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효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당사자의 전면적 참여가 보장되는 국내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과 운영이 요구된다. 동시에 국제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이해와 적극적 협력 및 활용 또한 동 협약을 죽은 문서가 아닌 살아있는 장애인 인권 현장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 2) 쟁점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조항들은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2006년 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모니터링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지 못하였다.<sup>2)</sup> 다만,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협약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적 차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는 수준이었다.

---

2) 국제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2006년 1월의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까지는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이후 당사국 정부들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동 년 8월 초 중재자(facilitator)인 멕시코에 의해 국제 모니터링 관련 조항의 초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기초로 동 년 8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초안이 다시 제출되어 8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 (1)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의 쟁점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협약 규정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은 첫째, 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위상은 어떠한가 하는가와 둘째, 국내적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었다.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당사국들의 태도는 각국의 인권 상황이나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프리카 지역 등의 저개발국을 포함한 상당수 당사국들이 국가 수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초안 상의 ‘독립적인 기구’ (an independent mechanism)라는 문구를 삭제 혹은 수정하자고 주장하거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규정한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이라는 문구를 ‘국가 장애인 조직의 대표’ (the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변경하자는 등의 주장을 편 것이다. 반면 이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한 나라들이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한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국제장애인단체대표자회의) 등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인류 역사의 보편적 경험은 인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주범이 다름 아닌 국가권력이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동 협약 이행의 의무의 주체인 당사국 정부에게 그 이행은 물론 모니터링의 역할까지 부여한다면, 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도 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에서는 국내 모니터링 기구의 독립성과 함께, 이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포함을 언명하는 조항이 규정되었다.

### (2) 국제적 모니터링의 쟁점

국제적 모니터링은 특별위원회의 2006년 제8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동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실체적 조항이 아니라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규범이라는 특성상, 주요 논의들은 관련 제도의 채택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일반적인 인권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동시에 IDC를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동 협약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이었다. 유럽연합, 중국, 미국 등은 다른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구와 기능 중복의

문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부담, 유엔의 재정 문제 등을 논거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 설치에 대한 반대 견해를 표명하였다. 동 협약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인권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유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권기구의 통합 등 개혁 작업의 추이를 지켜 본 후 설치하자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당사국에서 협약 이행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청을 제기하였고, 특별보고자와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이러한 요청을 지지하였다. IDC 역시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가 없으면 ‘이빨 없는 호랑이’에 불과한 이류 협약으로 전락한다며, 이러한 협약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기존 인권협약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충분하였다면, 별도의 장애인인권협약이 요구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기존 인권협약의 모니터링 기구 역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서 그 역할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전문성과 당사자의 참여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결국,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한 협약이 될 것을 요구하는 다수 당사국과 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 동 협약의 국제적 모니터링 기구로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설치가 명문화되었다.

두 번째 쟁점은 협약기구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이었다. 일부 당사국 정부 대표는 위원회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일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족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신장시키는 기초하에 협약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 대표와 함께 성별 균형과 지역적 안배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IDC는 ‘장애인과 다양한 장애 경험을 지닌 사람들의 참여’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verse disability experience)를 분명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전문가이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들의 인권 협약의 모니터링 기구에 참여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동 협약 상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 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세 번째 쟁점은 정부 보고서와 개인통보 등 국제 모니터링과 관련한 각종 제도들의 규정 여부와 규정의 수준에 관한 문제이었다. 다수의 당사국 정부 대표들이 보고서 제출의 부담을 이유로 그 간소화와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보고서 제출에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인통보 등에 대해서는 그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함될 경우 선택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정부 대표들 간의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였다.

결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초의 보고서를 협약 비준 후 2년 내에, 이후 최소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개인통보제도와 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규정은 선택의정서에 규정되었다.

###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 1) 장애 문제와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과 모니터링

##### (1) 장애 문제와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

세계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몇 차례의 시각과 방향 전환을 경험하였다.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의 선포는 인류가 공동으로 장애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0~90년대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장애 문제를 시혜나 동정의 차원에서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를 인권의 차원으로 고양시키지 못하고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한 우회적 접근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장애인 10년(1983~1992)’의 선포와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의 마련은 장애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진일보이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세계 행동계획’은 장애 발생의 예방을 통한 개인적 비극의 최소화와 장애인을 기존 사회 질서에 적응시키기 위한 재활이라는 사회통제의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복지에서 권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이런 의미에서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장애인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문제로 보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이루려는 시각의 전환이야말로 장애인 권리협약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인 것이다.

장애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환경에서 찾는 이러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패러다임은 ‘주체의 전환’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적 전환을 요구한다.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보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는 상당 부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문제의 진단, 그리고 그 해결책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정책 담당자, 전문가, 복지 공급자가 제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은 복지의 소비자가 아닌 환자 혹은 클라이언트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제의 소재를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고 사회의 변화를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는 더 이상 객체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이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촉구하며 그 진전을 평가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장애 문제의 소재를 사회로 보고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긍정하는 패러다임에 기초할 때,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은 그 내용의 독자성, 관점의 당사자성, 영역의 총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내용의 독자성은 기존의 여러 인권조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장애인 인권 보장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접근성이나 자립 및 사회통합과 같은 고유한 내용들이 장애인 인권에는 존재한다.

둘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관점의 당사자성은 장애인 개인을 문제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사회의 문제를 볼 때만이 장애인 인권의 실태와 인권 보장의 방안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 문제와 장애인 인권의 영역에서 장애인 자신이야말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동시에, 사회가 아니라 장애를 문제로 보는 그 동안의 시각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왔다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 문제의 진단·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장애인 인권 보장의 가장 실효적인 방안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권이라는 인권의 내용이기도 하다.

셋째, 장애인의 인권을 복지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할 때 문제의 소재를 장애가 아닌 환경에서 찾는다면, 장애인 인권의 회복과 보장이 요구되는 범위는 사회의 전 영역에 미친다.(영역의 총체성)

## (2)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의 의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은 장애인 인권 상황의 진단과 협약 이행의 진전에 대한 점검은 물론, 정책 결정 원리의 기본 틀 제공과 보다 효과적인 이행 방안 개발, 각 당사국의 국내적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sup>3)</sup> 또한 정부 보고서의 검토와 개인통보, 조사 절차를 통해 각 당사국의

장애인 인권 상황과 협약 이행에 대한 심층 조사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목적과 역할은 ‘복지에서 권리로’의 전환이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이념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 노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이 각 당사국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향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실효적인 국제적·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성과 운영,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모니터링의 구조와 체계, 활동이, 앞서 언급한 장애 문제와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속에서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에 있어 견지되어야 할 기본 원칙은, 첫째,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 인권 모니터링 기구나 국가인권기구와 구별되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모니터링의 구조와 체계 구성, 운영 및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권 영역의 총체성에 기초한 포괄적 이행 및 조정, 모니터링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각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비준함으로써 협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먼저 비준 당사국 정부가 갖는 협약 상 의무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가 분명해질 것이다. 동시에 비준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국 장애인이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정부의 협약 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1) 협약 비준과 당사국의 의무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은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비준 당사국들은 실질적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당사국의 의무에는 정부 보고서 제출 등 모니터링과 관련한 절차적·제도적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협약에 규정된바 장애인 인권 실

---

3)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① 인권 상황의 진단 ② 정책 결정 원리의 틀 제공 ③ 적절한 이행 방안의 개발 ④ 당사국 정부와 권리 보유자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⑤ 공공 이행의 심층 조사 등의 목적을 갖는다.

현을 위한 실체적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즉각적 이행 의무와 점진적 실현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권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차별을 금지할 의무<sup>4)</sup>와 최소한의 생존권·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권에 있어서 최소 핵심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둘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실현에 막대한 자원과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진적 실현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협약에 따른 국가 의무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장애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무엇을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먼저, 즉각적 실현 의무에 해당하는 분야, 즉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 정치 참여와 투표권 보장, 차별 금지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 실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점진적 실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분야라도 이를 이유로 당사국의 고의적 불이행이나 의무 회피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실현은 점진적으로 달성될지라도, 협약 제4조의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 (2)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비준 당사국이 협약의무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는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문제이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는 모니터링 기구로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각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협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은 각 당사국이 협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직접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통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여론과 외교적 압력이 간접적 강제로 작용할 뿐이다.

반면, 동 협약이 비준을 통해 당사국에 수용되면, 각 당사국의 법적 체계를 통해 동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국제법 존중주의). 이는 각 당사국의 법체계 내에서 협약의 효력을 기초로 정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구제를 청구할 강제 수단을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 존중주의를 채

4) 협약의 제10조~제18조 규정은 대부분 즉각적 이행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만, 그 자체로 국내에서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sup>5)</sup> 동 협약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장애인은 ... 권리가 있다 등)이 아니라 당사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방식(당사국은 ... 해야 한다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법의 규정이 없다면, 동 협약 상의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권리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인권규약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으로 작용하거나 헌법 해석의 지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해석 원리로 작용함으로써 헌법소송제도를 통해 국가에게 동 협약 상의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입법 부작위 위헌 소송) 즉,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내법을 개정·폐지하는 효과를 달성하거나 입법부작위 위헌소송을 통해 동 협약 상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 의무를 해태하는 국가를 상대로 입법을 강제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 (1)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의 의의와 원칙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협약의 각 당사국 내 이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전담창구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협약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설치 혹은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동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것과 이 경우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5) 일반적으로 조약이 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시행과 효력에 있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명백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③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등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6)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① 헌법과 마찬가지로 직접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 ②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헌법 해석에 있어 존중되어야 할 해석적 지침, ③ 직접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이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국제법 존중주의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견해로 정리될 수 있다(조형석, 2007, p. 76).

제1항의 전담창구는 당사국 내에서 동 협약 상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조정·촉진 역할을 담당할 정부 내 기구를 의미한다. 전담창구를 하나 또는 그 이상 두도록 규정한 것은 연방 국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 조항은 정부 내 조정 기구를 규정함으로써 협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련된 다양한 부문과 수준의 통합적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항은 독립 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sup>7)</sup>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독립 기구의 설립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한과 구성의 독립성 및 다원성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3조에 규정된 국내적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해석과 적용 상 상당히 폭넓은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협약 이행을 담보할 전담창구와 효율적인 조정 기구의 구성, 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장애인계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이행에 관한 국내 전담창구는 복지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동 협약의 제정은 장애인 문제를 시혜에 기초한 복지의 문제에서 벗어나 인권의 문제로 보는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하고 있다. 협약 이행에 관한 사안을 복지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담당한다는 것은 동 협약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이룰 수 없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함.

둘째, 조정 기구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상설기구가 되어야 한다.<sup>8)</sup> 우리의 경우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조정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상설기구화와 함께 분명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정책조정기구가 담당함(상설기구가 아님. 연1~2회 모임이며 위원은 자문의 역할 정도만 수행하고 있음).

셋째,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

---

7)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결의 48/134 부록으로 채택된 이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구성, 활동방식에 관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파리 원칙’ (Paris Principles)이라고도 한다.

8)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제2차 보고서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가 2003년 1월 31일 채택한 최종 견해에서도 상설적 조정 기구의 구성이 권고된 바 있다.



지위와 권한을 갖는 독립 기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국가인권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보인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전문성 결여,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 배제라는 현실에 비추어, 기존의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애인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장애인 인권기구를 설립하거나 최소한 기존 인권기구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음.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적인지는 의문임.

### (2)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향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은 사전적 모니터링,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하는 전 과정의 견련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다. 당사국의 비준을 거쳐 협약이 국내적으로 발효되면, 당사국 정부는 협약의무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과정에 대해 2년 내에 포괄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과제들을 설정할 것이며, 이는 자국 내 협약이행을 위한 포괄적 국가계획의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실태 파악과 과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진행될 이후의 이행 조치들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달성해 내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실태 파악과 협약에 배치되는 법.제도의 개선 등 개선 과제 설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행 상황의 모니터링은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 정부가 취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조치들의 내용과 진전 상황은 물론,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와 어려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사후적 모니터링으로서의 평가는 최종적 평가가 아니라, 이행상의 문제점과 불충분성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며 그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3)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복지에서 권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은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당사국 정부에 의한 협약 이행을 촉진.감시하기 위한 장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장애문제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문제로 보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 기초할 때,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 문제의 진단.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장애인의 자기선택과 결정권이라는

핵심적 인권의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 협약의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 즉 장애인의 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에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과 조정 기구는 물론 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 기구의 구성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활동의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동시에 참여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시민사회의 지지 네트워크 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협약에 규정된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와 별도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단체·시민단체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에 기초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기반으로 자국 내 장애인 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NGO로 구성된 독자적 모니터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sup>9)</sup>

장애인 당사자와 NGO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 기구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는 국가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반박 보고서’(shadow report)를 작성·제출하는 일이다. 국가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자기비판과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에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NGO에 의해 제출되는 반박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자국 내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임을 여타 인권협약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sup>10)</sup> 또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의 경우, NGO는 국가의 협약의무 위반으로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이나 집단이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를 제출하도록 지원하거나 그들을 대리해서 통보할 수 있다. 이는 자국 내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9) 국내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동 센터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NGO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과는 거리가 있다.

10) 국내에서도 자유권규약에 따른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 4) 국제적 모니터링

##### (1) 인권조약의 이행감시기구와 장애인권리위원회

###### ① 주요 인권조약의 이행감시기구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최초의 협약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7대 주요 인권조약들은 각각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첫째, 모든 당사국들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당사국의 국내 기준.관행의 일치 여부에 관해 제출한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논하는 최종 견해를 발표한다.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이주노동자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등의 인권조약의 경우, 개인들이 자신들의 조약상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음을 주장한 개인통보를 검토하여 권리의 침해 유무에 관한 견해를 밝힌다.

셋째, CAT과 CEDAW 등의 경우, 조약기구는 조약상의 권리의 조직화된 혹은 심각한 침해에 관한 조사 절차를 규정하여 당사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약기구들은 일반적 견해 혹은 권고의 작성 과정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이해와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일반적 견해나 권고들은 특정한 조약상의 권리와 자유와 관련된 의무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황필규, 2003, pp. 47-48). 조약에 기초한 인권감시체제의 내용으로는 일부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간 고발제도도 있다.<sup>11)</sup>

###### ② 장애인권리위원회

7대 인권조약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협약도 성안 과정의 논란 끝에 독자적인

11) ICCPR 제41조, CERD 제11조 ~ 제13조, CAT 제21조 참조

협약기구인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협약 발효 시에 12명으로, 이후 최대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위원회는 다른 인권협약의 협약기구와 유사하게 정부 보고서 심사와 선택의정서 상의 개인통보에 대한 심사 및 중대한 침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총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동 협약 상의 협약 내용에 대한 유권적 해석과 이행 방안에 대한 지침의 제공 등 이행의 촉진.보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일반 논평 등의 형태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정부 보고서 : 현재 우리 나라는 장애인개발원에서 작성>보고서 공청회>위원회에서 심사 및 후속조치>UN 직권조사

① 정부 보고서의 의의

협약 당사국은 협약 상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이행 상황에 대해 비준 후 2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이후 최소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보고 의무를 지닌다. 보고서에는 동 협약의 각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협약 상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와 어려움까지도 적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결정한다.

정부 보고서(reports by States Parties)의 준비 및 작성 과정은 그 자체가 협약 상의 의무 이행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국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자국 내 협약 이행을 위한 포괄적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보고서의 준비와 작성 및 제출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협의와 협력.연대가 필요하다.

② 정부 보고서의 심사

정부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 권고를 제출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하게 된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기구나 국제기구 혹은 NGO 등을 통해서 각 당사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인권협약의 조약기구들에서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는 동안 정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기초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을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보고서 없이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이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보고서 심사 후 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촉진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최종 견해를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견해는 당사국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 당사국은 이에 부응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차회 정부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 ③ 정부 보고서의 한계와 NGO의 대응

정부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국제적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당사국 내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인권 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 제도는 당사국의 자기비판과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들은 일반적으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NGO들이 ‘그림자 보고서’ (shadow report) 혹은 ‘미니 보고서’ (mini report)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반박 보고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왔고, 보고서를 심사하는 위원회와의 별도의 회합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내 NGO들이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국제사면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인권연맹 등 일부 국제적인 NGO들도 매우 조직적으로 위원회와 협력하며,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와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보고서와 다른 주장 혹은 국가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종종 담고 있는 NGO 보고서는 이를 사전에 읽은 위원들이 진상을 더 잘 파악하고 균형 잡힌 견해를 갖도록 해주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sup>12)</sup> 한편,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발표된 이후에 NGO들은 정부 보고서와 위원회의 견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여론화시킬 수 있다.

## (3) 개인통보

### ① 개인통보제도의 의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는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 관할 하의 개인·집단의 통보 또는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하

---

12) 1992년 ICCPR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합동으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국내 NGO가 체계적인 반론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이었다. 이를 심사한 인권이사회는 1992년 7월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 사형 규정 범죄의 축소, 죄형법정주의의 준수,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 규약과 헌법의 일치 노력, 규약에 대한 유보 철회, ICCPR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다(김성재 외, 2002, pp. 61-63).

고 심리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여, 개인통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통보를 심사하여 당사국의 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당사국에게 배상과 법.제도의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개인통보제도는 자유권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의 경우 자유권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가입 혹은 수락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유권규약 위반을 이유로 국내인에 의해 7건의 개인통보가 제기된 바 있으며,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사건,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몇 경우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자유권 규약 위반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 ② 개인통보의 요건 및 절차

장애인권리협약은 여타의 국제인권협약과 마찬가지로 개인통보를 위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적극적 요건으로 통보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및 그들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진정인은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소극적 요건으로는 익명의 통보가 아닐 것, 통보 제출권의 남용이 아닐 것,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 혹은 해결 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 중인 경우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통보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위원회의 본안 심사가 개시된다.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를 비공개로 당사국에 전달하며, 당사국은 이에 대한 소명 서류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통보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제안과 권고 사항이 있으면 이를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심사 결과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 ③ 개인통보의 효과

위원회가 개인통보에 대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제안과 권고를 제출함으로써 당사국이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의 여론과 외교적 압력을 통해 강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가 명문화된 협약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단지 견해에 불과하다거나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가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일 뿐 아니라, 이러한 권고의 규범적 효력을 부인한다면 사실상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

다. 당사국은 이러한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에 대해 최소한 존중 혹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조사

개인통보와 같이 구체적 피해자에 의한 진정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이를 조사(inquiry)할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의 동의하에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를 위해 당사국의 협조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논평 및 권고 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며, 당사국은 이를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사권에 대해 동 협약은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비준할 시에 이러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는 회피 조항을 두고 있다.

## 4. 합의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비준 당사국에 협약 이행의 실질적 의무를 부여한다. 동시에 각국의 법체계를 통한 국내적 수용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국제법적·국내법적 효력을 실질화시켜 동 협약이 각국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동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비준 당사국 정부의 의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초한 실효적 모니터링 전개, 모니터링의 과정과 결과에 기초한 적극적인 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 1) 강력하고 효율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 전담창구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가 담당해야 함. 전담기구는 두 개 이상이어도 무관함. 법무부도 전담창구를 하라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조정기구가 상설조직이어야 함
-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이 있어야 함.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이 있어야 함.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원문을 공개해야 함.
- 민간 NGO에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활용(반박보고서를 통해 국제정 분위기 전환 및 국가 압력)

- 선택의정서 비준

강력한 협약 이행을 담보할 전담창구와 효율적인 조정 기구의 구성, 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국내 협약 이행 전담창구는 협약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인권 감수성에 기초한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조정 기구는 실질적·포괄적 권한과 명확한 책임이 부여된 상설기구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당사자에 대한 개방성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국가 장애인인권 기구가 설립되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기존 국가인권기구의 개편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

장애 문제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문제로 보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 기초할 때,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 문제의 진단·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동 협약의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니터링 체계에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활동의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동시에 참여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시민사회의 지지 네트워크 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 상의 모니터링 체계와 별도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 단체, 시민단체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NGO로 구성된 독자적 모니터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적 모니터링 기구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는 국가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일이다. NGO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 제출을 지원하거나 그들을 대리해서 통보할 수 있고, 이는 국내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3)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향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일 중 하나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정보 제공 활동이다. 동 협약의 의의와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장



애인 인권의 내용, 정부의 의무, 그리고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방안에 대해 국민적인 여론의 환기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그들의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협약 상의 장애인 권리와 정부 의무의 내용.성격에 대한 이해는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정부의 의무 중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 등의 자유권의 침해나 차별을 금지할 의무와 사회권 중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최소 핵심 의무는 즉각적 이행을 요구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큰 자원과 재정 지출이 소요되는 사회권 실현의 의무와 같이 점진적 실현 의무가 주어진 경우, 그 실현을 위한 계획의 현실성과 적합성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점진적 실현 의무의 경우에도 각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즉각적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협약 이행을 위한 인권 상황 진단과 방향 설정,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과 이행 상황 감시,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모니터링에 있어 특히 사전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방향 수립, 협약에 배치되는 법.제도의 개선 등 개선과제 설정 과정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면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모니터링과 장애인 인권 보호 방안

##### (1) 법적 구제수단의 활용

“주장 없이 권리 없다” 혹은 “법 앞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법언이 있다. 모니터링이 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기초한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 권리 주장과 권리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정치적 방법에 의한 권리 주장과 함께 권리 주장과 침해의 구제를 위한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수단으로는 국제적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활용(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개인통보제도를 만들어야 함. 반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하는 방안과 국내적으로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기초한 방안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면 협약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법 존중주의에 기초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만, 국내에서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인권규약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인정된 헌법소송제도를 활용하여 협약상의 권리 실현과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국내 법률이 협약 상의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

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해당 법률을 개정 혹은 폐지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협약 상의 권리에 대한 법적 주장 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활용

국제적 차원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 또한 국내의 개인 또는 집단이 국제사회에 당사국의 협약의무 불이행 혹은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물론 협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은 직접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통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여론과 외교적 압력이 지니는 간접적 강제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활용한 장애인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개인통보와 조사 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에 유보 없이 서명·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정부 보고서에 대한 장애인 시민사회의 독자적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러한 최종 견해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용을 강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위원회의 결정이 협약 자체와 같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더라도 협약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리인 이상 우리 정부는 최소한 이를 고려 혹은 존중해야 하며, 나아가 인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성재 외 (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출판.

조형석 외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황필규 (2003). UN 인권체제에서의 NGO의 법적 지위와 역할 — 국제인권법의 제정과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서울: 국민대학교.

## 2021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강의

발 행 2022년 11월  
발 행 처 (사) 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2층  
홈페이지 [www.goodil.or.kr](http://www.goodil.or.kr)  
전자우편 [goodil@hanmail.net](mailto:goodil@hanmail.net)  
전 화 02-518-2197  
팩 스 02-518-2105

---

이 책의 저작권은 'UN CRPD 확산 공동사업추진단'과 각 강의자들에게 있으므로,  
무단 복제 등을 금합니다.